

#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33집

(2017. 11. ~ 2019. 10.)



국 방 부

#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33집

(2017. 11. ~ 2019. 10.)



국 방 부

# 서 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1964년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1집을 발간한 이래 2018년까지 총 32권의 질의응답집을 발간하였습니다. 5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방 행정은 적법한 행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법무관리관실의 질의응답도 이러한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단순히 법치행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국방부 정책결정권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법무 질의수요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관리관실도 정책결정권자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법무 질의에 충실히 응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33집은 이러한 노력의 기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국방관계법령 질의응답집』 제33집에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소관부서가 질의하고 법무관리관실이 회신한 것 중에서 중요한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질의응답 사례들이, 국방행정의 법치주의 구현, 투명하고 청렴한 국방운영, 나아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 경 수

# 목 차

제1장 헌법, 행정법 및 조직	1
1. 방위력개선사업 TF를 국방부 내 조직으로 둘 수 있는 지 여부	3
2. 동일한 명칭의 의미	7
3. 군인공제회 산하법인체에 대한 감사 관련	9
4. 군인공제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16
5.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기관’, ‘합동부대’의 범위	20
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23
제2장 인 사	29
7.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전공사상심사 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여부 등	31
8. 전역심사보류 중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전역심사 가능 여부	33
9.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문서열람 권한 부여 관련	35
10.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대상	38
11.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4급 이하 직원 中 별정직 공무원으로 60세 초과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지	41
1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해당되는 지	43
13.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후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가능 횟수	46
14.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이 도래하는 장교의 법정진급대상 해당여부	49
15.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명예퇴직 후, 임명권자의 임명 없이 직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지휘관 인수수행이 가능한지	53
16. 한국국방연구원 임직원의 복무제도에 국가공무원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검토	56

# CONTENTS

17. 영관급 장교로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정밀장비기술자’에 항공기조종사가 포함되는지	62
18. 임기제 진급자 최저복무기간 충족여부 및 임기계산 시점관련	66
19. 장교정원조정계획의 일환으로 군 교수의 정원조정이 이뤄질 경우, 일부 감원 되는 직위의 군 교수를 면직시킬 수 있는지	69
20. 임기제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되는지	72
21. 사관학교 교수를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단독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75
22.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를 심신장애를 사유로 퇴학시킬 경우 어느 제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지 여부	78
23. 군인사법 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 지 여부	81
24. 인력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진급을 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83
25. 부대개편에 따른 계약해지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훈령에 위반되는지	85
26. 직장에 설치된 예비군부대의 참모는 예비군법 제12조에 따른 정치운동의 금지대상인지	88
27.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역장병 DB를 신원조사 시스템에서 신원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	89
28. 군인사법 상 병과장의 임기 관련	94
29. 전역을 이유로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이 있고 전역 후 한시임기제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에 해당하는지	97
30.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심사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속 복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99
31. 임기제로서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이나 직제개편으로 전직된 경우 군인사법 제24조의 2 에서 정한 ‘전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102

# 목 차

제 3 장 병 역 .....	105
32. 병역법 제17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 기한 내에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정밀신체검사까지 종료해야 하는지 .....	107
제 4 장 복 지(보수 · 연금 · 보훈 · 국립묘지안장) .....	109
33. 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의 요건에 전환복무를 위하여 군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되어 전환된 자가 포함되는지 .....	111
3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유족의 판단기준 시점 등 .....	115
35.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공무원 보수규정 등 적용가능 여부 .....	120
36. 부대파견 민간검사의 군 병원 진료가능 여부 등 .....	123
37. 국방부로부터 파견명령을 받은 현역 연구위원이 연구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군인보수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 .....	125
38.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의 퇴역연금 제한시점 등 .....	128
39.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31
40. 기(既)실시 완료된 육아휴직에 대한 자녀변경가능 여부 .....	135
41. 전역자에 대한 퇴거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	137
제 5 장 군수 및 방위산업 .....	139
42. 방위사업법 제46조 제4항의 ‘정산’의 의미 .....	141
4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상 연구개발 결과물에 관한 전용실시권 계약이 가능한지 .....	144
44.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함정 설계 및 건조계약에 따라 선도함과 후속함 초도물량을 생산하기로 한 경우 시제품의 범위 .....	149

# CONTENTS

45. 외국인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152
46. ○○ 불용항공기 매각 시 군수품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155
47.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2호의 해석	161
48. 불용군수품을 매각 시 예정가격 공개 여부	163
49. ○○사업의 1번 함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2번 함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61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165
50. 중고 K-9 자주포 성능개량 비용 지불 가부	167
51. 방위사업법 제61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해석 관련	169
5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계약금액’의 의미	173
53. 해군 도태함포 관리전환 시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176
54. K200장갑차 양도관련 법령질의	179
55. K-9자주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의 궤도차량에 해당하는지	182
56. 수입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판매한 제품의 군수품 해당여부	184
<b>제 6 장 시설(군용지취득·국유재산·군사시설보호)</b>	<b>186</b>
57. 국방·군사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국유지 상 사유건물에 대한 이전 보상이 필요한지	188
58. 국유지 내 폐기물을 무단야적한 자에게 변상금 및 과태료의 중복부과가 가능한지	190
59.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의 ‘협의’의 의미	192
60. 국방부검찰단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196
61. 군 부대 내 노래방기기 및 게임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영업등록 대상인지	198

# 목 차

62. 사용허가매장 건물이 철거 예정인 상황에서 기존 매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사용허가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202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존 건축물’의 의미	205
64. 추가적인 전력배치를 위한 신규시설 반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군 공항 이전사업에 해당하는지	209
65. 행정재산에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212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지형의 변경을 위한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부대장 협의사항 인지	215
<b>제 7 장 재정 및 예산회계</b>	219
67.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법률관계	221
68. 공동수급체 구성권 간의 채권양도·양수 시 발주처가 채권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24
<b>제 8 장 기 타</b>	226
69. 계약변경 가능여부	228
70. 정당원인 자가 군인이 되었을 때 탈당 의무	230
71. 파견근무자 문서결재행위의 위법 여부	231
72. 국군교도소 기부금품 접수 시 적용 법률	233
<b>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총목차</b>	235

# 제1장 헌법, 행정법 및 조직

# 1. 방위력개선사업 TF를 국방부 내 조직으로 둘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요지】

1. 국방부 주관 아래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조정·운용의 통제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을 구성원으로 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TF의 설치가 가능한지
2.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주도적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 【답 변】

1.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의 임무를 수행하는 TF라면 설치가 가능하나,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방위력개선사업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통제권을 행사하여 권한과 책임을 지닌 TF를 국방부에 두는 것에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TF가 이러한 일반적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2. 방위사업청장은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중요 정책수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휘·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의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사업추진이 이러한 일반적 지휘·감독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

## 【이 유】

1. 국방부 주관 아래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조정·운영의 통제목적으로 방위사업청을 하부 구성원으로 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TF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결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군수품 구매 등의 방법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을 수행함. (방위사업법 제3장 제4절) 한편, 국방부장관은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sup>1)</sup>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수립,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의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 무기체계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 충족 여부 판정,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결정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를 담당함.(방위사업법 제13조 등). 또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협조, 방위력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조정,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에 관한 계획수립 및 결과판정,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검토·조정 등의 사항을 분장함(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이를 종합할 때,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TF를 국방부에 설치하여 「방위사업법」 및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규정된 국방부장관 또는 전력자원관리실장의 업무에 관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나, 상기 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임무를 부여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방위력개선사업

1) 정부조직법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임. 즉,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통제권을 행사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 TF를 국방부에 두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다만, 답변2에서 후술하는 법제처 해석례<sup>2)</sup>에 따를 때, 국방부장관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개별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TF가 이러한 일반적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면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음.

## 2.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주도적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이는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어 있음.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또한 「방위사업법」, 「군인사법」 등 개별법령을 보면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 근거한 권한 행사가 가능할 것임.

한편, 법령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소속청인 방위사업청에 대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법제처는 이에 대해 ‘중요한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 개별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음. 즉, 소속청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소속하는 부의 장관이 주무장관 및 국무위원이 되고, 소속장관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물론 국회 등에 대하여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

2) 법제처 07-0356, 2008. 4. 2. 국방부

게 되므로,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이 장관의 소속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중요 정책수립에 관하여만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임. 다만 이 해석례는 과거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을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법제처는 행정감사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방위사업청이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외청으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형태의 감사(종합감사 제한, 부분감사 가능)만을 인정하였음.

이를 종합할 때, 방위사업청장은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개별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의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사업추진이 이러한 일반적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끝.

질의 : 감사원 국방감사국 제1과-787(2017. 12. 15.)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0586 (2017. 12. 19.)

## 2. 동일한 명칭의 의미

### 【질의요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동일한 명칭’의 범위

### 【답 변】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확대해석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이 유】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경우에 한해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런데 동일한 명칭에 있어 ‘동일’이 명칭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만을 의미하는지<sup>3)</sup>,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임.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추가적으로 쓰이는 것이므로<sup>4)</sup>, ‘동일한 명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이 명확하다면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3) ‘동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음’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 법해석 …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한 법령해석<sup>5)</sup>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있어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확대해석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한 바 있음.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상기 법제처 해석례를 참조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조직관리담당관-6349(2017. 12. 21.)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671(2018. 1. 19.)

---

5)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대한 법령해석 사안이었는데 동 규칙도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설립허가 기준으로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 사안과 유사하다고 볼 것임 (법제처 06-0064, 2006. 4. 21. 문화관광부)

### 3. 군인공제회 산하법인체에 대한 감사 관련

#### 【질의요지】

1. 국방부 감사관실이 군인공제회 산하법인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재 군인공제회 산하법인체 등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 과거 군인공제회 본회 근무 당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3. 업무배제를 시킨 후 동일 사안으로 기소 시 퇴출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1.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인공제회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산하법인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군인공제회는 감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산하법인체에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할 수 있으며, 임기를 별도로 정한 산하법인체 임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3.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직위해제 후 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 원칙에 반하지 않으나, 기소 시 퇴출은 당사자가 법령·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공정한 업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유】

### ■ 질의 1에 관하여

「군인공제회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17조의5), 공제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하는 항목 중에는 ‘국방부장관의 감사결과’가 포함됨(제17조의4제5호). 이를 종합할 때 국방부장관이 군인공제회를 감사할 수 있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임.

다만 국방부장관이 군인공제회의 산하법인체를 감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군인공제회법」 상에는 이러한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고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관 단체’에 군인공제회의 산하법인체가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됨.

기본적으로 법령의 해석권한은 1차적으로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에 있고 공공감사법은 감사원 소관 법률임. 그런데 감사원은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의 ‘소관 단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공감사법에 모든 감사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규정에 따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의 직접 감독을 받는 소관 단체가 지배회사로서 그 연결실체인 산하 법인체 등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

체감사기구에서 당해 법인체 등에 대하여 회계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sup>6)</sup> 한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제5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으로 '국방부소관 법인 및 그 법인의 종속회사'를 명시하고 있고, 별표 1에서는 세부기관을 규정하며 4차 기관에 '소관 법인 등'으로 '12개'라고 되어 있으나 12개 기관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이를 종합하면 국방부의 자체감사 대상은 국방부가 공공감사법의 입법취지와 소관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정립할 사항이므로 국방부 훈령을 통해 자체감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국방부장관의 직접 감독을 받는 소관 단체가 지배회사로서 그 연결실체인 산하 법인체 등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국방부 자체감사기구에서 당해 법인체 등에 대하여 회계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그런데 현행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상에는 '소관 법인 등'으로 '12개'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관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훈령에 그 대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음. 이 경우 수감대상 기관에서는 예측가능성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국방부 감사관실이 군인공제회 산하법인체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다만 군인공제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하며, 산하법인체의 장 등은 이사장의 감독을 받아 사업체의 운영 및 업무를 관장함<sup>7)</sup>. 또한 군인공제회 감사규정을 보면 감사대상은 군인공제회 본회(사업체 포함) 및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회사(법인)이고, 상임감사는 군인공제회가 대주주인 산하법인체의 감사업무를 조정·감독하며,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6) 국방부 질의에 대한 감사원 질의 회신(공공감사운영단 제1과, 2014. 3. 18.) 참조

7) 군인공제회 정관 제17조, 제27조 등 참조

경우 사업체의 장에게 고발, 징계(과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변상, 경고, 주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sup>8)</sup>

즉 국방부는 「군인공제회법」 및 공공감사법 등에 근거해 군인공제회를 감사할 수 있는데 산하법인체에 대한 감독은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업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감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군인공제회 본회는 산하법인체를 감사하여 처분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인공제회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산하법인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 질의 2에 관하여

먼저 과거 군인공제회 본회에서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산하법인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징계·해임 등의 주체는 현재 근무중인 산하법인체가 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군인공제회 상임감사는 산하법인체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이 있을 경우 산하법인체의 장에게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요구는 가능할 것임.

한편 산하법인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되는 바,<sup>9)</sup> 「상법」 제385조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주총 특별결의로 해임이 가능하나<sup>10)</sup> 이사의 임기를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음. 그런데 판례는 이때의 임기는 정관이나 주총 결의

8) 군인공제회 감사규정 제3조의2, 제5조의2, 제13조 등 참조

9) 이하의 논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전제한 것인데, 참고로 판례는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임(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0) 다만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의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로 임기를 정한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3년을 경과하기 전에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임.<sup>11)</sup> 따라서 정관이나 주총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이사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더라도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sup>12)</sup>

또한 임기를 별도로 정했다면 해임의 '정당한 이유'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판례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음<sup>13)</sup>. 결국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판례 법리를 기초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정당한 이유 존부를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임.<sup>14)</sup>

한편 과거 군인공제회 본회 근무 당시 발생한 사안으로 현재 산하법인체에서 징계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군인공제회 본회와 산하법인체가 별도의 법인격이긴 하나 그 지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완전히 별개의 회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군인공제회 본회의 비리가 있을 경우 일반인의 인식 상 산하법인체의 대외신인도 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11)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12) 예를 들어 앰플러스 자산운용(주) 정관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다만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판례에 따를 때 이러한 경우는 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임

1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14) 부가적으로 이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함(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군인공제회의 임직원 행동강령 상의 적용범위가 ‘본회 및 사업체에 속한 모든 임직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인공제회 본회 근무 당시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에도 그 경중을 고려하여 현재 근무 중인 산하법인체에서 징계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정리하면 문제되는 대상자가 현재 산하법인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징계·해임 등의 주체는 현재 근무 중인 산하법인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고, 군인공제회는 감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산하법인체에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할 수 있으며, 임기를 별도로 정한 산하법인체 임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 ■ 질의 3에 관하여

질의내용은 1차로 업무배제조치를 취한 뒤 기소 시 퇴출(파면) 조치를 하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sup>15)</sup> 이에 따라 판례는 일관되게 직위해제 후 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바,<sup>16)17)18)</sup> 1차

15)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16)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는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17)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18)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보직해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중노위 2011. 6. 27. 2011부해367)

로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sup>19)</sup>.

다만 ‘기소 시 퇴출’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함. 일단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 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sup>20)</sup>. 또한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런 위법사유는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고, 무죄판결을 받은 징계사유 이외에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을 함이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유지해도 위법이 아님.<sup>21)</sup>

하지만 헌법 제27조제4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법령·규정 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공정한 업무집행에 위협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sup>22)</sup> 끝.

질의 : 직무감찰담당관-1026(2018. 2. 13.)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2801(2018. 3. 23.)

---

19) 한편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징계해고처분 취소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2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할 수 있음

21)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710 판결

22)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참조. 본 판례는 기소 시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문제된 사안임

## 4. 군인공제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 【질의요지】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명시된 군인공제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2. 국방부가 군인공제회에 정기·수시 업무보고를 지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답 변】

1.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의 업무 범위는 「군인공제회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인공제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특정행위가 이러한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이는 법령해석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소관 부서가 「군인공제회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5 시정명령 등을 위해서는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업무보고의 정례화 지시 등도 그 일환으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이 유】

#### ■ 질의 1에 관하여

「군인공제회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에 대하여 정관 변경

인가(제4조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지명·위촉(제10조제1항), 이사장·감사·이사 선출의 승인(제12조제1항 및 제2항), 예산 편성의 승인과 결산 등 보고(제17조), 감사(제17조의4), 운영·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제17조의5) 등의 권한을 가짐. 한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에는 인사복지실장의 분장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 ‘군인공제회 업무의 지도·감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업무의 지도·감독 범위가 문제됨.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는 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보조기관에 해당함. 또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방부 내부 업무 및 사무분장을 위한 성격을 가짐. 이를 종합할 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인사복지실장에게 새로운 권한을 설정·부여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인사복지실장에게 분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만약 그렇다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인사복지실장의 권한은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바, 군인공제회와 관련해서는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군인공제회법」은 1983. 12. 31. 제정되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에 군인공제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은 1991. 3. 28. 전부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음.<sup>23)</sup> 그런데 이후 국방부장관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sup>24)</sup>, 국방부장관의 감사결과 공

23) 1991. 3. 2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전부개정되면서(대통령령 제13335호) 제20조 ‘복지보건국’ 조항에 ‘군인공제회의 지도·감독’이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24) 2007. 7. 27. 「군인공제회법」이 개정되면서 제17조의4(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현행법 제17조의5와 동일)가 신설되었는데, 당시 개정이유서를 보면 ‘군인공제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자산규모가 약 6조원에 달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 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시<sup>25)</sup> 등을 목적으로 「군인공제회법」이 개정되어 현행 제17조의4, 제17조의5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만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의 ‘군인공제회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였다면 굳이 「군인공제회법」을 개정하여 상기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

결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군인공제회에 대한 인사복지실장의 업무 범위는 「군인공제회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질의 내용 중 ‘군인공제회의 전반적 운영과 사업에 관한 업무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 보면, 이는 ‘전반적 운영과 사업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구체적 사실 인정 또는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즉 군인공제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특정 행위가 「군인공제회법」 등의 법령에 규정된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 질의 2에 관하여

「군인공제회법」상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본 사안은 군인공제회에 정기·수시 업무보고를 지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이는 결국 군인공제회에 대한 업무보고 지시가 상기

25) 2015. 7. 20. 「군인공제회법」이 개정되면서 제17조의4(공제회에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감사의 감사보고서, 국방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가 신설되었고, 당시 개정이유서에는 ‘군인공제회는 ...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손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의사결정환경의 결여, 폐쇄적 자산운용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국방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 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군인공제회법」상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 또는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해석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소관 부서가 「군인공제회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 「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5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이 가능한 바, 이를 위해서는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 공제회에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보고의 정례화 지시 등도 그 일환으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끝.

질의 : 복지정책과-1329(2018. 2. 27.)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3358(2018. 4. 9.)

## 5.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기관’, ‘합동부대’의 범위

### 【질의요지】

1.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의 범위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된 ‘합동부대’의 범위

### 【답 변】

1. 법령체계에 비취볼 때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2호의 ‘기관’에 대한 정의가 상위 법률인 「국군조직법」에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함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는 동법 제9조에 규정된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규정된 부대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유】

#### ■ 질의 1에 관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함) 제2조제2호는 ‘기관’에 대해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기관’과

통칙 제2조 제2호 ‘기관’의 범위가 문제되는 사안임.

정의 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치고,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대통령령 이하에도 그대로 적용됨. 즉, 상위 법령에서 용어 정의를 하면 하위 법령에서 별도의 정의가 없더라도 그 정의가 하위 법령에까지 적용되는 것임. 반면 반대의 경우, 즉 하위 법령에서 용어 정의를 한 것이 반드시 상위 법령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만약 하위 법령의 정의가 상위 법령에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을 구속하는 형태가 되어 법령체계 상 맞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대통령령인 통칙 제2조 제2호의 정의가 상위 법률인 「국군조직법」에 반드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이는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 ‘기관’의 해석에 있어 통칙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일 뿐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 질의 2에 관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제9조에서는 합참의장의 권한으로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함을 규정하며 그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대통령령인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규정’이라고 함)에서는 합동부대의 범위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을 규정하고 있음.

법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바,<sup>26)</sup>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은 ‘합동부대’, 제9조 제2항은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라고 표현하고 있음. 또한 지휘·감독 관계를 보더라도 제2조 제3항은 국방부장관, 제9조 제2항은 합참의장에게 각각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음. 결국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 중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는 동법 제9조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이들 부대가 곧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규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종합하면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는 동법 제9조에 규정된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규정 제3조에 규정된 부대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임. 끝.

질의 :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1124(2018. 4. 17.)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4563(2018. 5. 14.)

---

2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 【질의요지】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최대 존속기간은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 내에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연장한 활동기간의 종료일까지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인지?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서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위원회 활동종료'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진상규명활동의 종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의 종료를 의미하는지?

### 【답 변】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2항에 따

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임.

####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 활동종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의 종료를 의미함.

### 【이 유】

#### 가. 질의 가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작성해야 하는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 업무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고유업무임이 명백함.<sup>27)</sup>

그리고 5·18진상규명법 제34조제2항에서 ‘위원회’를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의 주체로 분명하게 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은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위원회가 존속할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sup>28)</sup>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활동기간 종료 후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를 종료하는 날까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27) 법제처 2014. 10. 31. 회신 14-0551 해석례 참조

28) 법제처 2014. 10. 31. 회신 14-0551 해석례 참조

아울러 만약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를 5·18진상규명법 제9조에 따른 진상규명활동기간에 마쳐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진상규명활동에 충분한 기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sup>29)</sup> 이는 아직까지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의 입법취지<sup>30)</sup>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한편 5·18진상규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본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단서), 위원회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진상규명활동을 마치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더 이상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 내에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보고활동까지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곧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5·18진상규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위원의 연임을 달리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며,<sup>31)</sup>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결원 시 후임자의 임명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모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고 대통령이 즉시 임명을 함으로써 위원회가 계속하여 존속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해 바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상태에 이

29) 법제처 2018. 1. 16. 회신 17-0631 해석례 참조

30) 2018. 3. 13. 법률 제1543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 14. 시행된 5·18진상규명법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참조

31) 「법령 입안·심사 기준」 376페이지 참조

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5·18진상규명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 조사를 조기 종료함으로써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까지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을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로 더 이상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5·18진상규명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료하려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해야 하므로, 위원회가 조사를 조기 종료해 결과적으로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할 때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를 마치는 데 필요한 6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조사를 종료하는 시점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5·18진상규명법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임.

#### ※ 법령정비 권고사항

5·18진상규명법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이 서로 달라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위원의 임명이 필요하게 되는바,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맞추는지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 질의 내에 대해

5·18진상규명법에서는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활동기간’(제8조제1항 단서), ‘진상규명활동’(제9조), ‘활동하는 기간’(제19조제2항), ‘위원회의 활동’ 또는 ‘위원회 활동’(제34조), ‘위원회 활동종료’(제65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때 각 조문에서 ‘활동’의 의미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도록 해석해야 함.<sup>32)</sup>

그런데 5·18진상규명법 제65조에 따라 사무처가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하는 목적은 사무처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등 진상규명활동 관련 업무 외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브리핑·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위원회 백서 발간이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위원회 소관 예산·자금의 결산 및 회계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 관련 업무 중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5·18진상규명법 제65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종료”는 아직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종합보고서 작성·보고(같은 법 제34조 제2항)가 남아 있는 “진상규명활동”(같은 법 제9조) 종료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종합보고서 작성·보고까지 마쳐 더 이상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호에서는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조사1과의 업무 중 하나

3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로 5·18진상규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정하고 있는 바, 만약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활동종료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진상규명 활동의 종료로 해석한다면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의 작성·보고가 진상규명활동의 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종합보고서 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는 그로부터 3개월간만 존속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호의 업무를 나머지 3개월간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끝.

질의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3026(2019. 4. 1.)

## 제2장 인 사

## 7.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여부 등

### 【질의요지】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인지 여부
2.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에 행정쟁송에 관하여 반드시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중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함.

2. 전공사상심사 결정에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쟁송에 관해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이 유】

1. 「군인사법」 제2조는 군인사법 적용대상자를 규정하면서 학군사관후보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사법 및 병역법은 사관후보생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자격요건, 신분보유 기간 및 상태 등에서 차이가 있어 사관후보생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포함되어 군인사법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규의 해석 등을 통하여 군인사법상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의 사망 및 상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이나, 군사교육 중 직접 원인이 된 학군사관후보생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병역법」 76조 제5항, 「학생군사교육단실시령」 제11조의2), 군사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구분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4 제8항에 따라 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제14조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는 전공사상 처리 훈령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중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가능함.

2.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할 때에 행정쟁송 여부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공사상심사 결정에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쟁송에 관해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움. 끝.

질의 : 영현관리심사/제도팀-261(2017. 9. 2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9306(2017. 11. 7.)

## 8. 전역심사보류 중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전역심사 가능 여부

### 【질의요지】

전역심사 보류 중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전역심사 가능 여부 회신

### 【답 변】

전역심사 보류 중 징계처분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역심사위원회는 전역심사 가능함.

### 【이 유】

「군인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7조 각호의 사유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내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유에 불과한 것이고, 조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현역 복무 부적합 기준에 해당여부(「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 시행규칙 제56조)를 조사 및 심사하는 것임.

또한, 형의 실효와 달리 처벌기록 말소 효력에 관해서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행정규칙인 각 군 규정은(육규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6조) 말소된 처벌기록을 이유로 진급, 전속, 보직, 교육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하나, 이미 받은 법령상의 불이익은 회복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고, 일정한 사유로 전역심사가 보류되던 중 경징계 처분 중 하나의 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기록말소는 장래효를 가질 뿐 소급효는 없으므로, 전역심사 보류 사유가 소멸하여 전역심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록 말소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재개는 가능함.<sup>33)</sup> 끝.

질의 : 육군 법제과-3783(2017. 11. 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9818(2017. 11. 27.)

---

33)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 18649 판결

## 9.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문서열람 권한 부여 관련

### 【질의요지】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문서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답 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지 여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목적, 유사 실무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 유】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고 함)에 따른 특수기록관으로<sup>34)</sup>,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공공기록물법 제14조), 본 사안은 이러한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전 문서의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것임<sup>35)</sup>.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

34) 참모총장은 각급부대의 기록물관리를 지도, 감독, 총괄하고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수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공군의 특수기록관은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을 말한다(공군 기록물관리 제7조제1항).

35) 현재 공군역사기록관리단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열람이 가능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공군역사기록관리단으로 이관되기 전의 문서에 대한 열람 여부만이 문제됨

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sup>36)</sup> 등을 의미하는데, 공군 일반 부서와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경우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움<sup>37)</sup>.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정 개인정보를 제공·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는데<sup>38)</sup> 공공기록물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 사안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공공기록물법에 따를 때 특수기록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후단 또는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가능할 것임. 그리고 이 경우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 이관받기 전의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가 공공기록물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유사 실무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

36)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7) 결국 본 사안에 있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38) 예를 들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중략)…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병역법 제11조의2제1항)와 같은 경우임

질의 : 사이버정책담당관-186(2018. 1. 15.)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2123(2018. 3. 6.)

## 10.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대상

###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제6호에 따른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 【답 변】

이 사안의 경우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음.

### 【이 유】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등(이하 “현역 군인 등”이라 함)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제6호에서는 국방자격의 종목 중 하나로 국방사업관리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사법」의 적용 대상인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사람이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자격제도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 분야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sup>39)</sup>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한되는

39)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참조

내용은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함.<sup>40)</sup>

이와 관련하여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군인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현역 군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지만, 국방자격에 관한 「군인사법」 제46조의4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반드시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현역 군인 등에게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그런데 군인사법령에서는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사람에 대해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3급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자격 중 하나로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1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현역장교뿐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또는 단체의 간부도 국방대학교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자도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기본교육과정에 입학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그 밖에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3급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제2호) 또는 “국내외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제3호)도 현역 군인 등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역 군인 등만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40) 법제처 2013. 4. 30. 회신 13-0122 해석례, 법제처 2011. 11. 10. 회신 11-0607 해석례 및 법제처 2007. 12. 28. 회신 07-0447 해석례 등 참조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역 군인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군인사법」에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군무원인사법」 등에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자에게도 국방사업관리사의 검정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끝.

질의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3288(2018. 4. 8.)

# 11.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4급 이하 직원 中 별정직 공무원으로 60세 초과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4급 이하의 직원 중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60세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 【답 변】

이 사안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는 4급 이하의 직원을 60세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이 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진상규명특별법’이라 함) 제19조 제2항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위원회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사건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가 한시 조직인 점을 감안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일반인에 대해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sup>41)</sup>

그리고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은 정무직공무원이고(제7조 제4항),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제21조 제1항)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인 반면,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채용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제18조 제3항) 그 중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제19조 제2항) 있으므로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4급 이하 직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임용 관련 모든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한 ‘벌칙 적용에 한정’하여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도 해당 직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 다루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인 법 해석에 부합함. 끝.

질의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과-3937(2018. 4. 25.)

---

41) 법제처 2010. 6. 29. 회신 10-0157 해석례 참조

## 1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이 해당되는 지

【질의요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 3. 13. 법률 제15434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5·18 진상규명특별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포함되는지?

【답 변】

이 사안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이 유】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조사대상 선정,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및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하면서 그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7조에서는 위원회에 두는 ‘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의 징계, 파견 시 업무상 독립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만일 “직원”의 의미에 “상임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에도 ‘상임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데,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 신분보장, 직무상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직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무직공무원인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해석은 이 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상임위원’과 ‘직원’에 관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의 신분은 정무직공무원이 되고(제7조 제4항), 상임위원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있는 반면(제10조 제1항), 사무처 직원의 경우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제18조 제4항),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의 신분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이 되는 등(제19조제2항) 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직원’은 같은 위원회에 속해 있을 뿐, 양자는 지휘·감독 관계 및 공무원의 종류 등에 있어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직원은 사무처

의 직원을 말한다고 보아야 함.

다만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상임위원인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위원장에 해당되는 상임위원은 위원으로서의 직책과 사무처 직원으로서의 직책을 동시에 갖게 되므로, 사무처장이 되는 부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의 신분으로서 실제 사무처 직원의 정원에는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끝.

질의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937(2018. 4. 25.)

# 13.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후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가능 횟수

## 【질의요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후 동일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가능 횟수 등

## 【답 변】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6 제2항의 문언해석 상 당사자 등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것과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1회에 한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당사자 등의 청구에 의하지 않고 재심사를 하는 횟수까지 제한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이 유】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르면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고 함)를 둬. 한편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6 제2항은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중앙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한 횟수 및 재심사 가능 여부 등이 문제됨.

법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

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음<sup>42)</sup>.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6 제2항은 ‘1회에 한하여’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사 규정이 문제되었던 판례나 해석례를 보더라도 모두 ‘1회에 한정’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있으며<sup>43)44)</sup>, 그 외 「군인사법 시행령」 상에 1회에 더하여 추가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6 제2항의 문언 해석 상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것과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sup>45)</sup>.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6 제2항은 서술어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인데, 「군인사법」 제54조의3 제2항제1호의 내용과 연계하여 해석하면 이 때 청구의 주체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하 ‘당사자 등’이라고 함)으로 보아야 함. 즉 문언해석상 위 규정은 당사자 등의 청구횟수를 제한하는 취지인 바, 이를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는 판단임. 일단 「군인사법」 제54조의3 제2항 등에 따를 때 당사자 등의 청구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결정에 의한 재심사가 가능함. 또한 중앙심사위원회는 법적으로 기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에 해당하여 그 의결이 다른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않고 대법원 또한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처분에

4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43) 헌법재판소는 舊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문제된 사안에서(외국인근로자가 법률에 규정된 사유만으로 사업장 등을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을 추가로 허용하도록 규정됨) 소수의견을 통해 ‘어떠한 경우든 불문하고 무조건 1회의 사업장 변경만을 추가로 허용하고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실시(헌재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등), 결국 ‘1회에 한하여’라는 문구에 대해 ‘어떠한 경우든 불문하고 무조건 1회’라고 해석한 바 있음

44) 법제처는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이 문제된 사안에서(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됨) 해당 조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연장하되 1회에 한하고’의 의미라고 해석한 바 있음 (법제처 13-0203, 2013. 6. 24.)

45) 위 조항은 원래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가 2017. 6. 20. 현행대로 개정되었는데, 당시 개정이유에도 ‘유족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시 한 차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바, 이를 고려할 때 중앙심사위원회의 직권에 따른 재심사 또한 불가하다고 볼 것은 아님. 결국 위 규정을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경우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의적 해석이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임.

정리하면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6 제2항의 문언해석 상 당사자 등은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것과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1회에 한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이 중앙심사위원회가 당사자 등의 청구에 의하지 않고 재심사를 하는 횟수까지 제한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끝.

질의 : 영현관리심사/제도팀-1481(2018. 5. 4.)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4626(2018. 5. 16.)

## 14.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이 도래하는 장교의 법정진급대상 해당여부

### 【질의요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이 도래하는 장교의 법정진급 대상 해당여부

### 【답 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18년 진급선발위원회 소집연도) 12월에 정년전역일이 도래하는 장교의 경우 진급선발위원회의 법정진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이 유】

#### 1. 문제의 제기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연령정년, 계급정년)이 도래하는 장교가 법정진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법무810-474 (1981. 7. 10.) 군인사법 상의 진급 해당연도 회신”과 “법송24001-1068 (1989. 7. 5.) 진급선발 후 연령정년에 달한 하사관의 진급 회신“이 일부 상충하는 면이 있는 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를 하였음.

#### 2. 상충되는 해석례 및 검토

##### (1) 법무810-474 (1981. 7. 10.) 군인사법 상의 진급 해당연도 회신

당시 해석대상 규정은 「군인사법」(법률 제3265호, 1980.12.4.) 제36조(정년전역 등)제1항 “제8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당연히 전역된다”는 규정 및 「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229호, 1981.3.2.)

제46조(정년전역일) “법 제36조에 규정된 자의 전역일을 그 현역정년에 하는 날의 다음달로 한다.”는 규정이었음.

“법무810-474 (1981. 7. 10.) 군인사법 상의 진급 해당연도” 회신내용은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에 달한 자는 당연 전역되는 것이므로 차년도 진급예정자를 선발하고 있는 중의 당해년도 말까지에 이미 계급정년이나 연령정년에 달하여 법상 당연히 전역되기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차년도 진급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전역일을 그 현역정년에 달하는 날의 다음달로 한다”는 규정은 행정운행의 편의상 전역일을 다음달 이내로 하라는 취지이지, 이미 달해진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였음.

당시에는 「군인사법」에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당연히 전역된다.”고 규정하였고 「군인사법 시행령」에 “전역일은 그 현역정년에 달하는 날의 다음달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46조에 대한 해석을 행정운행의 편의상으로 한 달간 기간을 두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됨.

(2) 법송24001-1068 (1989. 7. 5.) 진급선발 후 연령정년에 달한 하사관의 진급 회신

당시 해석대상 규정은 「군인사법」(법률 제4085호, 1989.3.22.) 제36조(정년전역)“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는 규정이며, 법률에 전역일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었음.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23호, 1989.6.9.)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제3항에 따라 “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명단에 쓰인 자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었음.

“법송24001-1068 (1989. 7. 5.) 진급선발 후 연령정년에 달한 하사관의 진

급” 회신에 의하면 1989.12.에 연령정년에 달하게 되어 1990.1.31.전역하여야 할 해군중사의 경우 장교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였고, 연령정년에 달하지 아니한 이상 진급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하사관 진급예정자 명단에 쓰이기 전까지 중사의 연령정년에 달하지 아니한 이상 진급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하사관 진급예정자명단에 쓰인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진급될 계급인 이등상사의 연령정년에 의거 연령정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1990.1.1.부로 진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음.

### (3) 검토

「군인사법」 제36조(정년 전역 등) “제8조에 따르면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고 규정하므로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연령정년, 계급정년)이 도래하는 장교는 진급연도의 1월 말에 전역을 하게 됨. 그렇다면 본 조항이 정년을 연장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현역군인 신분은 진급연도의 1월 말까지 유지됨.

「군인사법 시행령」 제21조(장교진급 선발대상권)에 따르면 “장교의 진급 선발 대상권은 진급발령이 있는 날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명시하며, 진급발령은 진급연도의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가능하여 1월 초(진급발령이 가능한 시기)에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현역이면 장교진급 선발대상권에 해당함. 그러므로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이 도래하는 장교의 경우에는 진급연도의 1월 말까지 현역신분을 유지하므로 장교진급 선발대상권에 해당함.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3항(현역복무기간 계산)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므로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이 도래하는 장교가 진급예정자가 되면 「군인

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진급될 계급으로 정년이 연장되므로 1월 말이라는 전역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됨.

### 3. 결론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18년 진급선발위원회 소집연도) 12월에 정년전역일이 도래하는 장교의 경우 진급선발위원회의 법정진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끝.

질의 : 해양법제과-1408(2018. 4. 10.)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5772(2018. 6. 27.)

## 15.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명예퇴직 후, 임명권자의 임명 없이 직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한지

### 【질의요지】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명예퇴직 후 임명권자의 임명없이 직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

### 【답 변】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명예퇴직 후 임명권자의 임명없이 직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지휘관으로서 임무수행은 불가능하며, 지휘관이 아닌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이 유】

#### 1. 직장예비군 지휘관 선발 및 임명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은 예비군 지휘관 선발·임면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은 직장예비군 지휘관 선발제도를 구체화하여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선발하고 있음. 다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조제2항은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으로 규율하는 바, 국방부장관 또는 수임 군부대장이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선발 및 임명한 후에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지휘관과 근로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함.

## 2. 명예퇴직의 효력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일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는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대법원 2000.7.7.선고 98다42172판결). 따라서 직장예비군 지휘관과 직장의 장이 명예퇴직의 합의를 하여 명예퇴직 효력이 발하였다면 근로자와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로관계는 종료됨.

또한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국방부장관 등의 임명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고 직장의 장은 이러한 지위를 전제로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라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12. 2. 23. 자 2011 헌마340 결정 참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4조제1항에서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퇴직 등을 고려하여 공석을 판단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장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국방부장관등의 임용행위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과 직장의 장의 근로계약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당 지휘관에 대한 국방부장관 또는 수임군부대장의 임명의 효력도 상실된다고 판단됨.

3.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 명예퇴직 후 해당 직장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선발 및 임명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

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6조 제2항이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퇴직한 후 해당 직장에서 사원 신분으로 직장예비군 지휘관 직위 이외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은 해당직장과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

그렇다면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명예퇴직을 한 후에는 해당 직장에서 사원 신분으로 직장예비군 지휘관 직위 이외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휘관 임무수행은 가능하지 않음. 끝.

질의 : 예비전력과-2624 (2018. 6. 22.)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6548 (2018. 7. 19.)

## 16. 한국국방연구원 임직원의 복무제도에 국가공무원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검토

### 【질의요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임직원의 복무(휴가/시간외 근무) 제도에 국가공무원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또는 근로기준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 【답 변】

정관 혹은 고용계약서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 별도의 명시적 내용이 없는 이상,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를 근거로 「공무원보수규정」 내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한국국방연구원 임직원의 시간외근무·휴가 제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 1. 한국국방연구원(KIDA) 임직원의 신분 및 지위

「한국국방연구원법」 제7조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하 ‘연구원’이라고 함)에 임원으로 원장 1명, 비상근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고, 위 법 제8조에 따르면 임원인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정관」(개정인가 2018. 5. 8. 이하 ‘정관’이라고 함) 제1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직원의 정원은 연구원 원장이 이사회 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정관 제17조 역시 임직원의 지위를 위 법 제11조와 똑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원법 제2조 제1항에서 연구원(KIDA)을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한 점, 위 법 제2조 제2항, 제3항,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인 설립 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고 등기하도록 한 점, 위 법 제3조에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연구원(KIDA)의 임직원은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위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임. 법제처 회신에서도 연구원(KIDA)이 넓은 의미의 국가행정기관에 속한다 하더라도 위 법 제2조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관계에 있어서 그 자신이 바로 사업주로서의 지위에 서는 기관이므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국가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국방부지식관리시스템 법령해석, 법제처 1995. 2. 11. 회신 참조). 국방부의 이전 법령 해석에서도 한국국방연구원의 임직원은 그 준거법인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임용된 것일 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비록 준거법에서 임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국방부지식관리시스템 법령해석, 국방부 법송과 1990. 4. 11. 문서번호 법송 24001-1140호 회신 참조).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 및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제17조에서 임직원의 복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뇌물죄 관련조항)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당초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부설 기관으로 설치·운영되던 국방관리연구소를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자원관리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연구원(KIDA)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든 한국국방연구원의 설립 목적(1986. 12. 23. 법률 제3861호 제정 이유 참조)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연구원의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일반 연구소의 임직원과는 달리,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보다 강화된 복무지침 등을 내리기 위함으로 보임. 본 사례와 같이, 같은 법령 및 정관의 구조와 내용을 갖춘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법령해석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3964, 2018. 4. 25. ‘국방과학연구소법 해석 관련 검토결과’ 회신 참조).

결국 연구원(KIDA) 임직원의 신분 및 지위는 한국국방연구원법령 및 정관에 의해 정해지고, 그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상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과연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를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 2. ‘준용’의 의의 및 한계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a라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A라는 법령의 규정을 a와는 유사하지만 본질상 이와 다른 b라는 사항에, 법문에 다소 수정을 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조문 그대로의 적용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고(도설 법률용어사전/2017. 2. 15. 발간/법전출판사 참조),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도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면서(법제처 2018. 1. 9. 회신 16-0034 해석례, 2016. 1. 15. 회신 12-0818 해석례 등 참조), 준용하는 법률과 준용되는 법률 간의 규정대상이나 법적 성격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내

용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준용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조문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적용되는 조문의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법제처 2018. 1. 9. 회신 10-044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연구원의 임직원(당연직 이사 제외)에게는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 결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등이 다소 수정된 형태로 연구원 임직원의 정관 또는 고용계약서 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 및 정관 제17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아닌,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장(제47조, 제48조)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법 해석 관련 검토결과’와 관련된 법령해석(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3964, 2018. 4. 25. 회신)에서도 “정관 혹은 고용계약서 등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 별도의 명시적 내용이 없는 이상,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를 근거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특히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제18조의5(연가보상비)에 각각 지급기준, 대상,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수당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6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5조(연가일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시간외근

무 및 휴가 제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분리하여 별개로 취급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여기서,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니까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위임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 제15조와 제16조를 적용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① 시간외근무 및 휴가 제도가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와 분리되어 별개로 취급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 ② 준용의 의미가 규정대상이나 법적 성격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준용 및 위임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에게 일괄 적용되는 시간외근무 및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의 임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 제도의 신분보장 없이, 취업규칙과 고용계약서에 의해 고용되는 연구원의 임직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점, ③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의 준용규정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제5장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 준용규정을 근거로 하여 시간외근무 및 휴가 제도에 관해 국가공무원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더욱이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제27조에서는 인사에 관한 규정, 급여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연구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취업규정」(개정 2018. 5. 1. 규정 제442호)에서는 제2장 “복무” 편에 출·퇴근 및 근무시간, 휴일, 휴직만을 규정한 체 제3장에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편을, 제4장에 휴가 편을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연구원의 정관 및 취업규정 등에서는 복무제도 내에 시간외근무와 휴가 제도를 포함하지 않고, 복무제도와 시간외근무·휴가 제도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3. 결 론

한국국방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과 뇌물죄에 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연구원의 임직원에게 「공무원보수규정」<sup>46)</sup>을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법 문언 상 명백하고, 나아가 정관 혹은 고용계약서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 별도의 명시적 내용이 없는 이상,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내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연구원 임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휴가 제도에 관해 국가공무원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기본정책과-2424 (2018. 7. 16.)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6869(2018. 7. 30.)

---

46) 「국가공무원법」 제5장 제47조, 제48조에서는 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수당과 연가 보상비,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17. 영관급 장교로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정밀장비기술자’에 항공기조종사가 포함되는지

###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영관급 장교로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정밀장비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 【답 변】

①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은 군의 인력수급을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전역을 보류시킬 수 있는 제도로 당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점과 영관급 장교 외의 부사관·준사관의 전역보류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군인사법」은 ‘항공기 조작·생산·수리기술자’외에 ‘항공기 조종사’를 별도로 기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공기 조작 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이 유】

#### 1. 문제의 제기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영관급 장교로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정밀장비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 지 질의한 바, ①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② ‘정밀장비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를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

2.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 여부

(1) 「군인사법」 제39 조 제1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전역보류를 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

「군인사법 시행령」 제정 당시에는 전역보류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1981. 3. 2. 「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229호]으로 개정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규정함. 이는 군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고급인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한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당사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전역보류 제도를 입법화한 것임.<sup>47)</sup>

이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전역보류를 할 수 있는 조항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한 바 있음.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은 현역정년이 경과된 뒤에도 군에서 필요한 유능한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고급인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정한 규정이므로 군에서 장기간 복무한 자에게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역을 보류시켜 주는 동법 제39조 제4항의 경우와 달리, 고급인력의 계속적 확보라는 공익적 사유는 군의 인력소요에 의거 결정할 문제이며, 현역정년에 달한 당해 영관급장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당해 영관급 장교가 전역을 원한다고 하여도 고급인력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역보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93. 5.20. 현역정년에 달한 장교의 전역보류)

그렇다면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은 당해 영관급 장교가 전역을 원한

47) 영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이나 계급정년에 불구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특수기술의 범위를 정함(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1981. 3. 2.][대통령령 제10229호, 1981.3.2., 일부개정] 제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고 하여도 고급인력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역보류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당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동 조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2)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이 영관급 장교 외에 다른 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

「군인사법」 제39조 제3항은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도달한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역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제4호는 ‘항공기 조작 생산 또는 수리 기술 분야 종사자’를 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영관장교의 전역보류 사유를 정한 「군인사법」 제44조 별표2의 ‘항공기 조작 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본 질의에 대한 해석은 영관급 장교 뿐만 아니라 준사관, 부사관의 ‘항공기 조작 기술 분야 종사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조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3.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영관급 장교로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정밀장비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며, 별표2의 제2호에서 항공기 조작·생산 또는 수리기술자를 규정합니다. 이 중 ‘항공기 조작 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 지 문제가 됨.

현 「군인사법」은 항공기 조작 기술자에 대하여 정의한 바가 없으므로 항공기 조작 기술자에 항공기조종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그러나 「군인사법」 제28조 제2항은 근속정년에 도달한 대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에 대하여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별표4는 ‘항공기 조종사’를 별도로 정하여 구별하고 있으므로 ‘항공기 조작 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4. 결론

① 군인사법 제39조 제1항은 군의 인력수급을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전역을 보류시킬 수 있는 제도로 당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점과 영관급 장교 외의 부사관·준사관의 전역보류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군인사법은 ‘항공기 조작·생산·수리기술자’ 외에 ‘항공기 조종사’를 별도로 기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공기 조작 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3083 (2018. 8. 24.)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7997 (2018. 9. 5.)

## 18. 임기제 진급자 최저복무기간 충족여부 및 임기계산 시점관련

### 【질의요지】

1. 임기제 준장이 2년 임기를 마친 후 전직·재보직하여 복무중인 경우, 최저복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진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임기제 진급자가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한 경우, 최초 임기제 진급 시점부터 임기를 계산하는 지, 차상위 계급 진급 시점부터 임기를 계산하는 지 여부

### 【답 변】

1. 임기제 진급자도 상위계급으로 진급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이 있으므로 법제처 해석례를 참고하시기 바람.<sup>48)</sup>
2.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한 자에 대하여, 최초 임기제 진급 시점을 기준으로 임기를 2년(전직, 재보직시 등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움.

### 【이 유】

#### 1. 문제의 제기

임기제 진급자가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한 경우, 임기제 진급제도 취지에 비추어 최초 임기제 진급 시점부터 임기를 계산하는 지<sup>49)</sup>, 차상위 계급 진급

48)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4-0092, 2014.5.22., 민원인]

49) 공군본부 법제과에서 참조하라는 회신서[임기제로 진급된 자의 임기, '00.4.18. 법제 33010-193]는 “임기제 진급자가 재진급한 경우”는 전제하지 않은 해석례임.

시점부터 임기를 계산하는 지 여부가 문제됨.

2.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에 대한 해석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은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함.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은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

이에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에 대한 해석으로 임기제진급자가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더라도 ‘최초의 임기제 진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제한적인 해석이 가능한 지 문제됨.

직업군인에게 있어 진급은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진급이나 임기를 제한하려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은 임기제 진급자가 다시 그 직위에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명시적인 제한 규정 없이 임기제 진급자에 대해서만 진급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법제처 해석례<sup>50)</sup>를 고려할 때,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한 자에 대하여, 최초 임기제 진급 시점을 기준으로 임기를 2년(전직, 재보직시 등 최대 4년)으로 제한하

50)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4-0092, 2014.5.22., 민원인]

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움.

### 3. 결론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한 자에 대하여, 최초 임기제 진급 시점을 기준으로 임기를 2년(전직, 재보직시 등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움. 끝.

질의 : 공군본부 법제과-3122 (2018. 8. 8.)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8261 (2018. 9. 12.)

## 19. 장교정원조정계획의 일환으로 군 교수의 정원조정이 이뤄질 경우, 일부 감원되는 직위의 군 교수를 면직시킬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장교 정원조정계획의 일환으로 군 교수의 정원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일부 감원되는 직위의 군 교수를 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인에게도 「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군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 유】

본 사안은 장교 정원조정계획의 일환으로 군 교수의 정원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군인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에는 직제나 정원의 개폐·조정에 따른 면직 규정은 없음.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군 교수의 정원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일부 감원되는 직위의 군 교수를 면직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됨.

「군인사법」 제1조는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군인사법」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군인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군인사법」이 적용되고, 「군인사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등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임용권자의 직권 면직에 대해 규정하며, 제1항 제3호에서 그 사유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를 들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군인사법」에는 직제나 정원의 개폐·조정 에 따른 면직 규정이 없으나 이러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군인 역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의 직권 면직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임<sup>51)52)</sup>.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sup>53)</sup>, 면직 기준이나

51)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교육공무원법 제1조), 판례 또한 교육공무원인 공립유치원 교사를 「국가공무원법」상 사유에 근거하여 직권면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임(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52) 이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8조 등을 근거로 하여 군 교수는 일반 군인과 달리 불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바, 군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하지 않은 이상 60세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임. 그러나 「군인사법」 제8조는 일반적인 경우 군 교수에게 60세의 정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일 뿐, 「군인사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일체의 불이익한 인사 처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움. 일례로 군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60세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반면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은 연령정년 없이 기본적으로 60세 정년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일반직 공무원 역시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직권 면직이 가능함. 또한 군 교수에 대한 60세 정년 보장 규정이 일체의 불이익한 인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군 교수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상의 파면·해임도 불가해야 할 것인 바 이는 인사 실무와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군인사법」 제8조 등을 근거로 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도 군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53)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

면직 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내지 제4항).

또한 군 교수 양성에 많은 국가예산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군 교수에게 안정적 신분을 보장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군 교수의 60세 정년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도 부정되는 것은 아님. 판례 또한 유사 사안에서 ‘임용 형태·업무 실적·직무수행 능력·징계처분 사실’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사람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sup>54)</sup>, 가능한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임.

종합하면 군인에게도 「국가공무원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군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임. 끝.

질의 : 조직관리담당관-745 (2018. 7. 20.)

회신 : 법무담당관-6218 (2018. 9. 20.)

---

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중략) 제3항에서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직권면직을 제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 정해진 기준인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3775 판결).

54)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20. 임기제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되는지

### 【질의요지】

임기제(종전 계약)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임기제(종전 계약) 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되는 지 여부

### 【답 변】

계약군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계약군무원으로 재직 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음.

### 【이 유】

#### 1. 문제의 제기

계약군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계약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되는 지 여부는 군무원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을 준용할지 여부가 문제됨.

2. 계약직공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4852호 일부개정 2013.11.20.] 제31조 제1항은 공

무원이 승진하려면 일반직공무원에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9항은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특수경력직<sup>55)</sup>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에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2013.3.25., 일부개정] 제5조제1항은 임용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계약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정하였음.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음.

3. 계약군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계약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계약군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계약군무원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으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할 지 여부가 문제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에 상응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과는 다른 군무원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 것 인지 불분명하며, 진급은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면 해당 조항을 배제하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

---

55) 국가공무원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로 계약직공무원을 규정하였으나, 2012.12.11.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시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통합하였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 개정이유 법률 제11530호 일부개정 2012.12.11].

야 할 것인데 명시적인 배제조항이 없으므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무원인사법 제47조 제1항 및 제137조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을 준용해야 함.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137조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을 준용해야 함.

#### 4.. 결론

계약군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계약군무원으로 재직할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음.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2961 (2018. 8. 14.)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8724 (2018. 9. 28.)

## 21. 사관학교 교수를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단독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사관학교의 군무원 교수를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특정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으로 단독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사관학교 특정직 공무원(교육공무원)의 채용방법이나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사관학교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일반학 교수의 임용은 궁극적으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사관학교 일반학 과정과 일반학 교수에게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이 상당 부분 준용되거나 적용되므로,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상의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국방부장관이 사관학교 일반학 교수에 대한 임용권한으로서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 동의, 군참모총장이나 학교장의 제청을 얻어 임명하면 되고, 특별히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에서는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 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각 사관학교에 군사학 교관과 일반학 교관(교수·부교수·조교수)을 두되, 일반학 교관의 자격·임명권 등에 관한 사항은 위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등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위 법 제6조의2에 의거, 사관학교 내 군인이나 군무원

이 아닌 ‘공무원’ 교수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규정된 임용기간, 보수, 연수, 신분보장, 징계 및 소청 규정들이 준용되는 결과, 비록 사관학교 공무원 교수의 임용이 국방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위 열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등이 적용됨.

그렇다면, 사관학교 특정직 공무원(교육공무원)의 채용방법이나 특별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사관학교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오직 그 자격·임명권 등에 관한 사항이 위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규율될 뿐임. 다만, ① 사관학교 설치법의 목적이 군 장교로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군사학 과정 및 일반학 과정)을 받게 하려는 특수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인 점(법 제1조), ②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일반학 교관의 정원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제15조에서는 일반학 교관 중 교수·부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한 후, 그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하여 대통령위임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관학교 일반학 교수의 임용은 궁극적으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군사학이 아닌, 일반학 과정과 일반학 교관(교수)에게는 그 법적 성질이나 내용 상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이 상당 부분 준용되거나 적용되는 점(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20조 등), ④ ‘특별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4호의 “공무원” 개념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가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관학

교 군무원 교수의 특정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도 같은 취지와 법적 성격 상 위 공개전형의 예외로 포섭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상의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국방부장관이 사관학교 일반학 교수에 대한 임용권한으로서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 동의, 군참모총장이나 학교장의 제청을 얻어 임명하면 되고, 특별히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교육훈련정책과-3731(2018. 10. 31.)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9681(2018. 10. 31.)

## 22.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를 심신장애를 사유로 퇴학시킬 경우 어느 제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지 여부

### 【질의요지】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를 심신장애를 사유로 퇴학시킬 경우 어느 제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사관생도는 다른 사관생도와는 달리 ‘사관생도의 군적’에 편입되고, 졸업 전에 그 자격을 상실하는 ‘퇴학’은 군인사법 상 전역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간호사관생도의 퇴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때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자문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제8조, 제18조, 제20조). 입법론으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대 운영예규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 심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 내지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간호사관생도를 포함한 모든 사관생도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 유】

「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에 따라 설치된 각 군 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으로, 그 사관생도가 입학한 날로부터 각 군의 군적에 편입되는 반면(「사관학

교 설치법 시행령」 제28조),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사관생도는 다른 사관학교의 사관생도와는 달리 특별히 ‘사관생도의 군적’에 편입됨(「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제4조).

한편, 사관생도의 심신장애 사안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를 근거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사관생도의 경우에도 해석 상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육군 법무실의 법령질의회신(2005. 12. 16. 육본 법제과-870, 2003. 9. 6. 육법제18501-030182 참조)이 존재하기는 하나, 간호사관생도의 경우 ① 각 군의 군적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각 군 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대상은 아닌 점, ②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대 운영 예규는 위 학교에 적용되는 내부규칙일 뿐(제2조), 위 예규에서 육군본부 전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한다고 해서(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각 군 본부나 상급제대인 국방부가 위 예규에 기속될 것은 아닌 점, ③ 위 유추해석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입법상 과오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광범위하게 확장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안의 간호사관생도는 육군본부 전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요컨대,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대 운영 예규」 제5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간호사관생도의 “퇴학”은 입학한 사관생도가 졸업 전에 해당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군인사법」상의 “전역”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본 사안에서 간호사관생도의 퇴학 및 제적에 관한 근거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보임. 따라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은 위 법령 상 근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간호사관생도의 퇴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때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자문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위 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입법론으로는 생도대 운영 예규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 내지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간호사관생도를 포함한 모든 사관생도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여부에 대해 새로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2018. 10. 29.)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11088(2018. 12. 12.)

## 23. 군인사법 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 지 여부

###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악화된 사람은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0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므로, 「군인사법」 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이 유】

「군인사법」 제54조 제2호는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 시 군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의2에서는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우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고 함)로 구분하고 있는 바, 본 사안은 이 때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임.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전사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에서 정하고 있음. 특히 공상자의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이 중 ‘질병’이 명시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2-2-5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2-6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악화된 사람
2-3-6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3-11	2-3-1부터 2-3-10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악화된 사람

즉 전사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군인사법 시행령」별표 10에는 명시적으로 ‘질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악화된 사람은 「군인사법 시행령」별표 10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므로, 「군인사법」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영현관리심사/제도팀-3489 (2018. 11. 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335 (2019. 2. 7.)

## 24. 인력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진급을 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33조(장교의 임시계급 부여)에 따라 임시계급은 전시·사변, 국가 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상위 계급을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운영 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진급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군인사법」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면 임시진급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질의부서 담당자의 구두설명에 의하면 이전에 있었던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현재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회신함.

임시계급부여란 전시, 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군인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으로써는 상위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 그 상위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 1계급에 한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법 제33조에 따른 “증편”은 해당 군의 총병력이 증가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군의 증편’으로 인한 군 총병력의 증가와 부대의 증설 또는 확장이 단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계획,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의 단계적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의 ‘군의 증편’이 당해 연도의 군의 증편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전의 군의 증편에 의하여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군의 증편을 행한 당해연도 이후에라도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임시계급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이에 따른 상위계급의 궐원의 보충은 인력수급의 한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당해연도에 모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으로 장기간의 단계적 과정에 의해서 1진급 연도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바, 임시진급 제도는 군의 증편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만으로는 상위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 제33조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결국 군의 증편으로 인한 궐원의 보충은 이전에 군의 증편이 있는 후에 법 제26조에 의한 상위계급 궐원의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궐원이 보충될 때까지 인력수급정책과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계급별, 병과별로 임시진급에 의해 계속적으로 1진급 연도마다 궐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끝.

질의 : 인력정책과-1127(2019. 3. 2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287(2019. 4. 4.)

## 25. 부대개편에 따른 계약해지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훈령에 위반되는지

### 【질의요지】

부대개편에 따른 민간조리원 계약해지가 「근로기준법」,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반하는지 여부

### 【답 변】

부대개편의 사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면서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근로자의 대표와 협의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한 민간조리원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유】

1. 본 사안 질의는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의견의 대립이 되는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므로, 법률자문의 형태로 답변함.

2. 본 사안 질의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이하 “훈령”이라 함)을 준용하여 공무직으로 채용·운용 중인 민간조리원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이고, 훈령 제2조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본 자문 대상 민간 조리원 역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상정하고 답변함.

3. 세부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이 때 경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가 있는 경우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음.

그리고 훈령 제23조 제2항은 공무원직 근로자 등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각 호에서 그 사유를 들고 있고, 특히 공무원직 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제4호)에는 법 제24조에 따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훈령 제23조 제2항 제4호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를, 나머지 각 호 사유는 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따른 해고를 규정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음.

이때, 판례는 “해고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행해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본 질의 사안의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부대개편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법 제23조, 훈령 제23조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해 보임

따라서, 본 질의 사안 대상 계약의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는 법 제24조, 훈령 제23조 제4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함.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 법 제24조 제1항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 하고 있고,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며, 훈령 역시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한 사유로 보고 있는 바, 본 질의사안의 경우 부대 개편이 이루어진 경위, 부대 개편으로 축소되는 사업의 범위, 다른 직위·지역 등으로의 전속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대개편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이들 민간조리원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임.

나아가, 법 제24조 제5항 및 훈령 제23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조리원의 계약 해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령에서 정한 절차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끝.

질의 : 물자관리과-1659(2019. 3. 29.)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3337(2019. 4. 5.)

## 26. 직장에 설치된 예비군부대의 참모는 예비군법 제12조에 따른 정치운동의 금지대상인지

【질의요지】

직장에 설치된 예비군부대의 참모는 「예비군법」 제12조에 따른 정치운동(정당가입 등)의 금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직장예비군부대 참모는 「예비군법」 제12조 제1항의 정치운동 등의 금지 대상 중 하나인 ‘지휘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유】

「예비군법」 제12조 제1항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함. 「예비군법」 제15조 제6항에서 위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 제12조 제1항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의하여 지휘관으로서 선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예비군부대의 참모는 위 법 제12조 제1항의 ‘지휘관’이라고 볼 수 없음. 다만 직장예비군부대의 참모가 위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제12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정치운동의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끝.

질의 : 예비전력과-1611 (2019. 4. 10.)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4009 (2019. 4. 23.)

## 27.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역장병 DB를 신원조사 시스템에서 신원조사 목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지

### 【질의요지】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역장병 개인인사 DB(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다운받아, 안보지원사의 신원조사시스템 상에서 신원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답 변】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역장병 개인인사 DB(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공받으려면, 안보지원사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각 군이 보유한 개인인사DB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이 유】

1.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정보 DB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sup>56)</sup>는 ① 정보주체의 동의

56)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를 받거나 ② 동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sup>57)</sup> 따라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군인사법 제63조는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sup>58)</sup>,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은 소속 군인 군무원의 인사자료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및 국직부대 기관의 장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sup>59)</sup>하고 있으므로,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 기관의 장이 각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따라서 각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안보지원사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 대한 제공<sup>60)</sup>으로 보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범위 내에서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각 군 참모총장이 인사기록을 안보지원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소속 군인·군무원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것

57)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8) 군인사법 제63조

59) 제6조(업무분장) 국방인사체계 운영과 관련된 부대·부서 및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

가. 소속 군인·군무원의 병적 또는 인사에 관한 모든 기록(이하 “인사자료”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의 수정·변경·삭제·유통·제공 등 운용에 대한 책임

6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가. 용어 정의

○ “제공”이란

- ▶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 ▶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한 해당 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 (수탁자는 제외)

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방인사정보체계와 신원조사정보체계의 개인정보 수집목적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각 군이 인사자료를 안보지원사에 제공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방인사정보체계의 문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 국방인사체계가 타 체계의 업무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개인식별번호, 민감정보 포함)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득한 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를 타 체계에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동의 및 각 군의 담당자의 검토를 받은 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본 내용의 동의여부는 국방인사체계 활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동의거부에 따른 개인업무(급여,수당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개인정보처리자(각 군 참모총장)가 안보지원사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지원사가 각 군에 정보제공을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sup>61)</sup>고 하면서 군인·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에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는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였음.(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45조) 또한,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은 신원조사 사항<sup>61)</sup>, 신원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보지원사는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61) ①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② 등록기준지 및 주소, ③ 친교 인물, ④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⑤ 국적 변동 내역, ⑥ 학력 및 경력, ⑦ 가족관계, ⑧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⑨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⑩ 인품 및 소행, ⑪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⑫ 해외 거주 사실 ⑬ 그 밖의 참고사항

나. 또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0조는 각급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정한 사실의 확인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동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음. 따라서 안보지원사가 정보주체로부터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정보를 안보지원사가 제공받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다면, 각 군으로부터 개인 인사기록을 제공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sup>62)</sup>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할 것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90p>

Q :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A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다만,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대신 제출한 후 개인정보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 그런데 안보지원사가 제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62) 금융감독원 발간 2016

에 따르면, 안보지원사가 직접 수집하는 항목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하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는지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 그리고 제3자 제공동의와 관련된 항목에서도 어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지도 명확하지 않은 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그리고 동의서 문구에 명시하였듯이 신원조사 종료 후에는 반드시 관련 개인정보가 파기되어야 할 것이며<sup>63)</sup>, 신원조사 필요시에는 그 때마다 별도로 동의서를 받아야 함.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에서, 보안규정이 명시한 목적(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을 검증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임. 끝.

질의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과-5387(2019. 7. 17.)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8406(2019. 8. 20.)

---

63) 이와 관련하여 질의부서의 담당자는 해당 자료가 안보지원사 신원조사시스템에 탑재되고, 신원조사 결과가 신원조사 의뢰기관으로 회신되면, 자동적으로 삭제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28. 군인사법 상 병과장의 임기 관련

### 【질의요지】

- 1-1.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대리근무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1-2.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우수자 선발 등의 사유로 병과장이 임기 2년을 도래하지 않고도 면직이 가능한지 여부
2.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병과장 임기를 마치고 유사직위에 전직될 경우 반드시 2년 이상이 남아야 전직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1-1.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병과장의 임기 2년에 대리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1-2.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우수자 선발 등의 사유로 임기 2년을 도래하지 않은 병과장을 면직시킬 수 없음.
2. 병과장 전직대상자를 반드시 2년의 임기가 가능한 자로 제한할 수 없음.

### 【이 유】

- 1-1.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대리근무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리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다만, 육규110 장 교인사관리규정 제65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병과장이 임기 만료 전

그 직에서 물러난 경우, 그 잔여임기에 대하여는 후임 병과장을 병과장 직무 대리로 임명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여기서 ‘그 잔여 임기’란 전임 병과장의 잔여임기를 가르킨다고 할 것이고, 후임 병과장은 전 임 병과장의 잔여임기 동안 전임 병과장의 직무대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므로 후임 병과장의 임기는 정식으로 병과장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2년의 임기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병과장의 임기 2년에 대리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1-2.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우수자 선발 등의 사유로 병과장이 임기 2년을 도래하지 않고도 면직이 가능한지 여부

군인의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군인사법」 제35조), 정년 전역(「군인사법」 제36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군인사법」 제37조), 제적(「군인사법」 제40조) 등이 있음.

법률인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병과장에 대하여 임기를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상 전역 또는 보직해임(「군인사법」 제17조) 등 다른 전역사유가 없는 한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우수자 선발 등의 사유로 임기 2년을 도래하지 않은 병과장을 면직시킬 수 없음.

2.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병과장 임기를 마치고 유사직위에 전직될 경우 반드시 2년 이상이 남아야 전직이 가능한지 여부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병과장이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상 전역 또는 보직해임 등 다른 전역사유가 없는 한 임기 2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임. 따라서 병과장으로서 전직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2년의 보직임기가 가능한 자로 제한하는 ‘소극적 자격 요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병과장 전직대상자를 반드시 2년의 임기가 가능한

자료 제한할 수 없음. 끝.

질의 : 국군의무사령부 법무실-2276(2019. 8. 13.)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2019. 8. 26.)

## 29. 전역을 이유로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이 있고 전역 후 한시임기제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에 해당하는지

### 【질의요지】

징계 대상자였던 군인에 대해 전역을 이유로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이 있었으나 위 인원이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경우,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상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불요구 결정을 취소하고 재차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답 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1조 제1항의 ‘새로운 중요한 증거’란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절차 당시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 후 전역한 당사자가 한시임기제 군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경우를 ‘훈령’ 제21조 제1항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재차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이 유】

1. 훈령 제21조 제1항은 ‘징계권자는 징계업무담당자로부터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받은 경우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불요구한 사건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하여<sup>64)</sup>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전의 불요구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징계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석사례는 보이지 않으나, 형사소송의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하략)'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0모363 결정) 위와 같은 해석례를 고려하면, 이 훈령 제21조의 '새로운 증거'는 해당 징계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가 징계불요구 결정 이후에 발견되거나 제출되는 것을 의미하며(즉 해당 징계절차 진행 당시 징계사유와 관련된 증거 자체는 존재하여야 함.) 특히, 중요한 증거라 함은 종전의 결정을 바꿀만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3. 본 사안과 관련하여 회계감사담당관은 2018.12.3. 감사처분 요구를, 당사자는 이에 대해 2019.1.9.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당사자가 2019.1.31. 전역하자 징계권자는 2019.2.22.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음. 그리고 해당 징계절차 이후(以後) 당사자는 2019.5.7. 한시 임기제군무원으로 임용되었음. 그런데 당사자가 2019.5.7. 한시 임기제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징계절차 이후 발생한 사유일 뿐, 원래 징계절차에서 존재하던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한시 임기제군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이 훈령 제21조 제1항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끝.

질의 : 국방정보본부 계획운영실-9107(2019. 8. 27.)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8974(2019. 9. 4.)

---

64) 본 사안은 감사원법 제32조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 30.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심사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속 복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요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심사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계속 복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 등위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전역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대상자를 전역시키지 아니하고 군복무를 계속 복무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 복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 유】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키는 제도임(「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그에 따른 심신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위임하고 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

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고,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에서 2007. 10. 5. 선고한 퇴역처분취소 사건에서 판례는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장교 등의 심신장애로 인한 퇴역 등에 관한 기준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없이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따라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구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398 퇴역처분취소)고 판시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2007. 5. 2. 선고한 전역처분취소 사건에서도 판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심신장애의 여러 가지 유형을 나열한 후 일정한 등급에 해당할 경우 전역의 기준이 됨을 정하고 있을 뿐 전역의 기준이 되는 심신장애등급에 해당하면 그것만으로 당연히 그 심신장애로 인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시행규칙에 의한 심신장애등급 1 내지 7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종합적 전투수행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373 전역처분취소)고 판시한 바 있음.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이나(「군인사법」 제37조 제3항) ‘심신장애의 정도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

3항)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이 현역 복무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계속 복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은 문언상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 등위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전역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대상자를 전역시키지 아니하고 군복무를 계속 복무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 복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인사기획관리과-14457(2019. 9. 2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0214(2019. 10. 14.)

### 31. 임기제로서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이나 직제개편으로 전직된 경우 군인사법 제24조의 2에서 정한 ‘전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기제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이나 직제개편으로 전직(보직 변경)된 경우, 그 임기 만료 후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보직’ 또는 유사한 계통으로의 ‘전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기제 진급된 사람이 직제개편으로 보직변경된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에 따라 그 진급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보직’ 또는 유사한 계통으로 ‘전직’할 수 있음.

#### 【이 유】

‘임기제 진급제도’는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임기제 진급 제도에 따라 진급할 경우 그 임기는 2년이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됨(동조 제2항).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됨(동조 제2항 단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위 「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를 정하고, 동조 제6항은 “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동조 제8항에서는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위 규정의 문언적 해석상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제 진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이 지난 때 임기가 만료된다고 보아야 함.

그런데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기제 진급된 사람이 직제 개편으로 보직 변경된 경우, 그 임기 만료 후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보직’ 또는 유사한 계통으로의 ‘전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생각건대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재보직’ 또는 유사한 계통으로의 ‘전직’을 규정하고 있고, 각 규정의 문언적 해석과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5조에서 ‘보직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보직’ 또는 유사한 계통으로의 ‘전직’을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에서 정한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만약 이를 동일하게 본다면 임기만료일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6항과 제8항은 충돌이 일어나게 됨. 그러므로 보직 변경된 임기제 진급자에 대하여도 법률에서 보장하는 임기와 전직 등의 기회가 보장되고, 각 규정이 충돌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함.

따라서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기제 진급된 사람이 직제 개편으로 보직 변경된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에 따라 그 진급

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임기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보직’ 또는 유사한 계통으로 ‘전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3572(2019. 9. 27.)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10376(2019. 10. 17.)

# 제3장 병역

## 32. 병역법 제17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 기한 내에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정밀신체검사까지 종료해야 하는지

### 【질의요지】

「병역법」 제17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 기한(7일) 내에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정밀신체검사까지 종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병역법」 제17조 제1항의 ‘신체검사’는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는 물론 군병원의 ‘정밀신체검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 기한(7일) 내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정밀신체검사까지 종료하여야 함.

### 【이 유】

「병역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체검사’의 범위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 뿐만 아니라 군병원에서의 정밀신체검사가 포함되는지가 됨.

「병역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체검사의 주체는 ‘입영부대의 장’인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상의 ‘입영신체검사’ 뿐만 아니라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 또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에 한하여 입영부대의 장이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인 점, ‘입영신체검사’와 ‘정밀신체검

사’는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후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가려 귀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훈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인 점, 위 법 제17조 제2항 이하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이하는 모두 ‘입영신체검사’와 ‘정밀신체검사’가 동법 제17조 제1항 상의 ‘신체검사’임을 전제로 귀가한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만약 위 법 제17조 제1항의 ‘신체검사’에 ‘정밀신체검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입영한 후 ‘정밀신체검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귀가할 수 없는데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그 기한이 무한정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위 법 제17조 제1항의 ‘신체검사’는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는 물론 군병원의 ‘정밀신체검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 기한(7일) 내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정밀신체검사까지 종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726 (2019. 2. 2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280 (2019. 3. 8.)

# 제4장 복 지

(보수 · 연금 · 보훈 · 국립묘지안장)

### 33. 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의 요건에 전환복무를 위하여 군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 복무되어 전환된 자가 포함되는지

#### 【질의요지】

「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의 요건에 전환복무를 위하여 군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되어 전역한 자가 포함되는 지 여부

#### 【답 변】

1. 전환복무 추천받은 사람이 군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전환복무되기 전의 신분은 「병역법」 제25조 상 “현역병지원자”로 분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군인연금법」 제32조의 “군인”에 해당함.

2. 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고 전환복무되어 근무하다가 조기 전역을 한 자가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군인연금법」 제32조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 유】

1. 「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 요건 검토

「군인연금법」 제32조는 “① 군인이 ②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③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

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4호의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라고 규정함.

전환복무를 위하여 군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중 부상을 입고, 의무경찰 대원으로 전환복무 되어 전역한 자가 「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① 전환복무를 위하여 입소한 자가 「군인연금법」 제32조 군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전환복무되어 근무하다가 전역한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군에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2. 전환복무를 위하여 입소한 자가 「군인연금법」 제32조 군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로부터 기상하여 현역병과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전환복무 추천받은 사람이 군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전환복무되기 전의 신분은 「병역법」 제25조상 “현역병지원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군인연금법 제32조 “군인”에 해당함.

3. 군인에서 전환복무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근무하다가 전역한 경우, 「군인연금법」 제32조 요건 충족여부

「군인연금법」 제32조의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고 전역을 하는 자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그 전역이 의병전역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0.12.선고, 2006두9023판결례 참조)고 하므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군인이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고 전역하는 자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병역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5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현역을 마친 현역병과 같이 예비역으로 편입하고 있는 점<sup>65)</sup>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다를 뿐 신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고 전역을 하는 자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원과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다를 뿐 신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고 의무경찰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조기 전역을 한 자가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65) 국가보훈처-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제7조), 법령해석례 10-0087 참조

면 「군인연금법」 제32조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동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4급” 판정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퇴직 후 6개월 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됨. 끝.

질의 : 군인연금과-59(2018. 1. 3..)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1399(2018. 2. 8.)

## 3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유족의 판단기준 시점 등

### 【질의요지】

1.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유족의 판단 기준 시점
2. 미성년자가 경제활동 시작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정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답 변】

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유족 판단은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미성년자가 경제활동 시작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조정지급도 가능할 것임

### 【이 유】

#### ■ 질의 1에 관하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르면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sup>66)</sup>하거나 상<sup>67)</sup>을 입은 사람’을 말하고<sup>68)</sup>,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

66)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

6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함

68)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함. 그런데 지뢰피해자의 사망 시기와 위로금 등 지급 결정 시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에 따른 유족의 판단 기준 시점이 문제되는 사안임.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과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재일교포 특임자법’이라고 함)에 따른 유족 판단이 문제된 사안에서, 유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민법」은 ‘현행 「민법」’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sup>69)</sup>. 상기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재산상속과는 달리 위 법률의 제정에 따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 당시에는 상속대상 재산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사회정책적으로도 일반적인 재산상속이 아닌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민법」이 1960년 1월 1일에 최초 시행된 사실을 고려할 때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경우 1960년 이전 사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임.

지뢰피해자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재일교포 특임자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유사하고 유족의 정의 및 권리에 대한 규정도 거의 동일함<sup>70)</sup>. 또한 지뢰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청구권 역시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재산상속이 아니라 지뢰피해자법 제정에 따라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망시

69) 법제처 12-0072 해석례, 2012. 3. 15.

70) 지뢰피해자법은 ‘유족’을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제2조제3호)으로 정의하고,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재일교포 특임자법은 ‘유족’을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제2조제3호)으로 정의하고,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음

「민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53년 7월 27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까지의 사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문제되는 점 역시 같음.

한편 유사한 경우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있어서는 사망 당시의 「민법」을 적용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는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사망 당시의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안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지뢰피해자법에서 ‘사망 당시의 민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현행 「민법」을 적용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함<sup>71)</sup>.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지뢰피해자법의 유족 판단 기준으로서의 「민법」은 피해자의 사망시가 아닌 현행 「민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 질의 2에 관하여

본 사안은 미성년자인 지뢰피해자가 경제활동 시작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조정지급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임.

일단 지뢰피해자법 제4조에서는 위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뢰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제1항제1호), 지뢰피해로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제1항제3호), 지뢰피해로 상이를 입고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항)를 각각 나누고 있음.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위로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71) 제정 시기를 보더라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4. 1. 29.이고 지뢰피해자법은 2014. 10. 15.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되었음

1) 지뢰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균임금<sup>72)</sup>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지뢰피해로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신체의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균임금에 사망한 때부터 장래의 취업가능기간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3) 지뢰피해로 상이를 입고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신체의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는 배상기준을 정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sup>73)</sup>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장애의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을 각각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리고 판례는 「국가배상

72)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뜻하며 이하 동일함

73) 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함

법」 제3조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대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만 22세부터 만 60세까지, 여자의 경우 만 19세부터 만 60세까지로 보고 있음<sup>74)</sup>. 그런데 위로금 또는 배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뢰피해자법 제4조와 「국가배상법」 제3조는 그 구조가 유사하고, 중간이자 공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뢰피해자법에 있어서도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위 판례와 같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만약 그렇다면 본 사안과 같이 미성년자가 경제활동 시작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로금이 0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이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지급이 가능할 것임.

정리하면 「국가배상법」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할 때 미성년자가 경제활동 시작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뢰피해자법에 따른 위로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조정지급도 가능할 것임. 끝.

질의 : 지뢰피해자지원단-586(2018. 3. 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961(2018. 4. 25.)

---

74) 서울중앙지법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광주지법 2016. 12. 23. 선고 2015가합57401 판결 등. 이는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지뢰피해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공히 취업가능기간 산정 시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 35.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공무원 보수규정 등 적용가능 여부

### 【질의요지】

국방과학연구소(부설기구 포함) 임직원의 「공무원 보수규정 등」 적용가능여부

### 【답 변】

정관 혹은 고용계약서 등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 별도의 명시적 내용이 없는 이상 「국가공무원법」 제14조를 근거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서는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고 하고 있음.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법」 제9조에 따르면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명 내외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고, 제10조에 따르면 소장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13조에 따르면 연구소에 그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두도록 하면서 시험시설 등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질의사안은 이러한 임·직원의 보수를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제5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되어 있고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게 「공무원보수규정」<sup>75)</sup>을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법 문언 상 명백하다 판단됨.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제4조에 따르면 법인 설립 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의 정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지위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이 때 제14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주국방을 지향하는 국가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개발·연구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는 국방

75) 「국가공무원법」 제5장 제47조에서는 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과학연구소의 설립 목적(1970. 12. 31. 법률 제2258호 제정 이유 참조)을 고려하여, 임직원들에게 일반 연구소의 임직원과는 달리 보다 강화된 복무지침 등을 내리기 위함이라 판단됨.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정관 혹은 고용계약서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 별도의 명시적 내용이 없는 이상 「국가공무원법」 제14조를 근거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전력정책과-1581(2018. 3. 26.)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3964(2018. 4. 25.)

## 36. 부대파견 민간검사의 군 병원 진료가능 여부 등

### 【질의요지】

1. 부대 파견 민간검사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
2. 부대 파견 민간검사에 현역군인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1. 부대 파견 민간검사도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2. 부대 파견 민간검사는 ‘민간인’이므로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4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 유】

1. 「군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규칙인 국방 환자관리 훈령(이하 ‘이 훈령’이라고 합니다.) 제4조는 진료대상자로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훈령 제82조는 ‘전·평시에 군인과 행동을 같이 하는 군무원·노무자·종군기자 등 군에 종사하는 요원에게 진료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보지원사령부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군에 해당하며, 안보지원사의 감찰실장과 감찰지도관은 안보지원사령부 내에 직위이고, 위 직위에 보임한 민간검사는 비록 군인의 신분<sup>76)</sup>은 아니지만, 현재 안보지원사에서 다른 부대원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

7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병)을 말한다.

근무하고 있음. 따라서 안보지원사 감찰실장 및 감찰지도관은 위 훈령 제82조의 ‘평시에 군인과 행동을 같이하는 군무원·노무자·종군기자 등 군에 종사하는<sup>77)</sup> 요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군보건 의료기관은 이들에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다만, 이 훈령 제82조에서 진료대상자로 ‘군무원·노무자·종군기자 등 군에 종사하는 요원’을 명시한 것과는 달리 제84조 제2항은 군무원에 대해서만 현역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무자·종군기자 등의 진료비용 처리와 관련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제84조 제2항의 문언이 ‘군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상, 본 조항을 노무자·종군기자 등 군에 종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보이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sup>78)</sup>, 군형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sup>79)</sup> 노무자·종군기자 등 군에 종사하는 일반 민간인과 군무원 간에는 신분상 차이가 명확히 존재함. 따라서 안보지원사 감찰실장 및 감찰지도관에 보임한 민간검사의 진료비 처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현역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법무실-721('19. 5. 20.)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5245('19. 5. 22.)

77) ‘종사하는’의 의미는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하다.’를 의미합니다.

78) 군무원 인사법 제4조 (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제1조 (적용대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군무원

### 37. 국방부로부터 파견명령을 받은 현역 연구위원이 연구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군인보수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

#### 【질의요지】

- 「한국국방연구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로부터 파견 명령을 받은 현역 군인을 연구위원(이하 “현역 연구위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국방연구원은 자체 규정인 「수탁연구용역 관리 방침」 제21조 규정에 따라 현역 연구위원에게 연구촉진장려금(성과급 성격)을 지급하였음.
- 현역 연구위원은 소속 군으로부터 1년에 1회 국방예산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도 성과급 성격의 연구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 현역 연구위원이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연구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군인보수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46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답 변】

연구촉진장려금이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7조의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군인보수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46조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이 유】

1.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군인보수법은 ‘이 법에 따

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으며, 보수를 기본급여(① 봉급<sup>80</sup>), ② 가족수당<sup>81</sup>), ③ 주택수당<sup>82</sup>)와 특별급여(① 특수근무수당<sup>83</sup>), ② 전투근무수당<sup>84</sup>), ③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sup>85</sup>)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국방연구원법 제17조는 국방연구원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군인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복무하는 자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여,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과 국방연구원법 제17조의 내용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위 두 법률간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그런데 한국국방연구원 법은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방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으로 군인보수법과 한국국방연구원법 간에 특별법-일반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군인보수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한다고 규정한 조항도 보이지 않는 점<sup>86</sup>), 대법원은 2018. 6.21. 선고 2015두 48655판결에서 ‘어느 하나가 적용 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

80) 제7조 (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3.11>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81) 제13조 (가족수당)

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제14조 (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3) 제16조(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 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84)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85) 제17조의2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상여금)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86) 참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 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46조에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이라고 명시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군인에 대해서만 이와 다르게 해석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은 군인보수의 법정주의(法定主義)<sup>87)</sup>를 정한 조항이지, 다른 법률에 근거한 금전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3. 한국국방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급여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sup>88)89)</sup>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요청받아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 연구축진장려금을 받은 것이, 위와 같이 제정된 규정에 따라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금전의 지급받은 것이므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끝.

질의 : 회계감사담당관-2340('19. 5. 29.)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6337('19. 6. 19.)

87) (~상략) 구 군인사법 제52조 및 구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이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하략) (서울고등법원2014나2024684 판결)

88) 정관 제27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원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기구에 관한 규정, 인사에 관한 규정, 급여에 관한 규정, 회계에 관한 규정, 각종 규정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9) 급여규정 제9조(파견원수당) ① 법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되는 군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원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38.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의 퇴역연금 제한시점 등

### 【질의요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의 퇴역연금 제한 시점 및 관련 사실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제한하지 못한 급여액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

### 【답 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도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한이 불가함. 또한 관련 사실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지급된 퇴역연금에 대하여 환수도 불가함.

### 【이 유】

####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단서 조항 해석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함. 그러나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규정을 둠으로써 생활보장차원에서 매달 지급되는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 2.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1조 단서 조항 해석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1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하고 불기소 처분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도록 함. 동 조항은 군인 등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된 후에는 기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지급 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단서에서 “그 사람에게 지급할 급여가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액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는 퇴역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규정함. 이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퇴역연금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감액하지 못하도록 일관성있게 규정한 것이라고 사료됨.

그렇다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1조 단서규정의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며,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퇴역연금에 대하여 감액이 불가함. 또한 관련 사실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지급된 퇴역연금에 대하여 환수도 불가함. 끝.

질의 : 군인연금과-2993(2018. 7. 30.)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7189(2018. 8. 6.)

## 39.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요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등<sup>90)</sup>의 지급결정은 신청인<sup>91)</sup>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거나,

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여 2006년 11월 1일<sup>92)</sup>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또는 공로금)만 받은 경우,<sup>93)</sup> 신청인이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신청<sup>94)</sup>하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답 변】

- 
- 9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 9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
- 9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신설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임.
- 93) 특수임무수행자가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용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결정서 중 보상금등명세상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 9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신청한 경우로서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을 제외한 특별위로금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함.

이 사안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 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함)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이 사안의 신청에 대해 반려하지 않고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이 갖는 법적 효력과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먼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정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음.<sup>95)</sup>

그런데 특임자보상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망자·행방불명자용(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용(별지 제2호서식), 특수임무수행자용(별지 제3호서식)으로 구분된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같은 영 제16조제1항제5호)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결정을 하게 됨.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애를 입

9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례 참조

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임자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 등을 신청하여 특임자보상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결정과정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애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되므로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의 신체상 장애라는 사정이 제대로 평가·반영되지 않게 됨.

그리고 특임자보상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보상결정서에서는 보상금등 명세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애 부분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이 포함되도록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같은 영 제19조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결정서 중 보상금등 명세상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특임자보상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애 부분을 화해의 대상으로 삼았다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함.

아울러 이 사안과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도 특임자보상법 제17조의2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인정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영구

히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특임자보상법 제1조)으로 하는 특임자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끝.

질의 : 규제개혁법제과-9518(2018. 10. 25.)

## 40. 기(既)실시 완료된 육아휴직에 대한 자녀 변경가능 여부

### 【질의요지】

기실시 완료된 육아휴직에 대한 자녀 변경 가능여부

### 【답 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그 기간이 끝난 후 자녀 변경을 하는 것은 불가함.

### 【이 유】

본 사안의 질의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 1개월 14일)을 실시한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 5개월 2일)까지 실시 완료하였는데,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일부(1개월 14일)를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임.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인사발령사항을 ‘인사명령서’에 기재하는 경우 휴직사유에 양육 대상 자녀(예시 : “첫째 자녀” 혹은 “둘째 자녀” 등)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의 변경과 관련하여 위 훈령 제41조 및 「해군 현역복무 규정」 제28조에 의하면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의 변경(연장 또는 단축) 신청은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의 변경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육아휴직의 대상인 양육 대상 자녀의 변경에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또한,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의 변경에 일정한 신청 기한을 두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원보충 및 인력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외 조항을 둔 것일 뿐 이미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짐.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서 육아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2018. 1. 16. 법률 제1534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서는 위 육아휴직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부칙(법률 제15345호, 2018. 1. 16.) 제5조에 따르면 “제49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본 사안의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의 변경을 허용한다면 진급 등 군인사법상 법률적 지위에 큰 변동을 초래하여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sup>96)</sup>.

따라서, 이미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그 기간이 끝난 후 대상자녀 변경을 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법무담당관-5125호(2011. 7. 29.) 육아휴직 관련 법령 재질의에 대한 회신’은 본 질의의 사실관계와 다르며 당시 적용된 군인사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대상자녀를 바꾸더라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동일하므로 대외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본 질의와는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끝.

질의 : 해군본부 해양법제과-1061(2019. 3. 26.)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5820(2019. 6. 10.)

---

96)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함. “양성평등정책과 -201 (2019.05.20.) 기실시 완료된 육아휴직에 대한 자녀 변경 가능여부 관련 의견 통보” 참조.

## 41. 전역자에 대한 퇴거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1. 전역자(퇴역자)에 대하여 퇴거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2. 전역자(퇴역자)에 대하여 퇴거유예사유 중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1. 전역자(퇴역자)에 대하여 퇴거유예가 가능함.
2. 전역자(퇴역자)에 대하여 퇴거유예사유 중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이 유】

1. 전역자(퇴역자)에 대하여 퇴거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군 관사 및 전세금대부 사업 운영 훈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는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퇴거유예 기간에 해당할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2항의 주어도 ‘입주자’로 보아야 함. 그런데 위 훈령 제2조에서 ‘입주자’란 공관을 제외한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역인 군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역자(퇴역자)도 위 훈령에서 정하는 입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전역자(퇴역자)도 위 훈령 별표3의 퇴거유예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제13조 제2항에 따라 퇴거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전역자(퇴역자)에 대하여 퇴거유예사유 중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전역자(퇴역자)도 위 훈령 별표3에 따른 퇴거유예사유 중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사항”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관사 운영의 효율성과 지원의 타당성 등을 합리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끝.

질의 : 법무실-1915(2019. 6. 2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61(2019. 8. 7.)

## 제5장 군수 및 방위산업

## 42. 방위사업법 제46조 제4항의 ‘정산’의 의미

### 【질의요지】

「방위사업법」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정부가 방산물자 등을 조달하면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정산’의 의미에 선금 반환 등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

### 【답 변】

「방위사업법」 제46조 제4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정산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지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과는 다르게 “정산”의 개념에 “반환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 【이 유】

「방위사업법」에는 “정산”이란 용어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산”의 개념에 선금 반환 절차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정산, 잔액 및 이자의 청구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논란이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방위사업법」 제46조 제4항 “정산”이 선금

반환 절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없음.

첫째,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러므로 “정산”에 관해 「방위사업법」에 특별하게 정의규정이 없다면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방위사업법」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

「방위사업법」에서 “정산”이란 용어가 나오는 규정을 살펴보면 제45조 제4항에 “방산시설이나 방산물자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 및 동법 제46조 제4항에 “장기계약 체결한 경우의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정산”은 예정된 계산을 의미하고 동법 제45조 제4항에서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의미는 예정된 계산을 의미하고 여기에 ‘선금 반환청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동일한 법률 안에서 “정산”의 적용 범위를 조항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45조 제4항 및 제46조 제4항의 “정산”에 선금반환청구를 포함하여 해석할 수 없음.

둘째 “정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타 법령 및 관계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국가계약법」 제23조 제2항에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37조의 “선금의 정산”과 제38조 “반환 청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즉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정산”은 예정된 계산이라는 해석하에 그 세부계산 기준을 계약예규에 규정한 것을 볼 수 있고 반환청구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해하는 경우 등에 지체없이 반환을 청구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금의 정산과 반환청구는 요건과 절차가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에 있어 일반법이고, 「방위사업법」은 제46조에 국가계약법 특례를 규정하였는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으로 볼 때 “정산”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일정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하는 것이지 “반환청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방위사업법」 제46조 제4항에서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정산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지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과는 다르게 “정산”의 개념에 “반환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끝.

질의 : 전력정책과-5920(2017. 11. 2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0197 (2017. 12. 7.)

## 4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상 연구개발 결과물에 관한 전용실시권 계약이 가능한지

### 【질의요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하 ‘훈령’이라고 함) 상 연구개발 이후 국방 규격에 의한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연구개발 결과물에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 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

### 【답 변】

훈령의 문언,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전용실시권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무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 유】

####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귀속

훈령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 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되,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질의사안의 경우 ‘복합식 소화장비 자기/음향 측정장비 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특허·저작물 등의 지식재산권이 창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 단서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발업체가 일차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자가 됨.

## 2.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전용실시권 실시 여부

다만, 훈령 제114조 제2항은 ‘국방부 및 각 군은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차후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와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및 각 군이 위 규정의 문언에 기속되어 반드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만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용실시권 계약도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

### 가.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특허법 제100조 제1항),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도록 하고 있음(특허법 제100조 제2항). 이 경우 설정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의 사용·수익은 전용실시권자가 독점하므로 특허권자는 같은 범위의 전용실시권을 다른 제3자에게 거듭 설정하여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약이 없는 한 특허권자 자신도 특허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특허실시료를 받는 지위를 가지게 됨<sup>97)</sup>.

97)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전용실시권의 경우 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

반면,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고(제102조 제1항),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게 됨. 다만, 통상실시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해 발생하고 등록은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타성이 없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전용실시권과 달리 특허권자는 그 설정 후에도 특허권자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통상실시권을 2이상의 자에게도 허락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음.

#### 나. 훈령 제114조의 의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훈령 제114조 제2항에서는 국방부 및 각 군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차후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조문이 반드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설정계약을 강조한 취지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위 ‘통상실시권’의 제한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와 관련한 해석은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훈령의 개정 취지 및 연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정 전 훈령의 경우 지

식재산권은 국가소유로 하되 국방부 및 각 군이 연구개발업체를 위해 통상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sup>98)</sup>, 위 국방부 훈령으로 지식재산권의 귀속범위를 규정한 것은 권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일탈가능성이 있다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 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업무처리를 관련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르도록 규정하되, 연구개발과 양산이 별개로 이루어 질 경우 해당 제품을 양산하려는 제3의 업체가 제작·납품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와 계약(협약)을 체결하도록 개정한 것이었음<sup>99)</sup>.

따라서, 제114조 제1항, 제2항은 연구개발사업의 소유권 귀속을 국가에 강제하지 않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되, 훈령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부 및 각 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 이상 반드시 통상실시권 설정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 3. 결론

따라서, 국방부 혹은 각 군과 연구개발업체와의 합의가 있는 한 통상실시권이 아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의 설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고 본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개발업체이기 때문에 국방부 및 각 군이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개발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

98) 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16. 11. 23. 개정, 훈령 제1975호) 제114조(연구개발물의 소유권)  
 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가 소유로 한다. 이 경우 국방부 및 각 군은 연구개발업체에 통상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국방부 및 각 군은 지식재산권을 국가소유로 하기 위해 개발업체와 연구개발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99) 규제개혁법제담당관-4753('17. 6. 5.) 훈령발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②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일종의 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설정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의 사용·수익은 전용실시권자가 독점하고 특허권자 자신도 특허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오로지 사용실시료만을 받게 된다는 점, ③ 본 계약 특수조건인 ‘복합식 소화장비 자기/음향 측정장비 계약특수조건’ 제24조 제2항에서 “공급자는 연구개발 간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경우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무상’의 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본 질의사안 관련 연구개발업체가 국방부·각 군에 전용실시권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이는 사실상 국가가 무상의 전용실시권의 취득하게 되어 관련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것과 다르지 않게 되며, 연구개발업체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주무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해양법제과-420 (2018. 1. 3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2776 (2018. 3. 22.)

## 44.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함정 설계 및 건조계약에 따라 선도함과 후속함 초도물량을 생산하기로 한 경우 시제품의 범위

### 【질의요지】

「방위사업법」 제61조 제4항과 관련하여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함정 설계 및 건조계약에 따라 선도함과 후속함 초도물량을 생산하기로 한 경우, 시제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 【답 변】

시제품의 범위는 선도함까지로 봐야하며, 관련 법령 문언상 후속함 초도물량이 시제품에 포함된다 보기는 어려움.

### 【이 유】

본 사안의 경우 선도함과 후속함 초도물량을 생산하기로 함정 설계 및 건조계약을 했을 때, 후속함 초도물량이 시제품에 해당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시제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서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도록 해야 함(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13. 1. 17. 선고 2001다83431 판결 등).

사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시제품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 제18조 제4항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시제품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8조 제8항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절차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절차를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로 구분하면서, 체계개발단계를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로 말하고 있는 바(제10조 제1항 제2호), 시제품은 양산단계 이전 체계개발 단계에서 완성하는 물품을 지칭하며, 양산단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시제품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임.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함정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함정사업은 체계개발 단계를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로, 양산단계를 후속함 건조로 구분하고 있는 바, 체계개발 단계에서 만들어 지는 선도함은 시제품에 해당하며 양산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후속함과 구분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함.

따라서, 함정사업 개발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18조 제4항,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제품의 범위는 선도함까지로 봐야 하며, 후속함 초도물량이 시제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끝.

질의 : 전력정책과-2600 (2018. 5. 2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285 (2018. 6. 8.)

## 45. 외국인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 【질의요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외국인(한국계 미국인)이 허가 요청한 경우 자격심사 후 충족 시 허가 발급 가능 여부

### 【답 변】

국방부장관은 법 및 시행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받고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 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1항), 세부적인 조건이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제4항) 제4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법 시행령 제3조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를(법인의 경우 정관 및 임원명부를 함께 첨부)제출하도록 하는 한편(제1항),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제2항), 본 질의사안은 외국인이 법령에 따른 제조 또

는 판매 허가 신청을 하면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허가를 할 수 없는 지가 문제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서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으려 해야 함(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13. 1. 17. 선고 2001다83431 판결 등).

본 질의사안의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는 가장 기본적인 군수품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청되는데도 이들 물품이 시중에 유출되어 일부 국민들이 이를 착용 또는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유사품이 제조, 판매되고 있어 국방력강화와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사용이나 제조, 판매를 단속함으로써 자주국방과 총력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이 제정 목적인 것을 볼 때(법 제정 이유서 참조)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확인은 제조·판매를 허가하기 위해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내국인에게만 제조·판매를 허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며 범죄경력회보 및 법원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제4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경찰제복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외국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군복과 경찰제복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군복의 제조 또는 판매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은 법 및 시행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받고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됨.

※ 법령 개정 권고 : 본 사안 관련 근거 법령의 경우 외국인의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의 개정을 권고함. 끝.

질의 :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3070 (2018. 5. 1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521 (2018. 7. 18.)

## 46. ○○ 불용항공기 매각 시 군수품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 【질의요지】

부속을 취발 사용하여 사용 불가능하게 된 ○○ 불용항공기 매각 시,

1.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반드시 매각을 하여야 하는지,
2. 「군수품관리훈령」에서 불용군수품의 관리·처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율한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군수품관리훈령」 제86조에 따라 불용군수품의 원형 매각의무가 있는지 여부
4. 구매자가 부품을 추가하여 재생(복구)가 가능한 경우 원형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1. 「군수품관리법」 제13조는 불용군수품을 폐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내용일 뿐 ‘국가에 유리한 경우’ 반드시 불용군수품을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님.
2. 「군수품관리훈령」에서 불용군수품의 관리·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반하는 규정이라 볼 수는 없음.
3. 「군수품관리훈령」 제86조는 불용군수품 중 사용 가품의 원형매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불용군수품의 원형 매각의무를 규정한 것이라 보이지는 않음.
4. 구매자가 부품을 추가하여 재생이 가능한 경우 이는 원형매각에 대한

정책적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유】

1.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 결정된 항공기를 반드시 매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①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안의 경우 법 제13조 제3항을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매각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법 문언의 의미에 충실해야 하나 법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 법의 입법 취지, 다른 법과의 관계, 다른 법령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본 질의 사안 또한 법 제13조 제3항에서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폐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각 의무 등과 관련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법의 입법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 다른 법령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먼저, 법은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2조),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발휘 보장과 수명주기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획득·사용·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제2조의 2),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

그리고, 법 제4조는 군수품의 매각과 관련하여 「물품관리법」 제36조를 준용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제36조는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 법에서 매각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매각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불용 결정된 군수품의 관리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소관사무인 이상 군수품의 매각은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각 소관부서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의 목적,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제13조 제3항을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매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반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2. 「군수품관리훈령」에서 불용군수품의 관리·처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율한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아가, 「군수품관리훈령」(이하 ‘훈령’이라 합니다.) 제39조, 제86조는 불용군수품의 관리와 관련하여 ① 불용 결정된 군수품 중 활용 가능한 군수품은 재활용하고, ② 재활용 대상 이외 품목은 대여, 양도, 교환, 매각, 폐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③ 불용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사용 가품은 중고품으로 원형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폐품 매각시는 민간 재사용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훈령이 법 제13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의 군수품 처분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인 규정인지

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 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불용결정, 제14조에 따른 양도, 제15조에 따른 대여를 하는 경우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훈령 제39조, 제96조에서 정한 기준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군수품 관리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승인 혹은 세부 기준의 한 형태로 보이며 법령에서 정한 한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음.

### 3. 훈령 제86조에 따라 불용군수품의 원형 매각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훈령 제86조 제2항은 불용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사용 가품은 중고품으로 원형매각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용 가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형매각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그런데, 훈령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불용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사용가품은 중고품으로 원형매각을 ‘우선 추진’하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는 원형매각을 먼저 고려하되 이를 추진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매각 방법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됨이 문언상 명백하다 보임. 특히 훈령 제86조 제1항이 불용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국가경제에 유리한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제86조 제2항은 불용군수품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가경제에 유리한 측면을 고려하여 원형으로 매각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반드시 원형매각 방식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제할 규정이라 볼 수는 없음.

#### 4. 구매자가 부품을 추가하여 재생(복구)이 가능한 경우 원형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불용군수품을 매각할 때에는 국가에 유리하다고 하여 반드시 매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 가품이라 하여 반드시 원형매각의 방식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용 결정된 군수품을 처분하는 방식은 훈령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부품을 추가하여 재생(복구)이 가능한 경우 등 제반 사정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불용 결정된 군수품의 처분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다만, 훈령 제90조는 살상무기류와 보안유지가 필요한 불용품은 비군사화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군 겸용 상용장비 외 불용품의 경우 민간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재사용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본질의사안에서 불용 결정된 군수품은 F-5 전투기이고 전투기가 민·군 상용장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는 점, 만약 원형매각 후 구매자가 부품을 추가하여 복구가 가능하게 되면 전투기로의 원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살상무기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 불용 처리된 군수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주체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민간 업체의 군용 무기류 판매와 관

런한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5 전투기를 매각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5. 결론

따라서, 본 질의사안 항공기의 원형매각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령 및 훈령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관부서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이 경우 구매자가 부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살상무기류와 보안유지가 필요한 물품은 비군사화를 하여야 하고 민·군 겸용 상용장비 외 불용품의 경우 민간 재사용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훈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은 정책 결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임. 끝.

질의 :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5644 (2018. 9. 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9433 (2018. 10. 22.)

## 47.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2호의 해석

### 【질의요지】

무기체계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방법의 결정에 있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2호의 ‘국내에서 현재 운용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의 해석

### 【답 변】

개조 대상이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이면 최초 생산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무기체계를 개조한다 하더라도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는 가능할 것이나, 시험평가 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주무부서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재량사안에 해당함.

### 【이 유】

본 질의사안의 경우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일부를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를 ‘해당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생산한 업체가 개조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제2호의 해석이 문제됨.

법령 등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해야 할 것임(대법

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유로 ‘국내에서 현재 운용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개조 대상에 대한 제한만을 하고 있을 뿐, 생산업체가 개조하는 경우만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문언상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개조 대상이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이면 최초 생산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무기체계의 개조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 해석에 부합하며, ‘최초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했던 업체가 개발한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제2호 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별도의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다만, 「방위사업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주무부서의 재량적 판단으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가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개조한다 하여 반드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만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판단은 개조하려는 업체가 대상 무기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 업체의 무기체계 개조 역량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44 (2017. 6. 7.)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519 (2017. 8. 1.)

## 48. 불용군수품을 매각 시 예정가격 공개 여부

### 【질의요지】

불용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군수품 중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이 유】

불용군수품 등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인바, 여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 「군수품관리훈령」 제84조 역시 불용군수품의 매각계약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계약법에 따라 불용군수품을 매각할 때 그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 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불용군수품을 매각하는 이상 매각 시 예정가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 각호는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국유재산이라 정의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지식재산·상장증권·비상장증권의 처분 시 예정가격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매각은 국가계약법령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함.

결국, 본 질의 사안에서 불용군수품의 매각 시 그 예정가격을 공개할지는 해당 불용군수품의 성격에 따라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임. 만약, 불용군수품이 부동산의 종물, 선박·부표·부잔교·항공기 및 그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공개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 군수품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될 것임. 끝.

질의 :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4884 (2018. 8. 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534 (2019. 2. 13.)

## 49. ○○사업의 1번 함이 방산물자로 지정 되면, 2번 함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 【질의요지】

○○○ 사업의 1번함이 시험평가 이후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2번함이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본 질의 관련 사업에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이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바,

본 질의사안은 ○○사업에서 1번함 및 2번함을 일괄 계약하였으나, 현재 1번 및 2번함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사유를 근거로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1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먼저,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한도를 1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은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에 따라 지체상금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방산물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함은 문언상 명확해 보임.

따라서, 본 질의사안의 경우 계약 시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제61조 제4항 제2호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전력정책과-567(2019. 1. 30.)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2623(2019. 3. 18.)

## 50. 중고 K-9 자주포 성능개량 비용 지불 가부

### 【질의요지】

중고 K-9 자주포 교환 시 성능개량 비용 지불 가능 여부

### 【답 변】

사안의 경우 법 제45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교환을 하는 경우 차액의 정산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나, 그 차액을 어떤 예산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이 유】

1. 본 질의사안의 경우 특정 조문의 해석과 관련한 의견의 대립은 없기 때문에 법령해석의 대상은 아님. 따라서 법률 자문의 형태로 답변함.

2. 본 질의사안의 경우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 K9 자주포를 신품 K9A1으로 교환하는 경우 성능개량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음.

가. 「방위사업법」상 방산물자 교환 시 차액 정산 의무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양여·대부·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시설이나 방산물자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사안의 경우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 K9 자주포를 신형 K9A1 자주포로 교환계약을 하였는바, 정부가 방산업체에게 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해야 함은 의문이 없음.

#### 나. 차액 정산 시 성능개량비용 지급 관련 검토

한편, 법 제45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산업체에 교환목적물의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의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고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차액을 어떤 항목의 예산으로 지급할지는 해당 교환 목적물의 차액, 신품으로 받는 목적물의 성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무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때, 성능개량 비용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지급할지 여부 역시 주무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영역으로 보임.

#### 다. 결론

따라서, 사안의 경우 법 제45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교환을 하는 경우 차액의 정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경우 그 차액을 어떤 예산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임. 끝.

질의 : 전력정책과-1400(2019. 3. 1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928 (2019. 4. 1.)

# 51. 방위사업법 제61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해석 관련

## 【질의요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가. 법령 개정 이후 1차 납기지체로 인한 영향으로 2차부터 4차까지의 납기지체가 예상되어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개정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 상한(1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위 사안의 계약은 법령 개정 이후 만료되는 계약으로서 법령 개정 전에 있었던 1차 납기 지체에 대하여도 개정 법령에 따른 지체상금 상한(10%)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 【답 변】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지체상금이 발생해야 하는바, 시행령 시행 이전인 1차 납기일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한 본 질의 사안 계약의 경우 본 부칙이 적용되지 않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 【이 유】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여 지체상금의 부과 한도를 규정하였음.

다만,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제6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본 질의사안은 이 영 시행 전에 1차 납기일이 존재하여 지체가 진행되고 있는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본 질의사안 계약이 위 부칙에 따라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결국 부칙 제2조의 해석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할 것으로 판단됨.

먼저,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61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②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계약기간의 만료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계약 만료일 이후 발생한 지체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위 두 요건은 별개의 요건이라 봐야 함.

다음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각 차수별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체 시 각 납기일 별로 별도의 지체상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납기일을 기준으로 별개의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살펴보면<sup>100)</sup>,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판결),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계약금액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국가계약법 제27조의 2),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지체상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등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 금액을 각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어 각 기성 부분 혹은 기납부분을 별도의 계약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는데 본 계약 역시 위 법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행기를 나누어 약정한 계약은 그 이행 과정을 각 차수별로 점검하면서 효율적인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본 질의 의뢰 배경을 기준으로 할 때 각 차수별 계약금액을 별도로 명시하고 계약 조건을 달리하는 등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질의사안의 경우 하나의 계약에서 수 개의 이행행위를 규정한 것일 뿐 별도로 구분되는 수 개의 계약을 한번에 체결한 경우라고 보이지는 않음.

---

100) 만약, 각 납기일 별로 계약이 완료되는 별도의 계약이라 한다면 시행령 개정 이후의 지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됨

따라서, 본 질의사안의 경우 납기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지체상금이 각 납기일별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은 하나의 계약이고, 최초의 이행 지체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1차 납기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함.

그리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시행령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지체상금이 발생해야 하는 바 시행령 시행 이전인 1차 납기일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한 본 질의 사안 계약의 경우 본 부칙이 적용되지 않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전력정책과-1645(2019. 3. 28.)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3805(2019. 4. 17.)

## 5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계약 금액’의 의미

### 【질의요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지체상금 상한을 정하는 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답 변】

본 질의사안 계약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등이라 한다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74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서는 제64조 제4항 각 호 사유가 있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금액의 기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는바, 본 질의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공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46조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이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계약의 종류·내용·방법·지체상금의 상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지체상금의 상한을 정하는 계약금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계약에 「방위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가합510017 판결 등 참조)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함.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본 질의

사안 계약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등이라 한다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도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전력정책과-1913 (2019. 4. 1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385 (2019. 5. 2.)

## 53. 해군 도태함포 관리전환 시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요지】

해군의 도태함포를 해경으로 관리전환 시 「군수품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해군에서 해경으로 도태함포를 관리전환 하는 경우, 도태함포는 「군수품관리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전환 시 사전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 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은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본 질의 사안의 경우 해군의 도태 함포를 해경으로 관리전환하는 내용인바, 위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됨.

이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① 제9조 각 호에 따른 군수품과 ② 1년 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③ 제11조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④ 국방관서 또는 각 군과 다른 중앙관서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지정하는 군수품, ⑤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이어야 하는데 본 질의 요청서에 따르면 해군에서 관리전환하려는 함포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군수품이 아니며, 1년 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도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지정하는 등의 별도의 지정 역시 없었던 바, 결국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 전환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함.

그리고 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는 사유를 ① 제9조 제1호와 제10조 제1호에 다른 군수품을 관리전환 하는 경우, ② 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나 군에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을 받은 관서나 군에서 해당 수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을 관리 전환하는 경우, ③ 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도지(圖誌)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규정된 군수품을 관리 전환하는 경우, ④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서에 따르면 함포를 해경에 관리 전환하는 것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임.

이때,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에 따르면 함포는 ‘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도지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규정된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도지(圖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면·책자'등을 의미한다고 보이며<sup>101)</sup>,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지인 군수품이어야 하는 바, 함포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임.

따라서, 해군에서 해경으로 도태함포를 관리전환 하는 경우, 이는 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전환 시 사전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임. 끝.

질의 : 군수감사담당관-1098 (2019. 5. 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025(2019. 5. 20.)

---

101) 국어사전 등에 '도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지'의 한자가 '그림으로 된 기록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는 수로도지(水路圖誌)를 항해용으로 사용하는 해도, 연안정보를 수록한 연안특수도, 해저지형과 해저지질의 특성을 나타낸 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 제11조 제3호에서 말하는 '도지' 역시 '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도면·책자'를 의미 한다 보입니다.

## 54. K200장갑차 양도관련 법령질의

### 【질의요지】

1. 육군본부에서 K200 장갑차를 한화디펜스로 유상양도 하기 전,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이 필요한지 여부
2. 「방위사업법」 상 “군용총포” 등에 K200 장갑차 등 주요통제장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한화디펜스에서 K200 장갑차를 양도받기 전, 군용총포 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폐기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4. 자주포, 견인포(화력무기체계) 등 대여 시 군용총포 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폐기 등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답 변】

1. K200 장갑차의 유상양도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대부·양도는 아니므로 제59조 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보이지는 않음(질의1).
2. K200 장갑차가 “군용총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됨(질의2).
3. 군용 총포 등에 해당하는 장비의 양도·양수·소지·운반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주무부서가 판단하여야 함(질의 3·4).

## 【이 유】

### ■ 질의 1 관련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59조 제7항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또는 양도받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리고 시행령 제59조 제1항부터 제6항은 일반재산의 무상대부,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의 유상·무상 대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의 무상양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무상양도·대부·사용허가 또는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 교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양도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본 질의 사안 K200 장갑차의 유상양도는 시행령 제59조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대부·무상 양도는 아니므로 제59조 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보이지는 않음.

### ■ 질의 2·3·4 관련

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이하 ‘군용총포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하여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군용총포 등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법 및 시행령에서는 ‘군용총포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달리 정한바  
가 없고, 법 제53조 제2항에서는 군용총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총포·도검·  
화약류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질의사  
안 장비가 군용 총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정의규정에 본 질의사안  
장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는 주무부서에서 장  
비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나아가,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군용총포 등의 양도·양수·소지·저장·운  
반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본 질의사안 장비를 양  
도·대여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사실관  
계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무부서  
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다만, 질의사안 장비가 군용 총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방위사  
업청장의 허가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3640(2019. 6. 12.)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6317(2019. 6. 24.)

## 55. K-9자주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의 의 궤도차량에 해당하는지

### 【질의요지】

K-9 자주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의 궤도차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K-9 자주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의 궤도차량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유】

1. 본 질의 관련 법령의 소관부서는 기획재정부인 바, 법령해석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으며, 이하의 회신은 업무 참고를 위한 법률자문에 해당함.

2.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함) 제5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범위를 명시하면서 제3호에서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국유재산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는 바, 군에서 운용중인 K-9자주포가 위 궤도차량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됨.

먼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

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함(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은 “궤도차량”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궤도운송법」 제2조는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1호), “궤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제6호),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이나 지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궤도차량과 관련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를 법에서 말하는 궤도차량의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차량을 의미하는 바,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궤도차량의 의미 역시 「궤도운송법」 제2조 제6호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는 것이 법 문언의 의미,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에 부합한다 판단됨.

그런데, 자주포는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 등에 부착된 포로써 선로에서 주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탈것이 아님은 자주포의 외형·구조상 명백하다 보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의 궤도차량에 포함될 수는 없으며 법 제5조에서 말하는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임. 끝.

## 56. 수입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판매한 제품의 군수품 해당여부

### 【질의요지】

수입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판매한 제품의 군수품 해당여부

### 【답 변】

본 질의사안의 물품이 군 보급품목 식별 목적의 재고번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용·관리하는 이상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의 군수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 제2호는 군수품을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고 하고 있는 바, 본 질의사안은 수입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판매한 제품이 NSN(Nato Stock Number : 군 보급품목 식별 목적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사용되는 재고번호)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 제3조 제2호의 군수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3조 제2호의 군수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획득하는 물품이어야 하는데, 본 질의사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판단됨.

따라서, 본 질의사안은 해당 물품이 NSN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용·관리하는 경우이므로 법 제3조 제2호의 군수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끝.

질의 : 전력정책과-3930(2019. 7. 22.)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7967(2019. 8. 6.)

## 제6장 시설

(군용지 취득 · 국유재산 · 군사시설보호)

## 57. 국방·군사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국유지 상 사유건물에 대한 이전 보상이 필요한지

### 【질의요지】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지 상 사유건물에 대해 이전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

### 【답 변】

국방사업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른 보상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토지와 함께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 토지와 함께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방사업법 또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유】

국방부 소유 국유지를 민간에게 주거 및 경작용으로 사용허가를 하여 사유건물이 설치된 지역에 국방·군사시설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위 사유건물에 대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유건물 보상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사업법’이라 함) 제2조 정의 규정을 보면 “이 법에서 말하는 토지 등이란 토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국방사업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른 보상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토지와 함께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 토지와 함께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보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방사업법 또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끝.

질의 : 국유재산과-5483(2017. 12. 19.)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571(2018. 1. 15.)

## 58. 국유지 내 폐기물을 무단야적한 자에게 변상금 및 과태료의 중복부과가 가능한지

### 【질의요지】

국유지 내 폐기물을 무단야적한 자에게 변상금 및 과태료의 중복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폐기물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은 각각 입법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어떠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건에 충족한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면 중복 부과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사안의 경우에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무단야적한 경우가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가 판례에서 말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요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 유】

「폐기물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은 각각 입법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어떠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면 중복 부과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각각의 부과요건을 충족하는지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사안에서는 폐기물을 무단야적한 경우가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인지를 살펴보아

야 함.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요건을 보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없이 국유지를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여야 함.

판례에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1996. 8. 23. 선고95다87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이 판례에서 말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피고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거쳐 변상금 부과를 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사안에서의 폐기물 무단야적한 자가 폐기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능성이 있지 않다면 변상금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끝.

질의 : 국유재산과-36(2018. 1. 3.)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669(2018. 1. 19.)

## 59.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의 ‘협의’의 의미

### 【질의요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협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답 변】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및 토지 정비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군사작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협의는 일정한 행정권한의 행사에 관계행정기관(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이 있어 그 권한행사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들의 입장 이익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관계행정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 절차로서 단순한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하는 협의가 아닌 합의

또는 동의를 구하는 협의로 해석됨.

## 【이 유】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협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계획, ②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④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있음.

또한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5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및 토지 이용을 위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한 토지 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일정한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를 종합하면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토지 정비를 위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군사작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협의는 일정한 행정권한의 행사에 관계행정기관(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이 있어 그 권한행사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들의 입장 이익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관계행정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 절차로서 단순한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하는 협의가 아닌 합의 또는 동의를 구하는 협의로 해석됨.

법제처<sup>102)</sup>의 경우도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동법상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 당해 지구 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양도 및 매각의 제한, 종전 용도의 폐지 및 무상양여 등과 같은 중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 비추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102) 법제처 05-0169(2006. 3. 22.)

당해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 그 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요청한 내용대로 협의를 하여 줄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실무적으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조건을 부과하여 합의점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여기서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단순한 자문 또는 의견제시가 아닌 합의로 해석하였음. 끝.

질의 : 국유재산과-211(2018. 1. 12.)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803(2018. 1. 23.)

## 60. 국방부검찰단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 【질의요지】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

### 【답 변】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볼 수 있음.

### 【이 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군사법원법」 제36조(군검찰부) 제4항에 의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로 하며, 검찰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함.

한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자, 토지의 수용 등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은 열거조항이 아니라 예시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에서 살펴본 국방부 검찰단이 관장하는 검찰사무는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방부 소속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므로 위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국방부 소속 기관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도 국방부 소속 부대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상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끝.

질의 :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수처-435(2019. 1. 23.)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1132(2019. 1. 30.)

## 61. 군 부대 내 노래방기기 및 게임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영업등록 대상인지

###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군 부대 내 노래방기기 및 게임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등록 의무 대상인지 여부

### 【답 변】

민간인이 부대 내 건물 등을 사용허가 받아 노래방기기, 게임기기 등을 설치한 후 부대 내 장병들에게 이용료를 지급받고 위 시설을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함.

### 【이 유】

본 질의사안은 일반인이 부대 내 시설 등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고 노래방·게임기기 영업을 하는 경우 위 영업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함)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의 영업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이와 관련하여 「음악산업법」 제18조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6조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이때, 두 조문 모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노래연습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록 신청은 의무 사항인 바, 결국 본 질의 사안은 부대 내에서 노래방기기, 청소년게임기기를 설치하고 부대 장병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래연습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음악산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① 관련 시설을 갖추고 ② 영업을 목적으로 ③ 공중에 제공하여야 함을 공통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음.

본 질의 사안에서 ① 관련 시설은 모두 갖춰졌다고 보여지고, ② 일반인이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부대에 지급하고 노래방·오락기기를 운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인 시설물을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부대 내 장병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위 법에서 말하는 ‘공중에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 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음악산업법」 및 「게임산업법」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중이 불특정 다수만을 의미하는 지 혹은 특정 다수인도 포함하는지 등 공중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먼저 「음악산업법」 제18조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확인 하도록 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6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음악산업법」·「게임산업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정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영업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중이 안전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에서 말하는 “대중”의 범위를 불특정 다수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특정된 다수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라면 “대중”에 포함된다고 봐야 함<sup>103)</sup>.

따라서, 민간인이 부대 내 건물 등을 사용허가 받아 노래방기기, 게임기기 등을 설치한 후 부대 내 장병들에게 이용료를 지급받고 위 시설을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음악산업법」·「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는 노래연습장업 또

103) 소관 법령 관계부서인 대중문화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의 견해 역시 대중의 범위에 ‘특정 다수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임. 게임콘텐츠산업과-623(‘18. 2. 20.) 질의에 대한 회신, 대중문화산업과-760(‘18. 2. 2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석요청에 대한 회신

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고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함. 끝.

질의 : 국유재산과-547(2018. 1.30.)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2052(2018. 3. 5.)

## 62. 사용허가매장 건물이 철거 예정인 상황에서 기존 매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사용허가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 【질의요지】

국군복지단 자운대 쇼핑타운 사용허가매장 건물이 무허가 증축 건물로 확인됨에 따라 철거 예정인 상황에서 동 건물에 입주하였던 기존 사용허가매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허가에 대한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기존 사용허가매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허가에 대한 수정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는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이와 같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위 법 제31조의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정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기존에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 아닌 다른 국유재산에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한편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이에 따르면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입점한 업체들은 적법한 사용허가매장이라고 믿은 데에 귀책사유는 없어 보여 일응 보호받아야 할 신뢰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나아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다른 국유재산에 사용허가를 받는 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31조 제3항) 사용허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동조 제1항, 제2항), 만약 수정계약을 통해 기존에 받았던 사용허가가 다른 새로운 행정재산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위 법이 사용허가의 대상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잃어버리는 점, 위 법상 사용허가된 행정재산의 면적에 따라 사용료가 정해지는 점, 위 법에 의하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철회 뿐만 아니라(제36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고(동조 제2

항)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동조 제3항)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기존 사용허가매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 사용허가에 대한 수정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국군복지단 법무실-481 (2019. 3. 15.)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042 (2019. 3. 29.)

##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존건축물’의 의미

###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존 건축물’의 의미

### 【답 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존 건축물’은 협의신청 당시 적법하게 건축되어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함.

### 【이 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용도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7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되, 기존 건축물·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만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 통제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에서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협의 기준과 관련하여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 요청에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질의사안은 ‘기존 건축물’의 범위가 폭발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건축물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협의 신청 당시 건물이 적법하게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지가 문제됨.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호와 제2호는 건물의 종류에 따른 증축 등의 제한을 구분하고 있을 뿐 건물의 존재 시기는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보임.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는 종래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만을 명시하고 있었다가, 기존 주택의 존재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신축의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는바, 기존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시기를 ‘보호구역 지정 전에 존재하였던 주택’으로 보았으나(2011. 3. 4. 국방부령 제72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개정 이유 참조), 이는 폭발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물리적으로 멸실되었으나 건축물 대장 등이 말소되지 않았던 주택까지 기존 주택으로 보는 경우 사실상 주택의 신축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한 내용으로 판단됨.

아울러,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의 심의 기준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사실(1999. 3. 15. 국방부령 제495호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이유 참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신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폭발물 보호구역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협의를 사전에 거쳤던 건물이기 때문에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했던 건물과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 증·개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주택의 존재 시점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협의를 신청할 당시 적법하게 존재하고 있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임.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존 건축물’은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보다 협의 신청 당시 적법하게 존재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끝.

질의 : 시설제도과-1290 (2018. 3. 23.)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3615 (2018. 4. 16.)

## 64. 추가적인 전력배치를 위한 신규시설 반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군 공항 이전사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요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군 공항에 없던 추가적인 전력배치를 위한 신규시설 반영은 위 특별법상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 【답 변】

육군 헬기전력의 배치를 위하여 신규시설을 반영하는 것은 특별법상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유】

본 질의사안의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상 군 공항 이전사업에 육군 헬기전력의 배치를 위한 신규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됨.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sup>104)</sup>,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군 공항이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자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군공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정의하고 있음. 다시 말해 본 질의 관련 법에서 말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이전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는 ‘항공작전기지’를 전술항공작전기지·지원항공작전기지·헬기전용작전기지·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하면서 전술항공작전기지과 헬기항공작전기지를 명확히 구별하면서 보호구역의 범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범위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본 질의사안의 대상인 헬기는 회전익항공기로서 헬기항공작전기지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종전에 존재하던 전술항공작전기지에 추가전력을 배치한다기보다 새로운 전력이 배치될 수 있는 헬기항공작전기지의 추가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임.

따라서, 본 질의사안 대상 전력을 배치하기 위한 신규 시설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 시설을 추가반영 하는 것이 법상 군 공항 이전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음. 끝.

10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질의 : 법제과-2224 (2018. 6. 15.)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6124 (2018. 7. 6.)

## 65. 행정재산에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전파법」 제2조제5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는 임시시설물인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을 설치할 목적<sup>105)</sup>으로 공용 행정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무선설비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sup>106)</sup>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sup>107)</sup>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답 변】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유】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

105)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용도인 경우를 전제하고 논의함.

106) 「전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107) 시설자가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토지)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무선설비만 이용하게 되며,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3자 간의 예상하지 못한 임대 등 계약관계에 의해 본래의 사용허가 목적에 반하거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이 어렵게 되는 등 사용·수익허가 제도의 잠탈을 방지<sup>108)</sup>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자체가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에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이고, 해당 무선설비가 임시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음.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sup>109)</sup>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에 “용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용목적에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

108) 광주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3구합3207 판결례 및 광주고등법원 1967. 2. 22. 선고 66나407 판결례 참조

109)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례 및 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2806 판결례 참조

한편 「전파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무선국(無線局)<sup>110)</sup>의 개설조건으로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설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무선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그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시설자가 행정재산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까지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용도로 보아 사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설자가 해당 무선설비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끝.

질의 : 규제개혁법제과-726(2019. 1. 18.)

---

110)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함(「전파법」 제2조제6호 참조)

##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지형의 변경을 위한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부대장 협의사항 인지

### 【질의요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라 토지 지형의 변경을 위한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관할 부대 협의 사항인지 여부

### 【답 변】

본 질의 사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처분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처분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제1호),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에서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만,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와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함)는 행정기관이 처분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질의사안의 경우 부지 조성(토지 성·절토를 포함)을 먼저 하고 추후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군사기지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행정기관이 처분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됨.

사안의 경우 건축을 위한 부지 조성으로 토지의 성·절토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보임. 그리고 군사기지법 제1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처분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제7호 사유)은 건축물의 건축 등(제1호 사유)과 별개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되어있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은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함.

한편, 토지 지형의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4

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군사기지법상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 신청만 하는 경우라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7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 제7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신고하면 건축허가, 국토계획법 제56조,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 관련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신고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바(법제처 08-0389, 2008. 12. 30. [국방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행정기관의 처분을 위한 협의의 범위)관련] 해석례 참조), 허가 신청 등의 최종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이었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고, 건축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신청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최종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이라 하여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에 관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볼 수는 없음.

따라서, 본 질의 사안은 군사기지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이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처분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처분에 관한 협의  
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시설제도기술과-1884 (2019. 4. 29.)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5547 (2019. 6. 3.)

# 제7장 재정 및 예산회계

## 67.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법률관계

###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의 법률관계

### 【답 변】

제안요청서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를 때 발주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부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구성원의 존재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구성원의 탈퇴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중도탈퇴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부 구성원이 탈퇴할 경우 계약상의 모든 의무는 잔존 구성원에게 그 출자비율대로 승계됨

### 【이 유】

제안요청서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탈퇴가 가능하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의 통보 및 발주자의 중도탈퇴 요청을 거쳐 다른 구성원이 탈퇴 조치 가능함.

따라서 만약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이 발주자에게 통보되었다면 발주자는 중도탈퇴 요청을 통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음. 이 때 발주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

보되었을 경우 발주자가 반드시 탈퇴 요청을 해야 하는 지가 문제되는 바, 협정서에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주자가 무조건 중도탈퇴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 즉 발주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부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구성원의 존재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구성원의 탈퇴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중도탈퇴 요청 여부를 결정하게 됨<sup>111)</sup>.

한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고<sup>112)</sup>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가산함. 즉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약상의 모든 의무는 잔존구성원에게 그 출자비율대로 승계되는 것임.

결국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탈퇴하였다고 해서 본래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여러 사항 - 사업기간 연장, 지체상금 미부과, 검수범위 축소 등 - 에 대해 반드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임.

다만 발주자의 중도탈퇴 요청이 본래의 계약 이행 지연 등에 대한 면책이나 동의 등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도탈퇴 요청 시에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즉, 일부 구성원이 중도탈퇴 하더라도 본래의 계약은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발주자의 중도탈퇴

---

111) 이와는 별개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 및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기획재정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5항 등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필요할 것임

112)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함

요청이 본래의 계약 이행 지연 등에 대한 면책이나 동의를 의미하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끝.

질의 : 국방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3291 (2017. 11. 8.)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615 (2018. 1. 17.)

## 68.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채권양도·양수 시 발주처가 채권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채권양도·양수 시 발주처가 채권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유사 사안에 대한 조달청 해석례에 따를 때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채권양도 및 채권 양수인에게로의 대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정식 법령해석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조는 계약상대자가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 시 이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 상대방의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임. 그런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조에는 제3자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 부분이 문제됨<sup>113)</sup>.

113)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는 '제3자'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채권양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각 구성원의 대금 채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양도인·양수인의 채권양도 신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잔액 유무, 보증기관의 동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sup>114)</sup>.

따라서 위 해석례에 따를 때 본 사안에 있어서도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채권양도 및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기획재정부 예규로서 우리 부에 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정식 법령해석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끝.

질의 :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5852(2018. 6. 22.)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5996(2018. 7. 4.)

---

114)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6. 5. 13. ‘대표사가 공동도급사의 대금을 대리수령 가능한지 여부’

# 제8장 기 타

## 69. 계약변경 가능여부

### 【질의요지】

해지절차에 대한 기존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인에 대해 부대 복지운영위원회 심의 및 부대장의 결정으로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 【답 변】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은 특약의 조항을 군사목적, 기타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호inal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지 절차에 대하여도 위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그때부터 특수조건 변경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이 유】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며, 국유재산법 및 국가계약법 등 법률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사용자 측 해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등 법규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며, 본 건 사용허가 입찰 공고 제15조 차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부대 측에 계약 종료 희망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단, 업체 재선정이 늦어질 경우 업체 재선정 후 영업을 개시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조건 제9조 제3항은 임차인이 영업부실등의 이유로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임대인은 복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차인에게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이때 해지 시기는 임대인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수조건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군사목적, 기타의 사유로 특약의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항을 수정, 변경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호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부정할 수 없으나,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변경이라는 점에서 계약조건에 한정되는 것이고, ② 국가계약법 등 상위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③ 군사 목적, 기타 사유 등 변경 사유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의 사후 변경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인사과-5020(2017. 10. 20.)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9313(2017. 11. 8.)

## 70. 정당원인 자가 군인이 되었을 때 탈당의무

### 【질의요지】

1. 입대 전 정당에 가입한 병사의 경우(군인사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인 및 공무원에 해당함)와 같이 군인 신분 취득 전 정당에 가입하고 군인 신분 취득 후에도 계속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군인에게 탈당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군인 신분 취득 전 정당에 가입한 병사 등 군인에 대하여 탈당할 것을 일반적으로 지시(공문 등의 형태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입대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당원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및 이유】

정당의 당원인 사람이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인 군인이 되는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이 후 전역 등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여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회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1277 (2018. 4. 26.)

## 71. 파견근무자 문서결재행위의 위법 여부

### 【질의요지】

파견 근무자의 문서 결재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

### 【답 변】

대리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파견 근무자가 문서 결재 권한을 잃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이 유】

「직무대리규정」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의 ‘사고’는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본 사안에서는 기존 단장의 파견과 함께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었는바, 일단 파견을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판단됨<sup>115)</sup>.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파견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직무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직무

115) ‘파견’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소속 기관을 바꾸지 않는 임시적인 배치전환 방법임

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짐.

한편 직무대리제도는 강학상 ‘권한의 대리’에 해당하는데, ‘권한의 대리’란 일정한 사유에 의거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이는 크게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뉘는데 직무대리제도는 「직무대리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정대리에 해당함.

그런데 강학상 대리는 ‘권한의 이양<sup>116)</sup>’, ‘권한의 위임<sup>117)</sup>’과는 달리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피대리관청을 위한 권한의 대리행사임. 즉, 권한의 이양 시에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고, 권한의 위임 시에는 위임관청이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으나<sup>118)</sup>, 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의 이전이 없음<sup>119)</sup>.

즉 「직무대리규정」 제7조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에 따를 때 직무대리자가 권한을 갖고 문서를 결재할 수 있음은 명확하나, 대리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 경우 기존 단장이 권한을 잃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기존 단장의 문서 결재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임. 끝.

---

116)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

117) 모법상으로는 위임행정청의 권한이지만, 위임의 법리에 따른 위임입법에 의해 그 권한이 이전되는 것

11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119) 행정법원론(하), 홍정선, 제22판, p.20~21 참조

## 72. 국군교도소 기부금품 접수 시 적용 법률

### 【질의요지】

국군교도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인지 아니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인지 여부

### 【답 변】

국군교도소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 【이 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고 함)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함. 한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이라고 함) 및 동시행령에서는 국군교도소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기부금품법 제5조 제2항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부금품의 접수’와 관련하여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기부금품법보다 국군교도소에 적용되는 군형집행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군교도소는 군형집행법 제115조 및 동시행령 제

138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48(2019. 1. 31.)

회신 : 규제개혁법제과-2135(2019. 3. 4.)

#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 총 목 차

(제1집 ~ 제33집)

# 차 례

1. 헌법, 행정법, 선거, 계약 .....	241
2. 조직관계 .....	244
3. 인 사 .....	248
가. 계급 및 분과 .....	248
나. 위 탁 .....	248
다. 복무기간 .....	249
마. 임 용 .....	253
바. 초임계급 .....	255
사. 임 기 .....	255
아. 군인 복무 기본법, 겸직 .....	256
자. 진 급 .....	256
차. 전 역 .....	258
카. 제 적 .....	261
타. 복 적 .....	262
파. 휴 직 .....	263
하. 휴 가 .....	264
거. 위 임 .....	264
너. 잡 칙 .....	264
4. 징 계 .....	267
가. 성 질 .....	267
나. 사 유 .....	267
다. 종류·대상 .....	267
라. 징계권자 .....	267
마. 징계위원회 .....	268
바. 징계절차 .....	268
사. 징계의 효력 .....	268

아. 항 고 .....	269
자. 잡 칙 .....	269
<b>5. 군무원 인사 .....</b>	<b>270</b>
가. 임용 .....	270
나.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 .....	271
다. 면 직 .....	272
라. 복 무 .....	272
마. 신분보장 .....	273
바. 징 계 .....	273
<b>6. 보 수 .....</b>	<b>273</b>
가. 보수 및 수당 .....	274
나. 보 칙 .....	277
다. 기 타 .....	278
<b>7. 병 역 .....</b>	<b>279</b>
가. 총 칙 .....	279
나. 징병검사 .....	281
다. 현역입영 .....	281
라. 소 집 .....	282
마. 병역의무의 종료 .....	283
바. 병역의무부과의 특례 .....	284
사.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284
아. 특 전 .....	285
자. 병무행정 .....	286
차. 벌칙 .....	287
<b>8. 예비군 .....</b>	<b>288</b>
가. 임무 .....	288
나. 조직과 편성 .....	288
다. 동원 .....	289
라. 훈련 .....	290

마. 소집통지서 .....	290
바. 무장 .....	290
사. 원호 및 가료 .....	290
아. 직장보장 .....	291
자. 실비변상 .....	291
차. 병역법과의 관계 .....	291
카. 권한의 위임 .....	291
타. 벌칙 .....	291
파. 기타 .....	292
<b>9. 학생군사교육 .....</b>	<b>292</b>
<b>10. 연금 .....</b>	<b>294</b>
가. 총칙 .....	294
나. 급여 .....	295
다. 퇴역연금 .....	295
라. 퇴직일시금 .....	296
마. 상이연금 .....	296
바. 유족급여 .....	297
사. 재해보상금 .....	298
아. 급여의 제한 .....	298
자. 기금의 조성 .....	300
차. 보칙 .....	300
카. 기타 .....	300
<b>11. 보훈 .....</b>	<b>301</b>
가. 총칙 .....	301
나. 대상 및 사유 .....	301
다. 급여 .....	303
라. 기타 .....	303
<b>12. 국가배상 .....</b>	<b>304</b>
가. 배상책임 .....	304

나. 배상기준 .....	305
다. 외국인에 대한 책임 .....	306
라. 절차(배상심의회) .....	306
마. 기타 .....	307
<b>13. 군용지취득 .....</b>	<b>307</b>
가. 총칙 .....	307
나. 목적물(제한) .....	308
다. 절차(원상회복) .....	308
라. 해제 .....	310
마. 보상 .....	310
바. 기타 .....	312
<b>14. 군수 .....</b>	<b>313</b>
<b>15. 방위산업 .....</b>	<b>317</b>
<b>16. 재정 .....</b>	<b>319</b>
<b>17. 예산회계 .....</b>	<b>320</b>
<b>18. 국유재산 .....</b>	<b>323</b>
<b>19. 군사시설보호 .....</b>	<b>328</b>
<b>21. 국립묘지안장 .....</b>	<b>333</b>
<b>22. 형사 .....</b>	<b>334</b>
가. 군형법 .....	334
나. 군사법원법 .....	335
다. 기타 .....	337
<b>23. 민사관계 .....</b>	<b>338</b>
<b>24. 기타 .....</b>	<b>340</b>

## 1. 헌법, 행정법, 선거, 계엄

- 귀농선 북방에서의 민간인의 권리제한 ..... 1-1
- 현역무관 혼인규정 제정 ..... 1-3
- 울곡집행단장의 전결권 유무 ..... 15-73
- 국방정책 자문위원의 신분 ..... 15-91
- 국방부장관의 시체보전법 제6조의 권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가부 ..... 3-31
- 국방부 조사대장의 신분증 발행권 ..... 5-15
-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아니한 소원의 처리 ..... 3-44
- 불가쟁력이 발생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3-45
- 소원의 재결범위 ..... 5-16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결정과 소원법에 의한 재결과의 효력관계 ..... 5-19
- 소원법상의 행정처분해당여부 ..... 14-106
- 개방제한구역의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할 때 허가관청과의 합의 여부 ..... 9-114
-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원법상 행정청인지 여부 ..... 15-299
- 군인으로서 송요찬씨 석방운동에 서명조인하는 행위가 군형법 및 선거법에의 저촉여부 ..... 1-5
- 국회의원선거법 제28조의 입후보를 위한 사임의 효력 발생시기 ..... 1-7
- 부대영내에서의 선거연설 및 포스터 첨부행위의 적법성 ..... 1-9
- 현역군인의 선거위원 취임 ..... 1-9
- 국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요건 ..... 1-10
- 병의 국회의원 입후보등록 가능여부 ..... 10-91
- 제3자의 부재자 신고 등 ..... 4-27
- 계엄사령관의 작전지휘권 등 ..... 1-170
- 계엄령하에 있어서 지휘감독권 등 ..... 1-172
-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 등 ..... 1-174, 2-170
- 포고령의 시행시기 등 ..... 2-21
- 포고령 위반자의 법정형 ..... 2-169, 1-256, 1-257
- 계엄시 보안업무지침 제정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조정 ..... 16-157, 21-29
- 계엄법상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한계 및 내용 ..... 8-137

○ 계엄사령관의 근로동원 가능여부 .....	9-125
○ 전국계엄과 지역계엄의 한계 .....	13-141
○ 위수령에 의한 적용부대 범위 .....	13-14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관행정청의 의미 .....	16-15
○ 국방부장관의 행정대집행 가부 .....	16-16
○ 헌법 제76조 제2항의 "중대한 교정상태"의 의미 .....	18-11
○ 국방부장관이 '지휘서신'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 .....	19-24
○ 합동참모본부의 성격 .....	17-11
○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된 것인지, 개편된 것인지 여부 .....	19-14
○ 합동참모본부가 각군의 직속상급기관인지 여부 .....	19-18
○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 국·실에 협조문에 의한 문서발신이 가능한지 여부 .....	19-21
○ 합동참모본부의 훈령제정권 및 위임전결 가능성 .....	19-26
○ 작전통제권 인수와 휴전협정 .....	19-237
○ 독도경비대에 대한 군의 작전통제 .....	19-240
○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	17-12
○ 위임받아 한 행정처분의 재결정 .....	18-13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법규명령성 .....	19-31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적용대상 .....	21-20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연구원에 장관의 해외여행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9-11
○ 군용전기통신법상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위임 .....	19-13
○ 재향군인회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인지 여부 .....	18-15
○ 토지협의매수시 군수의 보상불가통보가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 .....	19-9
○ 파견된 방위병에 대한 지휘·감독권 .....	18-87
○ 파견된 방위병에 대한 소속군부대의 업무활용 .....	18-89
○ 훈령과 지침의 효력관계 .....	18-16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17-13
○ 육군사관학교의 명예교수·명예졸업제도 .....	18-59
○ 군병원과 일반병원의 자매결연 .....	17-35

○ 군병원의 요양취급기관지정과 의료기관개설 .....	18-233
○ 무역대리점 등록업무의 민간단체위탁 .....	19-29
○ 재외공관주재 무관의 대외직명 사용 .....	21-3
○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재심청구와 집행정지 .....	21-5
○ 군무원의 정원조정시 경제기획원과의 협의여부 .....	21-7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류 제4조의 ‘제출할 서류’에 향후수집할 자료도 포함되는지 여부 .....	22-1
○ 국방부산하기관의 국방부장관 적인 사용 가능 여부 .....	24-6
○ 국방정보본부 군사보안업무 처리시 협조문 발신 가능 여부 .....	24-8
○ 국방조달본부장이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1
○ 군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4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1조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 .....	26-3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6조제2항의 대외적 효력 .....	26-8
○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국방부공문서의 효력 .....	27-3
○ 직무대리의 권한 범위 .....	27-6
○ 통합방위법상 검문소 운용 .....	27-9
○ 나라사랑카드와 행정권한의 위임 .....	27-17
○ 합참대 지휘·감독권한의 위임 가부 .....	28-2
○ 국직부대에 대한 합참 전투지휘검열 가부 .....	28-4
○ 국군상비병력규모에 관한 국방개혁법의 해석 .....	28-6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 .....	28-9
○ 장관의 군정권한 일부 합참의장 부여 여부 .....	28-12
○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간 권한의 민간위탁 가부 .....	28-16
○ 국방부 감사실의 방위사업청 감사 가능여부 .....	28-18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	29-1
○ 국군포로 등록 거부가 기속재량인지 여부 .....	29-2
○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	30-6

- 동일한 명칭의 의미 ..... 33-7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 33-23

## 2. 조직관계

- 해군병원에서의 군속의 치료의무 유무 ..... 1-13
- 폭동진압 ..... 2-15
- 중앙정보부가 국방부 예하 각 정보기관을 구속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29
- 부대 또는 기관설치권한 사항의 위임입법 ..... 3-53
- 군수근무단요원 선발 임명권한의 위임 ..... 15-74
- 전력증강위원회의 법적성격 및 기능 ..... 16-11
- 월남귀순용사 원호심사위원회의 성격 ..... 16-13
- 국방정보본부의 조직법상 성격 ..... 16-14
- 국방품질검사소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3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 16-155
- 국방부와 합참 및 각군의 관계 ..... 20-3
- 국방부감사관실의 감사범위 ..... 20-5
- 국방부내 C3I 사업단 설치 ..... 20-8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검열권한 범위 ..... 20-10
- 합참의장의 인사협의권 ..... 20-58
- 비상대비훈련주관부서 ..... 20-12
- 대사관예의 현역과견근무 ..... 20-15
- 고속도로 건설시 군병력투입근거 ..... 20-17
- 군전공의 정원책정업무의 민간기관위탁 ..... 20-18
- 국방대학원장의 교수임용기간결정권 ..... 20-20
- 국방대학원 부원장의 지휘권 ..... 20-21
-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7-177
-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징수 및 활용 ..... 21-9
- 감사임명예정자의 설립위원 위촉 ..... 18-217
- 법인설립전 임직원에게 대한 봉급용도의 보조금 지급 ..... 18-218
-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직직원에게 대한 보상 ..... 18-220

○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 .....	21-24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학교법인 이사 겸직 가부 .....	21-26
○ 군인공제회가 직할기관인지 여부 .....	19-220
○ 정관개정으로 감사의임기가 변동된 경우 정관개정전 선임된 감사의 임기 .....	19-221
○ 군인공제회 산하단체의 이사와 보수약정 .....	19-222
○ 군인공제회 임원의 임기연장방법 .....	19-223
○ 군인공제회 임원의 임기 .....	20-30
○ 군인공제회 관리 골프장이 사업장인지 여부 .....	18-222
○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수자료취급인가와 감독 .....	18-224
○ 재향군인회 임직원의 지방의회의원출마 .....	19-215
○ 재향군인회의 각급회 해산가능여부 .....	19-216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과 수익사업 .....	19-229
○ 재향군인회에 대한 기부금과 국방헌금 .....	19-230
○ 재향군인부인회의 사회단체 등록 .....	20-36
○ 예비군수송협회의 수익사업실시 .....	20-34
○ 예비군수송협회의 자동차 유상운송 .....	18-226
○ 예비군 수송협회의 명칭변경 .....	20-35
○ 예비군수송협회의 임원의 취임승인 .....	21-13
○ 예비군수송협회의 전세버스 사업등록 .....	21-15
○ 해병전우회의 사단법인설립허가 .....	18-228
○ 3·6동지회의 사단법인설립허가 .....	19-227
○ 사단법인 성우회의 설립허가 .....	21-27
○ 사단법인 세계군악연구원의 설립허가 .....	21-31
○ 한국국방연구원의 부설기구설치와 법적근거 .....	18-229
○ 한국국방연구원 직원에 대한 조건부 승격실시 .....	21-25
○ 한국국방연구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	21-30
○ 전사편찬위원회의 사업을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9-218
○ 전쟁기념사업회와 부설기관 .....	19-224
○ 전쟁기념사업회의 결산보고 .....	20-32
○ 한·미 안보연구회 법인설립허가 .....	20-37

- 국군홍보관리소가 특수일간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9-234
- 문화유적지표조사 소요경비의 부담주체 ..... 19-242
- 국방부 통합수송부의 군용차량 집중관리 ..... 21-11
- 한국국방연구원의 부설연구소의 지위 등 ..... 22-2
-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에 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및 법적근거 ..... 22-3
- 합동참모의장이 작전부대장에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23-1
- 차기잠수함 사업평가단에서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23-2
- 각 병과 사병의 헌병 직무 보조에 관한 질의 ..... 23-3
- 군체력단련장 운영의 재위탁 관련 질의 ..... 23-4
- 국방과학연구소가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하는지 ..... 23-5
- 전쟁기념사업회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 23-6
- 계룡대근무지원단 지휘·감독권 위임 가능 여부 ..... 24-3
-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지역·지구계엄사령관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4-5
- 국방부소속기관에 보안적부심의회 설치 가능 여부 ..... 24-10
- 국군수송사령부의 합동부대 지정 가능 여부 ..... 24-12
- 국방과학연구소 제2부소장 직위 폐지 가능 여부 ..... 24-13
- 호국장학재단이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인지 여부 ..... 25-3
- 직업보도교육인원의 별도정원화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하는지 여부 ..... 25-5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의 범위 ..... 25-7
- 합참의장이 국직/합동부대의 훈련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5-9
- 각 군 부대훈련과 관련된 예산 업무를 합참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 ..... 25-10
- 국직기관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배속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25-12
- 국방중기부대계획 및 연도부대계획을 합참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25-14
- 국방부합동조사단이 각군 헌병업무를 조정, 통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25-15
- 전쟁기념사업회가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5-16
- 장교제적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5-17
- 「군인사법」 제14조의 결원 보충 ..... 25-18

○ 물자·장비의 비축훈령(안)에 대한 사전 법령해석 질의 .....	26-6
○ 군기관에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가능한지 여부 .....	26-12
○ 부대해체 승인권자 .....	27-23
○ 합참예속 하에 합동군 창설 여부 .....	27-25
○ 해군기지구역 설정 건의권의 법적 성격 .....	27-32
○ 향방대대 편성 .....	27-34
○ 전시창설부대의 모체부대 변경 가부 .....	27-36
○ 해외파병부대 기록관리 .....	27-37
○ 장교후보생의 정원운영 .....	27-42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과의 관계 .....	27-43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	29-3
○ 한국국방연구원 직원의 국외여행 통제 .....	29-4
○ 보상금 환수 시 징수업무기관 .....	30-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	30-9
○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본부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 가부 .....	30-13
○ 합동참모의장의 국직부대에 대한 지휘, 감독권 범위 .....	30-16
○ 국직부대에서 합동참모의장 명의의 공문서 하달이 가능한지 여부 ..	30-20
○ 각 군 참모총장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30-23
○ 군 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3
○ 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 직무대리 임명 .....	31-5
○ 사관학교 명칭 사용 관련 .....	32-3
○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의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지 여부 .....	32-6
○ 방위력개선사업 TF를 국방부 내 조직으로 둘 수 있는지 .....	33-3
○ 군인공제회 산하법인체에 대한 감사 관련 .....	33-9
○ 군인공제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	33-16
○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기관’, ‘합동부대’의 범위 .....	33-20

### 3. 인 사

#### 가. 계급 및 분과

- 강등된 장교의 서열 ..... 4-57
- 신분변동에 따른 인사처리 ..... 8-30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군인인가 ..... 11-21
- 생년월일 오기로 임관된 장교의 신분 ..... 13-23
- 방위 이병과 현역 이등병간의 서열관계 ..... 15-57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강등 ..... 16-29
- 병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시 계급 재부여 ..... 18-41
-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강등되는지 여부 ..... 19-39
-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현역병에 대한 강등 ..... 19-61
- 전투병과 대대장에 대한 잠정적인 중령계급 부여 ..... 20-55
- 군인·군무원의 상하관계 ..... 20-84
- 군무원에게 지휘관 자격이 있는지 ..... 23-7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해당하는지 ..... 33-43
-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명예퇴직 후, 임명권자의 임명없이 직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한지 ..... 33-53

#### 나. 위 탁

- 군인사법시행 이전의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 1-17, 8-47
- 병으로서 외국에 유학한 자의 복무기간 ..... 2-48
- 현역군인의 타업무 겸직의 합법성 여부 ..... 3-60
- 군위탁생의 비용상환 ..... 8-54
- 군인의 외국유학 및 위탁교육과 복무기간의 가산 ..... 1-18, 3-69, 9-21, 10-29, 15-20
- 군 기술위탁생출신 하사관의 복무기간 ..... 11-55
- 위탁교육받은 자가 공상으로 전역한 경우의 비용 반환여부 ..... 19-44
- 방위병의 취업가능여부 ..... 17-34
- 현역군인의 특허권 양도가 영리행위인지 여부 ..... 17-36
- 단기복무장교의 복학보장해당여부 ..... 17-85

- 현역교관의 국외파견 ..... 18-56
- 한국국방연구원에 현역군인지원시 지원기간 설정여부 ..... 18-57
- 국외위탁교육생의 지급경비 반환 ..... 21-51
- 예산지원이나 복무가산 없이 주간대학원에 취학시키는 제도의 적법성 ..... 22-4
- 형이 실효 또는 사면된 자나 중징계후 기록말소된 자가 군위탁생이  
될 수 있는지 ..... 22-5
- 군위탁생 해임, 재정계 관련 질의 ..... 23-16
- 군위탁생으로 선발된 단기복무하사관의 지위 ..... 23-17
- 야간위탁교육생의 수학기간 산정 ..... 24-19
- 군위탁자 5년차 전역 가부 ..... 28-48
- 군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면제 ..... 28-66
- 위탁교육 종료자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 29-13
- 복수의 위탁교육 복무기간 가산 ..... 29-16
- 군위탁생 군전공의 수련과목 강제 지정 ..... 30-107
- 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사적 국외여행 ..... 31-13

**다. 복무기간**

-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의 의무복무기간 ..... 1-52
- 학도군사 훈련과정(RNTC) 출신 하사관의 복무연한 ..... 2-35
- 단기복무장교의 복무연장과 전역 ..... 15-88
- 연장복무를 지원한 단기복무장교의 전역시기 ..... 16-19
-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 및 전역 ..... 3-81
- 단기장교의 복무연장 ..... 15-29
- 여군복무기간의 연장 ..... 9-49
- 20년 이상 현역복무자 복무기간 계산 ..... 4-63
- 간부후보생의 장기복무 ..... 5-35
- 의무·법무·군종 병과장교의 복무기간 기산점 ..... 5-45
- 군법무관 시보 실무수습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10-27
- 기본병과 장교가 복무기간중 법무병과로 전과한 경우의 복무기간 .. 12-38
- 군의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한 자의 의무복무기간 ..... 8-58
- 군의관으로 복무중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의 장기복무 장교 해당 여부 .. 10-40

-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 11-52
-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중인 군전문의 장교의 복무기간 ..... 9-25
- 군법회의에서 면소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자의 복무기간 산입,  
    봉급차액 소급지급 ..... 9-25
-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로 복직될 경우 호봉승급계산시 복무기간공제 여부 ..... 11-41
- 제적된 단기복무 하사의 복무기간 ..... 9-47
- 위탁교육기간의 실역복무 포함여부 ..... 10-24
- 국비로 외국에 파견한 감독관의 파견기간 ..... 10-54
- 인사관리잠정규정 제31조에 의한 교관복무연장 ..... 12-27
- 병역의무 특례규정 시행이전 군에 종사한 자의 복무기간 기산일 및 복무  
    기간 ..... 12-31
- 무관후보생이 하사관으로 복귀한 경우 복무기간의 환산여부 ..... 14-33
- 이중병적자 복무기간 합산가능 여부 ..... 12-59, 13-22
- 이중병적자의 의무복무연한 ..... 8-35
- 군인사법 제정 이전의 예비역장교의 예비역 복무기간 ..... 9-35
- 예비역으로부터 소집된 실역 복무장교의 복무기간 ..... 12-25
- 예비역 장교·준사관·하사관의 현역 편입규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문제 ..... 12-61
- 지원에 의한 예비역 무관의 실역복무, 계급정년 계산 ..... 1-45
- 현역 복무기간 단축사유 ..... 9-75
- 사관후보생의 장기복무지원서 제출의 효력 ..... 17-17
- 의무복무기간을 넘는 기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여군장교를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 17-19
- 병으로 복무중 임관한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 17-21
- 6개월간 어학교육을 받은 장교의 가산복무여부 ..... 17-22
- 군의장교의 복무기간 산정 ..... 17-23
- 외국장비제조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군위탁생의 복무기간의 가산 여부 ..... 17-24
- 외국유학한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 17-25, 21-37
- 제적된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 17-27
- 심신장애자 치료를 위한 복무연장 ..... 20-68
- 군인력운용상의 필요에 의한 군복무기간 단축가능 여부 ..... 17-74

○ 특과장교의 복무기간단축 .....	17-77
○ 특례보충역이었다가 방위소집된 자의 복무기간 .....	17-80
○ 공중보건의사의 공중보건의업무 종사기간의 성격 .....	17-89
○ 주간근무를 하면서 주간과정 위탁교육받은 자의 가산복무 .....	18-27
○ 장교임용전 복무연장철회와 복무연장 장교임명의 적법성 .....	19-40
○ 제적된 일반하사의 병으로서 잔여복무기간 복무 .....	18-83
○ 재영복무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 .....	18-85
○ 군위탁생이 장기복무장교가 된 경우 복무기간 가산여부 .....	19-42
○ 군위탁생 이수기간과 장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 .....	19-50
○ 군법무관 가산복무 적용대상자 .....	21-68
○ 장교임용을 위한 교육기간의 군복무기간 해당여부 .....	21-70
○ 학군장교의 의무복무기간 .....	22-6
○ 해임된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	22-7
○ 소위임관시 장기복무 인사명령이 발해진 경우의 효력 .....	22-8
○ 정상근무를 하는 주간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	22-9
○ 일반하사가 연장복무를 원하는 경우 복무연장을 할 수 있는지 .....	23-26
○ 현역병(기술특기병) 복무기간 단축 가능 여부 .....	23-14
○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 .....	24-46
○ 복무연장장교에 대하여 복무기간연장 명령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25-25
○ 연장복무장교의 휴직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25-31
○ 공소기각판결시 휴직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산입 여부 .....	25-33
○ 여학생 ROTC 장교 선발시 의무복무기간 .....	25-75
○ 자비입학자 취학추천 및 의무복무기간 .....	26-55
○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기산점 .....	27-55
○ 위탁교육자의 가산의무복무기간 기준 .....	27-57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이 군인사법 제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7-60

- 군책임운영기관장인 현역군인 계약연장 가부 ..... 28-26
- 이중국적자의 장기복무 여부 ..... 28-53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28-70
- 유급지원하사의 신분전환시 의무복무기간 기산방법 ..... 29-14
- 유급지원병 복무연장 가능성 ..... 29-15
- 조종장교의 복무서약서의 법적 효력 ..... 29-22
-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 29-23
- 해군 항공병과장교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개정 군인사법의 적용시기 30-62
- 가산복무기간 중 정직 처분 받은 자의 복무기간 산정 ..... 30-70
- 간호사관 출신 장교 의무복무기간의 합리성 ..... 31-34
- 복무연장 기간 중 불임휴직을 한 경우 전역일이 연장되는지 여부 .. 31-72
- 비예산 국외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 31-147
- 전직지원교육 지원 요건 상 복무기간과 휴직기간 산입 ..... 32-16
-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특정 병과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32-26

**라. 정년**

- 계급정년에 해당되어 전역되는 장교의 정년해당일 ..... 8-63
- 예비역 장교·준사관·하사관의 퇴역 또는 면역 ..... 9-19
- 군인연금법상 특례에 의해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의 퇴역 ..... 9-24
- 법무·의무·군종장교의 병역법에 의한 면역연령 ..... 11-57
- 의무행정장교에게 군인사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하여 그 연령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14-39
- 군국간호학교의 일반학 과정 교수요원의 연령정년 ..... 15-44
- 군사관학교 부서장 겸 조교수인 현역장교의 정년 ..... 15-87
- 사관학교 교수요원의 인정 여부 및 정년 ..... 21-41
- 포로로 관리중인 자가 현역정년에 달한 경우의 인사처리 ..... 17-30
- 임시대령의 계급정년 ..... 17-31
- 의무복무기간대에 정년에 달한 경우 ..... 18-23
- 특정 병과원에 대한 연령정년 단축 가능 여부 ..... 24-21
- 해병대 영관급장교의 정년 단축 ..... 26-46

- 국제기구 채용으로 휴직된 경우 정년과의 관계 ..... 30-57
- 임시계급의 현역복무기간(정년) ..... 31-103
- 재임용 심사 전 군의 치의 장교 명예전역수당 기준 정년 ..... 32-13
- 개정된 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의 단계적 적용가부 ..... 32-28

**마. 임 용**

- 공무원 신분에 관한 행정행위의 효력 ..... 1-40
- 공무원 전직시험 ..... 2-30
- 사관생도의 편입학 ..... 2-50
- 준사관이 군법무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 5-32
- 임용자격의 유효기간과 군복무 ..... 5-42
- 하사관의 임용자격 결격사유 ..... 7-22
-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 7-26
- 병역기피자의 군종장교 선발 여부 ..... 8-21
- 인사발령 취소 ..... 8-39
- 군의관요원의 해·공군 분류에 있어 지원서의 법적 효력 ..... 9-72
-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의 전직 ..... 10-31, 10-32
- 장기복무장교의 연령제한 ..... 11-27
- 민간인 강사의 임명 ..... 11-47
- 사관학교 교육중 도태자에 대한 하사관 임용 가능여부 ..... 12-54
- 군종장교요원 선발 ..... 13-20
- 장교 임용 연령제한 ..... 13-21
- 조건부 의사의 군의관 임용가능성 ..... 13-26
- 재외공관 주재 무관요원 선발규정 제11조의 해석 ..... 13-31
- 예비역 군종장교 후보생의 자격취득 제한연령 ..... 13-42
- 하사관 임용에 있어서의 학력 ..... 16-23
- 사관학교에의 특정직공무원 교수의임용 가부 ..... 16-38
- 국방대학원 교수의 기한부 임용 가부 ..... 16-34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 17-71
- 성결교신학교 졸업자의 사관후보생 지원자격 ..... 20-43
- 정년전역하는 위관급 장교의 준사관 임용 ..... 18-29

○ 육군장병을 공군으로 전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19-52
○ 군장학생의 타군입대 .....	20-45
○ 5급 공채합격자의 현역장교 임용 최고연령 .....	20-46
○ 영관급장교에 대한 대통령 임명장 수여 .....	20-56, 21-63
○ 육군사관학교의 부교수를 국방정신교육원의 부교수로 보직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23-19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구군속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	23-57
○ 독학사의 해군학사장교 지원자격 여부 .....	24-22
○ 임용결격사유자를 준사관으로 임용한 처분의 효력 .....	24-24
○ 북한주민 귀순자의 하사관 특별임용 가능 여부 .....	24-54
○ 국방대학교원 신규채용 .....	25-28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사관후보생 지원 .....	26-29
○ 장기·연장복무 지원 시 연령상한 연장여부 .....	27-65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상의 ‘임용’ .....	28-29
○ 학위미취득 장교 임관취소 .....	28-91
○ 준사관 지원자격 .....	29-9
○ 국방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시 특정 연구조건 부과가부 .....	30-29
○ 전역심사위원회 결과 ‘계속복무’로 판정된 생도의 임관 가능여부 .....	30-35
○ 군중장교 임용제한 연령 .....	31-19
○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적부심의회에서 ‘부적격’ 결과를 받은 자에 대한 임용 가능 여부(벌금형 전과 사유) .....	31-21
○ 육군 협약대학 졸업자의 해·공군 장교 임관 가능성 .....	31-29
○ 신원조사 결과 회보 시 범죄경력조회 일체의 회신 가능성 .....	31-101
○ 군중사관후보생의 병적 유지 연령 .....	32-56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4급 이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60세 초과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지 .....	33-41
○ 사관학교 교수를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특정직공무원으로 단독채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33-75

- 임기제로서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이나 직제개편으로 전직된 경우 군 인사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전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 33-102

**바. 초임계급**

- 법무장교의 경력환산 ..... 4-59
-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군법무관의 사회경력 환산 ..... 21-72
- 장교 초임계급 부여 ..... 8-33
- 경력환산의 소급적용 ..... 10-26
- 의무장교의 임용연령제한 및 재임용시의 계급 및 경력환산 ..... 10-30
- 국민방위군 사관근무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볼 것인지 여부 ..... 13-28
-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대한 일반병과 병적편입과 초임계급 ..... 16-24
- 사관학교 교관요원의 초임계급 ..... 17-20
- 사관학교 1년 중퇴자의 현역입영시의 초임계급 ..... 17-70
- 석사학위를 소지한 공사교관의 초임계급 ..... 20-49
- 군의장교의 인턴수련기간에 대한 사회경력 환산 여부 ..... 21-56
- 일반하사제도의 시행 가능 여부 ..... 30-45

**사. 임 기**

- 서리기간의 임기계산 여부 ..... 4-47
- 복무연장에 따른 장교분리 ..... 6-29
- 병과장의 임기 기산 ..... 11-37
- 중요부서의 장의 임기 ..... 15-79
- 해병통신병과장의 임기 ..... 20-63
- 임기제로 진급된 자의 임기 ..... 24-26
- 병과장 및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 ..... 26-19
- 병과장의 임기 중 전직을 위한 해임가능성 ..... 26-44
- 박사학위 교육기간이 사관학교 부교수 임기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6-69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 부대 ..... 31-126
- 해군 법무병과장의 임기만료 후 해군 내부 전직 가능성 ..... 31-136
- 임기제진급자 최저복무기간 충족여부 및 임기계산 시점 관련 ..... 33-66
- 군인사법 상 병과장 임기관련 ..... 33-94

**아. 군인 복무 기본법, 겸직**

- 군인복무규율에 관한 질의(겸직금지) ..... 3-60, 7-34
- 민간대학에 출강하는 사관학교 교수의 겸직 ..... 9-28
- 군인군속의 한국무선종사자협회에 가입여부 ..... 10-201
- 예비역으로부터 소집되어 실역복무중인 장교의 계급 호칭 ..... 13-19
- 군부대장의 학교장 등 겸직가능 여부 ..... 19-176
- 방위소집자의 겸직 ..... 10-35
- 국방정책자문위원 해촉요건 ..... 15-78
- 국방대학원 교수의 겸직 가부 ..... 16-35
- 천주교 군종교구 유지재단의 이사의 직무가 영리적인지 여부 ..... 19-54
- 연예인의 징집전 제작된 광고와 군인복무규율상의 영리행위 ..... 22-10
- 군 소속 체육선수의 프로구단 입단계약 가능여부 ..... 23-11
- 군무원이 재개발조합 이사가 될 수 있는지 ..... 23-17
- 군인공제회 산하법인 임직원의 정치활동 금지여부 ..... 23-55
- 군인의 학교법인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 24-35
- 대외 출강이 겸직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 25-34
- 장관급장교의 산하기관 임원직위 겸직 ..... 26-17
- 현역복무 중인 병사의 직계존속을 위한 선거운동 및 청원휴가 ..... 26-67
- 영리적 직무 범위 판단 기준 ..... 27-68
- 파견 상태로 국제기구에 복무가능 여부 ..... 28-45
- 가점·감점제도로 외박제한 가부 ..... 30-105
- 해병대 사령부의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조치 관련 지침의 적법성  
..... 31-68
-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장인지 여부 ..... 32-65
- 국방대학교 교수의 대외활동 겸직 가능 ..... 32-74

**자. 진 급**

- 군장성급의 정규진급 절차 ..... 3-84
- 진급낙천사유 ..... 7-23
- 장교진급 ..... 5-26

○ 장교진급심사 .....	8-29
○ 장교진급 낙천자의 인사처리 .....	8-50
○ 남조선 국방경비대원의 추서진급 .....	15-86
○ 군인사법 부칙 제2조 해당자의 진급 .....	9-42
○ 군인사법상의 진급 해당연도 .....	10-25
○ 임시소령과 예비역소령 .....	15-81
○ 장교진급 예정자의 진급발령 순위 .....	14-28
○ 군인진급규정에서의 "유죄판결"의 의의 .....	1-236
○ 국제기능올림픽 입선자와 1계급 특별진급 .....	15-27
○ 진급예정자 명단과 유죄판결 .....	16-22
○ 군인사법상의 진급 해당연도에 관한 질의 .....	17-28
○ 공군학사장교의 육군장교 복무경력 인정 .....	20-51
○ 진급최저근속기간 단축규정의 적용 .....	20-53
○ 진급전 전년도에 진급선발 .....	18-32
○ 진급예정인원의 의미 .....	18-34
○ 연령정년에 달한 이후의 진급선발 .....	18-36
○ 진급선발후 연령정년에 달한 하사관의 진급 .....	18-37
○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진급발령 .....	18-39
○ 진급발표된 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진급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	19-37
○ 원사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 .....	21-49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중사진급예정자의 진급 .....	21-65
○ 실효된 벌금형 선고사실로 진급선발시 감점하는 것이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	22-11
○ 진급예정자의 법적 지위 .....	24-27
○ 임시계급부여제도의 적법성 여부 .....	24-28
○ 진급예정자가 중징계를 받아 항고하여 경징계로 감경되었으나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경우 진급발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5-23
○ 명예진급제도를 국방부지침으로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5-37
○ 장교진급선발위원회가 진급예정인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	26-39

- 진급예정인원과 진급제청인원의 범위 ..... 26-57
-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의 예외(약식명령 청구) ..... 27-71
- 부사관 근속진급제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 ..... 29-17
- 재외공관 무관의 직책계급장 부여 가부 ..... 29-25
- 예비역 간부의 진급심사 시 전역예정자 선발 가부 ..... 31-95
-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 12월에 정년전역일이 도래하는 장교의 법정진급 대상여부 ..... 33-49
- 인력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진급을 시행할 수 있는 지 ..... 33-83

### 차. 전역

- 병력초과운영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적용 ..... 1-30
-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복무기간 초과자의 전역 ..... 1-47
- 전역지원서 제출기간 ..... 1-48
- 제적사유가 확정된 군인이 그 확정일 전에 원에 의한 예편이 되었을 경우의 조치 ..... 1-49
- 군인으로서의 신분종결일 ..... 1-71
- 전역일 당일의 신분 ..... 15-90
- 지원에 의한 단기하사에 대한 저능률자 전역규정의 적용 ..... 15-75
- 저능률자 전역규정 해석 ..... 2-32
- 장기복무전형에 불학격한 장교로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처리 ..... 3-77
- 예비역무관의 특수 전면역 ..... 7-73
- 여군 임신으로 인한 전역무제 ..... 5-37
- 군인사법상 복무연장자의 전역 ..... 6-23
- 불명예제대자의복무해제시기 ..... 7-16
-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하는 장교에 대한 전역조치 가능 여부 ..... 8-43
- 위탁교육 이수자의 전역원 제출 ..... 8-52
- 연령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 연기 ..... 8-53
- 의원출마를 위한 전역 ..... 8-145
-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기일전에 제출된 전역 보류신청 ..... 9-29
-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전의 전역 ..... 9-32
- 전역될 병과장의 전역보류 ..... 10-19

○ 전역보류처분의 효력기간 .....	15-24
○ 2중전역 발령된 자의 효력 .....	10-20
○ 장기복무 법무장교의 전역 등 .....	10-23
○ 단기하사 및 병에 대한 전공상 여부 결정 .....	9-17
○ 위탁교육을 받은 간호장교의 특수전역 등 .....	11-63
○ 전역의 특례 .....	11-68, 14-35
○ 형집행정지중인 자가 의병전역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인을 의병전역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12-23
○ 군복무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 .....	16-21
○ 군인신분상실시기 .....	17-33
○ 착오에 의한 전역처분의 취소여부 .....	17-78
○ 현역병의 특수전역 .....	17-79
○ 장기복무장교의 장기복무해임 .....	18-21
○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	18-25
○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시기 .....	19-55
○ 을중 위탁생이었던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	19-58
○ 5년차 전역희망 장기복무장교의 전역절차 .....	20-76
○ 전역지원서 제출 없는 전역지원 .....	18-42
○ 전역지원서의 효력과 인사정책 .....	20-79
○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여부 결정권한 .....	18-44
○ 8,9급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	20-66
○ 의무장교에 대한 전·퇴역신체검사시 적용규정 .....	18-45
○ 전역보류기간만료후 전역보류 .....	18-48
○ 의무복무기간 연장입법의 적용시기와 전역보류 .....	19-63
○ 현역정년에 달한 장교의 전역보류 .....	20-73
○ 퇴역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역보류 .....	21-53
○ 군위탁생출신장교의 의병전역과 비용반환 .....	18-52
○ 기소된 군의장교에 대한 전역발령일자 .....	20-71
○ 전역에 관한 해군 건강관리및신체검사규정의 효력 .....	21-54

○ 편제조정 및 교과개편과 관련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전역관리문제 .....	22-12
○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복무장교이 강제전역 여부	22-13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제4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22-14
○ 직업보도교육의입과자격	22-15
○ 임기제 진급자의 전역시기 등	23-10
○ 장기복무 의무장교가 전문의학과정 수습 도중 위 과정을 중단한 경우 5년차 전역이 가능한지	23-13
○ 군인사법 개정 전 임관한 단기장교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해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있는지	23-23
○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 기산점	23-25
○ 정원초과 인력해소를 위한 강제전역 가능 여부	23-28
○ 직업보도교육 신청자격 여부	24-33
○ 특수병과장교 전역시 적용할 신검규정	24-52
○ 장관급 장교의 정년전역	25-27
○ 의무조사결과 신체등급(4급) 판정을 받은 자를 전역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26-23
○ 가산복무기간 중 군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장학금을 반납하고 전역가능한지 여부	26-25
○ 육아휴직자의 5년차 전역지원	26-33
○ 의무조사결과 심신장애등급이 1-7급인 자를 현역복무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26-51
○ 전직된 임기제 진급자의 전역시기	27-73
○ 육아휴직자의 전역일	27-78
○ 기소휴직 처리된 전역예정자의 전역명령의 적법성	27-80
○ 임기제 진급자 보직 변경	28-55
○ 군 체육선수 ‘도태’의 법적 성질	28-68
○ 심신장애전역 대상자 복무 가능 여부	28-73
○ 전투경찰순경 전환복무 해제	28-83
○ 직업보도중 근속진급된 경우 재복무 가부	28-87
○ 전역보류 직권취소 및 철회	29-11

- 임기제 진급자를 전직지원교육 비대상자로 한 해군 규정 ..... 30-67
- 부사관후보생이 심신장애 전역을 하는 경우 전역처분 필요 여부 .... 30-82
- 중징계처분에 대한 항고기간 중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30-10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범위 ..... 31-42
-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가능성 31-44
- 국직부대 소속 해군 위관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 제대 ..... 31-59
- 기소휴직 된 단기복무장교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시 전역일자 등 .. 31-62
- 1심판결 선고 후 중징계 받은 자의 지원 전역 허가 가부 ..... 31-65
- 육군 예비역 장교 전역명령 정정 ..... 31-97
- 장기복무장교 5년차 전역 ..... 32-19
-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 32-45
- 전역심사 보류 중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전역심사 가능여부 ..... 33-33
- 영관급 장교로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정밀장비기술자에 항공기 조종사가 포함되는지 ..... 33-62
-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심사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계속 복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 33-99

**카. 제 적**

- 벌금형을 받은 자의 제적 ..... 1-24
-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관의 제적 ..... 1-25
-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제적 ..... 1-27
- 군인사법상 제적대상자가 제적되기 전 복권된 경우의 제적 ..... 1-28
- 사건계속중인 자의 제적 ..... 1-32
- 집행유예중 사후조치로 잔여 유예기간의 집행면제 효력 및 제적 .... 1-53
- 군인사법 제40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의 병역의무 ..... 5-66
- 제적발령 지연자의 제적일자 ..... 7-27
- 제적명령의 지연과 복무기간 환산 ..... 9-20
- 성직자격 박탈된 군종장교의 인사처리 ..... 8-55
- 대리입대자의 신분 ..... 8-27, 9-18, 11-63

○ 제적될 자의 제적전 복무기간의 성격 .....	8-28
○ 제적과 복무월수 계산 .....	8-56
○ 유죄확정된 자의 제적 .....	8-59
○ 외국인이 인지한 자의 제적 .....	8-149
○ 해군 예비원의 제적 .....	9-36
○ 2중 병적자의 제적 .....	9-44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제적 .....	10-41, 13-34
○ 제적된 장교의 신분처리 .....	10-42
○ 사면과 제적자 인사처리 .....	10-48
○ 법무장교후보생 중 결격사유로 인해 임관이 불가능할 경우 현역병 입영여부 .....	12-65
○ 제적된 단기하사의 병역에 관한 질의 .....	14-37
○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장교 등의 전역 일보 일자 .....	12-29
○ 복무 연장한 임용 하사관이 제적된 경우의 인사처리 .....	15-35
○ 포로·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군인의 인사 .....	15-53
○ 포로 및 행방불명된 군인에 대한 인사 .....	16-33
○ 형사사건이 군의 후보생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	16-30
○ 행방불명된 장교의 제적시기 .....	20-81
○ 무관후보생이 된 현역하사관 등의 신분상실시기 .....	20-65
○ 집중호우로 실종된 장병에 대한 순직처리의 가능시기 및 방법 .....	22-16
○ 사관학교퇴교자의 편입학 가능 여부 .....	24-38
○ 하사관 제적 처리 절차 .....	24-47
○ 육군3사관학교 규정에 의한 퇴교 가부 .....	28-33
○ 재심청구로 무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 대한 제적명령 및 진급 .....	31-54
○ 군중장교의 소속 중단 변경과 장교 신분의 보유 .....	31-112
○ 장교정원조정계획의 일환으로 군 교수의 정원조정이 이뤄질 경우, 일부 감원되는 직위의 군 교수를 면직할 수 있는지 .....	33-69
○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를 심신장애를 사유로 퇴학시킬 경우 어느 제 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지 여부 .....	33-78

## 타. 복 적

- 재심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자의 복적 여부 ..... 3-37
- 상소권 회복된 자의 인사처리 ..... 2-44, 6-30
- 무죄판결된 직위해제 공무원 복직시기 ..... 8-40
- 복직 발령시기 ..... 8-62
-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복직 9-33
- 재심과 복직시기 ..... 10-45
- 착오에 의한 제적임이 확인된 경우 해군 예비사관의 복적 ..... 10-46
- 재심무죄인 자가 연령정년에 달한 경우 복직 및 전역시기와 복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범위 ..... 22-17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학적복원 및 추가임관 ..... 23-26
- 선고유예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 25-36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의 상고심 계속 중 복직 가능여부 ..... 26-49
- 긴급조치위반 무죄 판결과 복직 가능성 ..... 31-23

## 파. 휴 직

- 휴직으로부터의 복직시기 ..... 1-20, 8-62
- 군법회의에서 무죄로 확정된 자의 복직 ..... 9-46
- 휴직명령 시기 ..... 11-32
- 휴 직 ..... 11-44
- 휴직이 호봉 재획정에 미치는 영향 ..... 15-17
- 소급 휴직명령의 적법 여부 ..... 12-50, 11-17
- "공소권무" 결정을 받은 자의 인사처리 ..... 14-21
- 벌금형 선고사건의 이송가 휴직명령 ..... 19-57
- 휴직기간 계산방법 ..... 19-67
- 3군합동부대 소속장병의 외박규정 ..... 24-36
- 육아휴직자 진급발령 보류 ..... 28-81
-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일부를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29-27
- 예비 간호사관생도 가입학 기간 중 퇴교처분 관련 ..... 30-21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30-74

- 가사휴직을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31-151
- 육아휴직한 간호장교에 대한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활용가능성 31-154
- 남성 군인의 불임·난임 휴직 ..... 32-11
- 기소휴직과 무죄판결 ..... 32-61
- 기 실시완료된 육아휴직에 대한 자녀변경 가능여부 ..... 33-135

#### 하. 휴 가

- 불치의 병(암)으로 진단된 장교의 해외 휴가 ..... 10-55
- 군인의 휴가일수와 공휴일 포함여부 ..... 16-32
- 대간첩작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복무단축 등 ..... 16-44
- 군인의 휴가중 해외여행 ..... 17-37
- 벌금형 확정된 자 대한 소급휴직 명령 가능 여부 ..... 24-41
- 기소휴직된 자의 상고심 계속 중 복직 가부 ..... 27-85
-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청원휴가 가부 ..... 28-52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지침 하달의 적법성 ..... 31-49

#### 거. 위 임

- 의병전역권 위임 ..... 7-15
- 한·미통합 제1군단 부군단장의 권한 부여 ..... 8-31
- 시험실시 권한의 위임 ..... 11-22
- 휴직명령권의 위임 ..... 11-67
- 방위병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의 위임 ..... 16-27

#### 너. 잡 칙

- 외국사관생도의 국내유학 ..... 7-18
- 하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육군참모총장의 규칙 제정 ..... 9-26
- 전사일자 기준 ..... 9-41
- 군무이탈자의 처리 ..... 10-47
- 국방대학원 입학자격 ..... 11-26
- 현역장교의 타군으로의 전군 ..... 12-122
- 국방대학원 교수 등의 신분보장 ..... 13-32

○ 군인사법중 개정법률 등의 시행에 따라 현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에 대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	14-24
○ 포상권자의 범위 .....	15-42
○ 사법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 시보의 실무수습 .....	8-24
○ 예비역장교의 현역장교로의 편입 .....	11-59
○ 국방부 직원(군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보직관리 .....	12-57
○ 전사편찬위원 및 촉탁의 임용 .....	15-40
○ 전사편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직급표시 .....	15-58
○ 탈영기록 정정 .....	5-28
○ 기소중지처분된 자의 보직 .....	7-25
○ 사관학교 등의 용어 정의 .....	15-66
○ 하사관 지원 입대자가 중사로 진급 계속 복무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로서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	15-67
○ 예비군 중대장의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겸직 .....	16-36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한 처리 .....	16-39
○ 국군장의 요건 .....	17-38
○ 장기입원환자의 처리 .....	20-69
○ 생사불명의 포로에 대한 사망구분 .....	20-83
○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자에 대한 군장학금 반납 면제여부 .....	22-18
○ 군 영내에 설치한 게임기의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한 경우 영업허가의 대상이 아님 .....	22-19
○ 국방부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 만료시 직무대행 가능여부 등 .....	23-12
○ 승진임용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	23-27
○ 특수병과 장교의 당직근무에 관한 질의 .....	23-24
○ 군장학생 해임시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반납 여부 .....	24-43
○ 부사관의 학군무관후보생 편입 .....	27-89
○ 부사관 근속진급의 시행일 .....	27-90
○ 대학장학생의 3사 입학시 '전학'의 적용 여부 .....	28-36
○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의 '학기말'의 의미 .....	28-4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기지원 가부 .....	28-57
○ 월남전 실종자(하사 안00) 법적 지위 .....	28-76
○ 사관학교 퇴교자 출신 부사관 법적지위 .....	28-94
○ 전역 후 재의무조사 .....	28-127
○ 육군3사관학교 1~3기 졸업생 학점인정 .....	29-19
○ 국방대부총장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 .....	29-24
○ 사관학교 가입학자의 신분 .....	29-26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 .....	29-28
○ 군수형자의 일반교도소로 이송 .....	30-43
○ 군교수의 재임용심사 .....	30-85
○ 인사교류 통제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보직 기산점 .....	30-87
○ 영관장교의 임명장에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	30-96
○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반납처리 .....	31-11
○ '군 내 임신여성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	31-27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인의 범위 .....	31-38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위원 해촉 .....	31-52
○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자 등이 군인인지 여부 .....	31-74
○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자력 조회 권한부여 가부 ..	31-83
○ 입대취소 또는 무효인 자의 신분 .....	31-124
○ 부사관 군장학생의 장학금 반납 .....	31-131
○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 직무대리 가능성 .....	31-145
○ 군무원 근로계약 시 계약 명의를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으로 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32-38
○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	32-42
○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검토 .....	32-48
○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 .....	32-63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후 동일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 가능 횟수 .....	33-46

- 한국국방연구원 임직원의 복무제도에 국가공무원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33-56
- 군인사법 제54조의 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 33-81
- 부대개편에 따른 계약해지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훈령에 위반되는지 ...  
..... 33-85

## 4. 징 계

### 가. 성 질

- 형사처분과 징계처분 상호간의 관계 ..... 1-54

### 나. 사 유

- 군인신분 취득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가능 여부 ..... 1-37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자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 8-45
- 징계사유 소멸시효 ..... 12-56
- 군인사법상 징계사유의 시효 ..... 9-23
- 징계시효의 기산점 ..... 21-75
- 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 27-92
- 무단국외여행자 징계 ..... 32-58

### 다. 종 류·대 상

- 카투사병의 징계 ..... 2-39
- 간부후보생의 징계 ..... 3-57
- 하사관후보생의 군인사법에 의한 징계 ..... 5-41
- 군속징계 ..... 7-33
- 파견된 공무원 또는 군인에 대한 징계권 행사 ..... 8-46
- 병의 강등 ..... 8-60, 12-133
- 소집중에 있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한 징계권 행사 ..... 10-110
- 징계유예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30-41
- ‘군수용자’, ‘영창시설’의 개념과 계호업무 종사자 범위 관련 ..... 32-34
-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해당여부 ..... 32-50

**라. 징계권자**

- 징계권자의 부인권 행사와 징계처분 ..... 2-51
- 하자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의 취소 등 ..... 3-66
- 징계위원회의 직무 ..... 3-79
- 타군 장병에 대한 징계 ..... 6-42, 7-35
- 위수사령관의 징계권 ..... 6-43
- 감독을 받은 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범위 ..... 2-31
- 징계권자로서의 함정장의 정의 ..... 15-82
- 징계권자 자격 ..... 11-19
- 군인사법상의 징계권자 ..... 12-45
- 수도권통합병원분원장의 징계권 및 표창권 존부 ..... 13-38
- 국방대학원 소속의 본부대장 및 본부중대장의 경징계권 행사 가능 여부 ..... 14-30
- 미8군 한국군 연락장교단장의 징계권 ..... 12-52
- 국방품질관리소장의 현역군인에 대한 징계 ..... 21-52
- 한국국방연구원에 파견근무중인 현역군인에 대한 징계 ..... 21-49
- 국방대학원소속 특정직 교수의 징계관할 ..... 23-8
- 수임군부대장이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 25-29
- 국방과학연구소 전속 군인에 대한 징계 관할 ..... 32-67

**마. 징계위원회**

- 군인사법 제51조의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성격 등 ..... 1-61

**바. 징계절차**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수속 진행 ..... 3-85
- 감사기관의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신청 기간 중 징계절차 ..... 30-80
-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요구를 한 상태에서 징계혐의자가 타 부대로 전속된 경우 징계절차 ..... 30-99

**사. 징계의 효력**

- 직무대리자가 한 징계의 효력 ..... 5-39
- 징계처분의 취소 ..... 2-42

- 징계처분 취소 변경 ..... 3-82
-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질의 ..... 5-27
- 징계처분의 정지 ..... 7-20
- 징계처분을 받은 군속에 대한 면직가능 여부 ..... 11-71
- 전소속부대장이 한 징계처분의 효력 ..... 5-27
- 징계조치기간의 경과와 징계의결의 효력 ..... 19-59
- 징계특별사면의 효과 및 현역복무부적합조사 ..... 26-71
- 징계유예 취소의 요건(군인징계령 제21조 제2항의 해석) ..... 29-29
-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의 직권취소 가부 ..... 29-31
- 혐의없음의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청구 가능 여부 ..... 29-32
- 2회의 경징계처분 중 두 번째 경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 가부 ..... 30-65

**아. 항 고**

- 징계항고 심사결과 결정에 따른 취소 내지 감경에 있어서의 소급  
적용여부 및 경감조치시의 집행방법 ..... 1-38
- 국군징계항고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 2-56
-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임명문제 ..... 3-56
-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3-87
- 징계항고 업무처리 절차 등 ..... 4-39, 10-50
- 중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여부 미결정자에게 전역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12-36
-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 취소결정만 있고 종국적 판단이 없는 경우의  
재징계 ..... 18-54
-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 30-55

**자. 잡 칙**

- 징계권자의 경감조치의 한계 등 ..... 3-63
- 징계처분취소와 현역복무 부적격자로서의 전역 ..... 15-47
- 징계위원회의 불문의결 가부 ..... 16-28
-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도 징계등 기록 말소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23-20

- 강등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 예비역으로서의 계급이 원상회복되는지 ..... 23-15
-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 26-59
- 특별사면 명단 누락자의 사면 가부 ..... 27-95
-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취소 권고의 효력 ..... 28-61
-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도 징계사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 29-30
- 군인징계령 제21조(징계유예) 해석 관련 ..... 31-47
- 재징계 의결요구 기간 ..... 31-91

## 5. 군무원 인사

### 가. 임용

- 전역되는 현역군인을 군속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면제 가능 여부 ..... 10-53
- 군속임용 전에 취득한 자격증 및 면허증을 가진 자를 군속 인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는지 여부 ..... 12-45
- 군속인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전직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의 의의 ..... 13-25
- 군복무당시의 중대장, 대대장의 경력을 군속인사법 시행령 소정의 행정직 군 경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 14-19
- 임용예정 군무원의 해당 직무분야 경력인정 ..... 21-76
- 현역복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의 군속임용 제한 여부 ..... 8-37
- 재임용된 군속을 퇴직전 다른 직군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승진시킬수 있는지 ..... 15-19
- 다른 직열로 변경한 경우의 승진경력 평정 ..... 15-23
- 직열을 무시한 군속 3급 이상의 보직관리 ..... 15-26
- "원직급으로 전직할 경우"의 의미 ..... 15-89
- 군속채용의 치고 연령 ..... 15-85
- 신규채용과 군속의 강입 ..... 15-37

○ 4급갑류 군속의 특별승진 .....	15-31
○ 군속인사법 제9조의 채용연령 및 정년규정 배제 여부 .....	1-77
○ 군속의 복무연한 서약서의 법적 효력 .....	1-79
○ 군속의 채용연령 .....	2-34
○ 정년 연장의 기준시점 .....	15-84
○ 전직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	16-42
○ 국군정신전력학교의 교수자격 .....	19-48
○ 일반학 담당교관의 개년 .....	19-66
○ 복무기간만료전 군인의 군무원 임용 .....	20-85
○ 군무원 임용결격사유발생시 처리 절차 .....	24-50
○ 별정 군무원의 상위상당계급 임용 .....	25-30
○ 군무원인사법상 별정군무원으로 조종군무원 임용가능 여부 .....	26-64
○ 군무원의 통합보직관리 .....	27-98
○ 군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27-101
○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재조정 .....	27-103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 ·	29-6
○ 군무원 승진예정자의 근속승진 심사대상 포함 여부 .....	29-12
○ 합동군사대학교 계약군무원의 채용 계약 승계 .....	30-32
○ 일반계약직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재채용시 선발대상 및 공고 .....	30-77
○ 군무원 전직시험 면제 여부 .....	31-32
○ 일반계약군무원 직위지정범위 확대 가능성 .....	31-110
○ 별정군무원의 상위 상당계급 재임용 가능성 .....	31-149
○ 기능군무원 추가합격 결정 .....	32-72

#### 나.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

○ 군속특별채용시험 제한문제 .....	4-52
○ 군속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임용자격 .....	15-55
○ 일반사면과 군무원 특별채용 시험자격 .....	16-41, 17-39
○ 1급군무원 특별채용시 환산특례 적용여부 .....	18-61
○ 박사학위 소지 군인의 군무원 채용 .....	20-87
○ 4급 군무원 특별채용시 소령 이상으로 전역한 자로도 가능한지 여부 .....	22-20

- 별정군무원의 특별채용 ..... 27-10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9-5
- 기능군무원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 시, 특별채용시험 면제  
가부 ..... 30-48
- 일반계약군무원(1급) 직위 지정 가능성 ..... 31-120
- 신원조회 및 보안적부 심의 결과에 따른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의 적법성 ..... 31-134

#### 다. 면 직

- 군속의 면직시기 및 해직된 군속의 계속근무 등 ..... 4-54
- 군속인사법 중 결격사유 ..... 5-38
- 서독에 파견된 간호군속의 현지 해임 가능 여부 등 ..... 14-26
- 군무원의 직권면직 ..... 17-43
- 임시군무원의 직권면직 ..... 17-45
- 해외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의 사직 ..... 17-46
- 군무원 임용시 작성한 의원면직서의 효력 ..... 19-68
- 약식명령이 청구된 군무원의 직위해제 ..... 21-58
- 군무이탈 중인 군무원의 직권면직 가능 여부 ..... 26-37
-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의 육아휴직과 의무복무기간 ..... 31-128

#### 라. 복 무

- 위탁교육중인 군속의 사표 제출 ..... 9-45
- 군속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한 면직 여부 ..... 10-33
- 교육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직급명칭 ..... 20-89
- 군무원에 대한 당직사령·당직사관의 임무부여 ..... 20-91
- 군무원 위탁교육시 의무복무기간 ..... 24-48
- 군무원의 병가시 허가권자 ..... 24-49
- 군무원의 당직편성 ..... 29-21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시행 관련 ..... 30-51

- 군무원 근무성적 평정자 ..... 30-90
- 예비군지휘관 전보관련 근속년수 ..... 31-17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무원의 범위 ..... 31-40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상 전보 및 인사교류 규정 해석 ..... 31-86
- 군무원 위병사관 근무편성 ..... 32-69
- 임기제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되는지 ..... 33-72

**마. 신분보장**

- 군속의 병가 기한문제 ..... 2-49
-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무원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 ..... 17-41
- 임시군무원의 법적 자위 ..... 17-48
-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는 때로부터 4년 5개월 경과후 강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9-47
- 군무원 승진평정 대상인 교육훈련 과정 ..... 20-93
- 군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서 직급소지기간 ..... 21-35
- 행정직 군무원의 경력평정 ..... 21-60
-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신분 ..... 30-54
- 승진공석 추가 승인 가능여부 ..... 31-71
-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국방부 지침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31-80
- 기존 훈령과 배치되는 군무원 동일부대 지침 발령의 가능성 ..... 31-99

**바. 징 계**

- 군속의 지각 및 조퇴자 ..... 2-33
- 군속징계에 대한 임용권자의 승인 ..... 6-41
- 징계처분의 불이익기간 ..... 15-51
- 군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위직"의 개념 등 ..... 16-26
-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 18-63
- 군인복무시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군무원징계 ..... 20-61
- 군무원의 정직기간 중 교육과건과 출장이 가능한지 여부 ..... 31-89
- 고위공무원도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31-116

- 전역을 이유로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이 있고 전역 후 한시임기제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에 해당하는지 ..... 33-97

## 6. 보 수

### 가. 보수 및 수당

- 진급으로 진급 전보다 보수가 적어진 자의 호봉승급 ..... 11-75
- 초임 계급이 중위 이상으로 임용된 장교의 진급시 호봉부여 ..... 13-36
- 진급시 호봉승급 ..... 12-71
-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되는 자의 호봉부여 및 호봉조정 후의 승급기간 계산 등 ..... 3-92
- 대위 8호봉이 진급한 경우 호봉부여 ..... 15-76
- 상사에서 준위로 진급한 자에 대한 호봉부여 ..... 7-37
- 강등되었다가 원계급으로 환원된 하사관에 대한 호봉부여 ..... 14-95
- 하사관 복무경력 있는 군법무관의 초임호봉 획정 ..... 21-83
- 예비역 지역중대장 상여금 지급 ..... 12-73
- 무죄선고받은 자의 미지급 상여금을 소급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13-98
- 전역일자 이후에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보수지급 ..... 2-60
- 사관학교 교관의 신분과 보수지급 ..... 1-92, 3-98, 4-67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미결중인 준사관 및 하사관 또는 복역중인 병에 대한 봉급 지불 ..... 1-87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보수지급 ..... 4-168
-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장교의 봉급 지불 ..... 8-63
- 전역 및 제적취소된 자의 봉급 지불 ..... 1-81
- 구속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받은 자의 봉급지불 ..... 1-83
- 무죄판결이 확정된 장교에 대한 휴직기간중의 봉급지불 ..... 5-49
- 전역 및 제적취소된 자의 봉급 지불 ..... 6-37
- 전역취소 판결과 전역기간중의 제수당 ..... 15-198
- 군인의 특수근무수당 및 군속의 특수업무 장려수당 지급시기 ..... 15-200
- 부양가족의 범위 ..... 15-201

○ 군수련전공의와 제수당 지급 .....	15-205
○ 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장기복무수당지급 .....	15-206
○ 사면된 징계처분에 의한 상여금 및 정근수당의 감액 .....	10-208
○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한 자에 대한 제수당 지급 .....	15-209
○ 여군장교의 가족수당 지급 .....	9-24
○ 군인 피복수당 지급 .....	3-96
○ 육군기술군속의 수당지급 .....	3-97
○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장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급 .....	7-40
○ 군법무관 수당 지급 .....	8-67
○ 법무병과로 전과한 군법무관이 군법무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2-14
○ 군법무관의 자격상실 및 수당지급 여부 .....	3-92
○ 공무원의 위원직 수당의 합법여부 .....	5-53
○ 출동 함정에 근무하는 병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	14-98
○ 함정근무수당 지급 .....	1-92
○ 휴직된 군속의 조정수당 지급 .....	11-77
○ 교관교재 연구수당 수급권자 .....	16-50
○ 구군인보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4의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법무관"의 의미 .....	16-51
○ 전문·기술분야 종사 경력자의 병과전환과 호봉재획정 .....	16-52
○ 경력을 합산받지 못한 자에 대한 호봉재획정의 시기 절차 .....	16-53
○ 관사입주 장병에 대한 주택수당 지급가부 .....	16-55
○ 군인 군무원의 제안제도와 특별승급 .....	16-56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범위 .....	16-58
○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시기 .....	16-59
○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소멸시효 기간 .....	17-55
○ 여자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범위 .....	17-57
○ 전사편찬위원회 위원에 대한 가족수당 등 지급여부 .....	17-59
○ 제적된 군인에 대한 보수지급 기한 .....	17-60
○ 입영교육중의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보수지급 .....	18-67

○ 직계존속과 주거가 다른차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	18-72
○ 가족이전비 지급제외 .....	18-73
○ 영국교육기관에 파견된 조종사와 재외근무수당 .....	19-79
○ 육군사관학교 5급 사서직 군무원에 대한 사서수당 .....	19-83
○ 군사법원 서기 및 군검찰 서기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	20-101
○ 비행휴관정된 조종사에 대한 항공수당 지급 .....	20-103
○ 사실상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18-74
○ 원계급복귀하여 전역한 장교의 퇴직급여산정 .....	20-106
○ 임시고용원의 퇴직금지급 여부 .....	19-73
○ 임시군무원 퇴직금 산정기준 .....	19-77
○ 여군병과 폐지로 전역하는 여군병과장과 명예전역수당 .....	19-75
○ 19년 6월 근속후 병과장으로 전역하는 자와 명예전역수당 .....	19-81
○ 명예전역수당 지급 위한 병과장의 근속기간 .....	20-105
○ 명예전역수당 지급 여부 .....	21-79
○ 군인에 대한 자문비 지급 .....	20-99
○ 주택수당에 관한 문제 .....	22-21
○ 공무원보수규정 제 30조의 2의 군인 근속가봉과 관련한 문제 .....	22-22
○ 현역 군인 등에 대한 감수비 지급여부 .....	22-23
○ 군무원의 직위해제 기간중의 보수 .....	22-24
○ 장교로 전역한 후 다시 군법무관이 된 자에게 군법무관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전역전 복무기간의 산입여부 .....	22-25
○ 재심무죄인 자가 복직된 경우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22-73
○ 명예전역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명예전역 수당 지급관련 질의 .....	23-30
○ 귀환 국군포로의 봉급관련 질의 .....	23-32
○ 임기제진급 장군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23-33
○ 현역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번역료 지급 가능여부 .....	23-34
○ 퇴직한 군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	23-36
○ 기술수당지급대상자 관련 질의 .....	23-38
○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이 군인보수법상 보수지급 대상인지 .....	23-41

-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명예진급만 한 상태에서 명예전역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 23-42
- 봉급인상률 차등적용 가능 여부 ..... 24-73
- 교관이 다른 부대로 진출한 경우 교관연구 조성비 지급 가능 여부 25-58
- 헌병수사관의 위장피복비 증액 가부 ..... 25-70
- 병 복무기간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의 차등 지급 가능 여부 ..... 26-85
- 군법무관수당 지급 요건인 “입관 후 3년”의 의미 ..... 27-119
- 특수경력직공무원 근무 중 파면된 자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7-122
- 학군무관후보생의 보수 ..... 27-126
- 명예전역자의 장애보상금 지급여부 ..... 28-120
- 준사관의 퇴직금 산정방법(부사관임용취소시) ..... 28-122
- 선고유예시 잔여퇴직금 지급 ..... 28-124
- 진료미종결 전역자의 공무상 요양비 ..... 28-133
- 해외 파병장병 수당 ..... 28-139
- 피복비 소급 지급 가부 ..... 29-38
- 군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심사 전 사망한 경우 수당지급 가부 ..... 29-40
- 군인군속급식규정상 현물지급의 의미 ..... 29-45
- 항공수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29-46
- 보수 분할지급 여부 ..... 29-50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 30-124
- 기소휴직 후 무죄 선고로 복직된 자의 봉급 차액 지급 여부 ..... 30-130
- 휴직(기소)중인 사관생도의 급여 지급 여부 ..... 30-138
-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국가비상사태’ 해석 ..... 32-24
- 합정근무수당 지급 ..... 32-118

**나. 보칙**

- 집체교육기간중 임금 지불 ..... 7-42
- 파면 등으로 제적된 하사 등에 대한 전역급여금 지급 ..... 2-58
- 장기복무 해임과 동시에 하사로 전역되는 자의 전역급여금 지급 ..... 2-60
- 생존이 확인된 실종자, 행방불명으로 제적된 자의 봉급 및 연금지급 6-35

- 포로가 된 군인의 대한 봉급지급 ..... 16-49
- 관할관 확인조치에 의한 형집행 면제의 경우 급여액 지급 ..... 9-30
- 군인의 호봉승급 기준일자 ..... 17-61
-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경력환산기준 ..... 17-64
- 임용전 경력의 복무기간환산 ..... 18-68
- 호봉획정시 잔여기간의 차기승급시 반영 ..... 18-70
- 민간인 이발사 근무기간의 기능군무원 호봉합산 ..... 20-95
- 법무장교(장기) 초임호봉 산정 방법 ..... 28-116
- 부사관 임용취소시 준사관 호봉산정 ..... 28-130
- 재임용에 따른 전 신분의 군 교육기간 경력인정 ..... 30-72

#### 다. 기 타

- 국내여비규정 제9조의 소관장관의 해석 ..... 1-86
- 국내여비규정상 의 이진료 및 가족 이진료의 지급 해당범위 ..... 3-95
- 근무연습 소집에 의한 동원훈련중인 자에 대한 급여금 지급 ..... 10-57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보수의 지급 ..... 10-60
- 퇴교자 변상금 ..... 12-75
- 사관생도 휴가비 지급 ..... 13-97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대상 ..... 14-97
- 파월 선급금 면세 적용 ..... 7-41
- 잡급직원의 퇴직금 청구권과 소멸시효 ..... 15-210
- 잡급직원 재직기간의 기산 근거 ..... 15-211
- 잡급직원의 처우 등 ..... 15-202
- 사관후보생 등의 교육훈련중 퇴학과 상여금 등 지급 ..... 16-47
- 육군복지근무지원단 근무원의 경력인정 여부 ..... 17-53
- 호봉의 소급승급 신청과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 21-112
- 순항훈련중인 사관생도 여비지급 급류 ..... 21-117
- 5.18사건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부터 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지 ..... 23-29
- 퇴직자가 복무중 사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지 ..... 23-35

- 병사를 위한 국가의 보험 가입 가능여부 ..... 23-103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환수와 소멸시효 ..... 26-80
- 군장학금 반납면제신청 기한의 법적성격 ..... 28-105
- 망자를 대리한 연금 소급 청구 가부 ..... 28-108
- 상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8-109
- 훈련중 보충역 공단부담금 부담 여부 ..... 28-112
- 한남대 위촉강사 강사료 수령 가부 ..... 29-47
- 개인회생절차 관련 전세자금 회수가부 ..... 29-48
- 군 발행 간행물에 투고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원고료 지급 가부 ... 30-127
- 해군사관학교 교수 산학협력단 연구비 수령 가능여부 ..... 32-77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심의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한 재심사·재산정  
요구 가부 ..... 32-97
-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여부  
..... 32-99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의미 ..... 32-103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법률  
관계 ..... 32-105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 ..... 32-114
-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호비 산정시점 ..... 32-126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 ..... 32-129

## 7. 병역

### 가. 총칙

- 6년이상의 자유형 선고와 병역의무 ..... 15-136
- 역종 변경 ..... 6-69
- 예비역 하사관을 제1국민역으로 역종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16-76
- 제적자의 역종 부여 ..... 6-71
-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자격 있는 자의 예비역 장교 편입 및 복무기간 ..... 16-79

○ 제대 후에 복무할 역종 .....	1-141
○ 국토건설원의 역종 관리 .....	7-96
○ 역종 구분 .....	10-39
○ 이중병적자 처리 .....	2-40
○ 학도 입영군사훈련필자에 대한 병적사항 등 .....	2-96
○ 이중병적자의 병적정리 .....	4-50, 6-74, 7-87, 14-61, 15-166
○ 사관학교 중퇴자의 병적관리 .....	6-62
○ 병적누락자의 처리방안 .....	6-68
○ 제적자의 병적관리 .....	7-100
○ 병적정정 .....	10-76
○ 역종정정 .....	10-38
○ 입영전 및 입영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된 예비역 군종장교후보생의 병적관리 .....	10-85
○ 해외이주 허가 취소와 보충역 편입처분의 효력 .....	15-150
○ 여자 현역복무지원자 지원 취소 .....	5-73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의 전역시 역종부여 .....	2-88, 6-79
○ 학도의용군으로 종군한 자의 예비역 편입 .....	6-63
○ 주재국 거주 영주권 소지자의 병역의무 .....	15-145
○ 외국시민권 취득과 병역의무 .....	2-90
○ 외국국적 취득과 병역의무 .....	10-81
○ 외국국적 취득자의 대한민국국적 상실시기 .....	16-75
○ 하사관이 장교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경우 병적처리 .....	1-140
○ 현역병 입영영장이 취소된 제1보충역의 복무연차 .....	7-85
○ 단기하사 복무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 .....	19-101
○ 육군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 .....	20-252
○ 전투경찰대설치법상 현역병으로 징집결정된 자의 범위 .....	20-253
○ 의무경찰에 대한 해·공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적용 .....	20-255
○ 국정회복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	21-249
○ 인턴과정 수료후 군전공의요원시험에 합격한 자의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	21-251

- 군의·치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전 신체검사 및 역종분류 ..... 22-37
- 공익근무요원을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활용할 수 없음 ..... 22-38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소년범)에게 병역의무 부과시 적용할 형기 23-43
- 임용취소 된 하사관의 보충역 편입 여부 등 ..... 23-47
- 미호적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여부 ..... 24-98
- 개정 병역법 제71조의 적용범위 ..... 25-74
- 사법시험합격자를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5-86
- 신학대학 영어교육과 학생이 군중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 25-88
-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 인정 기준 ..... 25-89
- 국외에서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병역법상의 병역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6-117
- 보충역에 해당하는 퇴교자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면제 가능 여부 ..... 29-35

## 나. 징병검사

- 징집 입영한 자의 제적과 징병검사 ..... 7-90
- 신체검사 체격등위 판정 ..... 11-103
- 현역복무지원과 종전의 징병처분의 효력 ..... 2-95
- 국방부 내규인 신체검사규칙의 성격 및 효력 ..... 16-77
- 개정된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의 적용시점 ..... 21-257
- 공중보건 의사에게 적용될 신체검사규칙 ..... 23-4
- 군병원정밀신검 의뢰시 군병원장의 신체등위판정권한 ..... 24-97
- 장병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재검 ..... 25-84
- 병역법 제17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 기한 내에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정밀신체검사까지 종료되어야 하는지 ..... 33-107

## 다. 현역입영

- 군대의 영의 개념 ..... 2-104
- 현역병의 사법연수원 입교 가능 여부 ..... 15-163
- 현역 복무기간 연장 요건으로서의 전시·사변의 개념 ..... 2-81

- 복무기간 기산시기 ..... 1-143
- 입·제대 일자의 군복무기간 산입 ..... 15-132
- 2중병적자의 복무기간 합산 ..... 2-112
- 방위병 복무기간의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 ..... 15-133
- 사관학교 2년 중퇴자의 현역 복무기간 계산 ..... 3-122
- 사관학교 후보생 교육기간의 복무기간 환산 여부 ..... 8-103
- 현역병 입영처분의 철회가능여부 ..... 17-69
-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었다가 현역으로 편입된 자의 병적상 입대일자 ..... 19-87
- 금오공고 퇴교자의 미회수 변상장학금의 회수책임 및 소멸시효 ..... 22-39
- 병역법시행령 제28조가 병역법 제1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22-40
- 병무비리로 인한 보충역처분 취소시 복무기간 ..... 24-100
- 보충역 입영대상자가 현역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 현역병 병역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82
- 입영신체검사 후 의무사관후보생의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27-109

## 라. 소 집

- 보충역과 균형법의 적용 ..... 6-87
- 보충역의 방위소집 활용 ..... 10-86
- 단순 노무제공을 위한 방위소집 ..... 15-64
- 방위병 파견에 관한 질의 ..... 13-60, 14-31, 16-86
- 방위병의 개인화기 ..... 15-144
- 방위병에 대한 신체검사와 소집해제 ..... 14-72
- 해외이주가 허가된 자의 방위소집해제 ..... 14-74
-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전가족 해외이주와 방위소집해제 ..... 16-90
- 방위병의 재영복무 ..... 15-161
- 부상방위병의 가료비 지급 ..... 16-87
- 근무연습 소집자에 대한 조발시행 여부 ..... 10-90
- 근무연습 소집의 근거법규 ..... 15-155
- 근무소집중 구속된 자의 근무소집 해제 ..... 1-135
- 근무소집 기피자의 재소집 ..... 3-119
- 근무소집 연기사유 ..... 5-75

- 근무 또는 연습소집중에 있는 자를 대간첩작전에 종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 ..... 5-90
- 외항선 선원의 근무 및 연습소집 면제 ..... 7-72
- 근무연습 소집과 휴직 등의 관계 ..... 15-152
- 전문분야 예비역 장교의 소집 ..... 11-49
- 전시 등에 있어서 법무장교 소집 ..... 7-83
- 특수직 위관 충원 ..... 5-87
- ROTC 훈련생의 보충소집 ..... 6-65
- 예비역 하사관의 전시 보충소집 ..... 15-134
- 전시 현역복무를 마친 병의 충원소집 ..... 8-102
- 전투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지 못한 귀휴병의 소집 ..... 10-82
- 중복된 신분의 정정방법 및 교육소집을 병역법에 의한 소집으로 볼 것인지 여부 ..... 13-24
- 방위소집 면제자에 대한 전시 방위소집 ..... 15-147
- 예비역 장교후보생 신분으로 군병과학교에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 15-62
- 근무연습 소집에 있어서 "입영기일"의 의미 ..... 16-81
- 교육소집 불참과 보충교육 ..... 16-82
- 긴급사태 발생시 동원령 선포 이전의 소집 및 동원 ..... 16-83
-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방위병의 구속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17-72
- 방위병의 취업가능 여부 ..... 17-75
- 방위소집중인 자의 특수전문요원 교육과정 편입 ..... 18-105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사유 ..... 17-82
- 흡 있는 입양과 보충역 편입처분의 효력 ..... 17-83
- 전시근무소집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처우기준 ..... 17-86
- 국방부 근무 방위병의 보호방위병 소집해제 ..... 21-253
- 면사무소에 파견근무중인 방위병에 대한 지휘·감독권 ..... 21-265
- 방위제도 폐지 후의 장기대기 방위병에 대한 방위소집 면제처분 ..... 21-276
- 보충역이 훈련소집 중 공무상 입원시 소집훈련기간에 포함 여부 ..... 29-34

**마. 병역의무의 종료**

- 35세 초과된 입영기피자의 징병의무 ..... 7-94
- 단기복무하사에서 중사로 특진된 자의 전역후 예비역 복무기간 ..... 8-95

- 병으로 입영하여 하사관으로 특진된 자의 예비역 복무기간 ..... 15-182
- 현역병의 구속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17-73
- 연령정년규정의 개정과 예비역 병역의무 종료시점 ..... 18-100
- 단기사관학교에서 퇴교된 자의 교육기간과 병의 복무기간 ..... 19-89
- 장교, 준사관, 하사관이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적에서  
제적되는지 여부 ..... 19-94
- 제한연령초과로 인한 의무사관후보생의 제적 ..... 20-243
- 장기근무이탈자의 군인 신분 보유 여부 ..... 22-41
- 전시특례상의 병역의무 종료시점 ..... 24-103
-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투경찰의 제2국민역 편입 가능 여부 ..... 24-104

#### 바. 병역의무부과의 특례

- 전투경찰대원의 신분 ..... 10-79
- 전투경찰대원 추천자의 기초군사훈련중의 신분 ..... 15-92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제3항 "징집이 결정된 자"의 의의 ..... 13-147
- 해양경찰대원의 의병 전역 ..... 15-158
- 석탄광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보충역 편입 ..... 11-101
- 군수업체 지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병역특례의 효과 ..... 13-61
- 특례보충역의 해외이주 ..... 15-154
- 방위병의 소집기피나 복무중 이탈이 복무기간 단축혜택에 미치는 영향 ..... 15-160
- G.P 근무병의 복무기간 단축의 절차 ..... 15-165
- 사관학교 중퇴자의 사관학교 재학기간의 성격 ..... 19-97
- 장남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분가한 경우의 병역면제 ..... 19-99
- 1년 이상 국내 체재한 국외 영주권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등 ..... 22-42
- 가족 이민과 공익 근무 요원 소집해제 ..... 32-45
-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처분변경시 적용 부령 ..... 25-78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 32-86

#### 사.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재학자 징집연기 ..... 6-75

- 휴학자의 복학과 징집연기 ..... 1-137
- 2인 이상 전사로 인한 징집연기 ..... 6-57
- 가사에 의한 징지연기 ..... 7-98
- 가사사정으로 인한 징집연기 및 복무단축 ..... 5-77, 9-83
- 부양능력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 ..... 6-67
- 병역미필자로서 자수 신고한 자의 징집연기 ..... 7-97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의 징병검사 연기 현역 입영 ..... 9-95, 8-98
- 예비역 무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장의 징·소집 연기 ..... 9-86
-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입영 연기조치의 위법 여부 ..... 2-111
- 병역법상 독자의 해석 ..... 2-113, 5-63, 5-68, 5-70, 5-86, 6-89, 7-93
- 부재선고와 독자여부 ..... 16-89
- 법의 부자와 현역 복무기간 단축 ..... 3-127
- 무죄판결과 복무기간 단축 혜택 제한 ..... 5-82
- 독자·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인한 현역기간 단축 ..... 7-70, 7-77, 7-78
-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예비역 하사관의 전역 ..... 15-137
- 전투경찰 순경의 복무기간 단축 ..... 12-107
- 방위소집해제 사유로서의 전가족 해외 이주 ..... 15-141
- 방위소집해제 사유로서의 생계유지 곤란 ..... 15-143
- 병역법상 전 가족의 정의 ..... 7-101, 11-99
- 과월사병의 의가사 전역 ..... 3-123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면제 ..... 12-120
- 군기술 위탁생 출신 하사관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면제 ..... 14-66
- 2대 이상 독자의 방위소집 면제 여부 ..... 6-59
- 특수전역 ..... 6-60, 6-64, 7-92, 8-99, 9-93
- 현역병의 특수전역시 역정 판정의 증거법 ..... 7-80
- 현역장교 병적 편입자의 가사사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15-148
- 방위병의 소집기피나 복무중 이탈이 복무기간 단축혜택에 미치는 영향 ..... 15-160
- G.P근무병의 복무기간 단축의 절차 ..... 15-165
- 사관학교중퇴자의 사관학교 재학기간의 성격 ..... 19-97
- 장남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분가한 경우의 병역 면제 ..... 19-99

○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 ..... 29-33

**아. 특 전**

○ 재영기간중 직장 보장 ..... 1-132

○ 입영기피후 자수한 자의 고용원 임명 ..... 2-84

○ 병역미필자의 해고 ..... 2-91

○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자의 장교 임용문제 ..... 3-118

○ 병역의무자의 공무원 임용 ..... 6-56

○ 1928년 출생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취직제한 등 ..... 2-89

○ 군기술위탁생의 임용과 휴직기간 ..... 15-156

○ 학적보유가 가능한 복무형태 ..... 15-157

○ 은행원 승진시험자격과 병역법 제76조(불리한 처우금지)와의 관계 .. 7-30

○ 병역기피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처벌 ..... 9-88

○ 병역기피로 인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임용제한 ..... 11-108

○ 병역법상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처분 금지 ..... 13-64

○ 군복무후 복학보장 ..... 18-109

○ 초등학교 교원으로서 의무종사와 권익보장 ..... 18-110

○ 교사경력산정시 병 및 하사의 복무기간 합산 ..... 20-60

**자. 병무 행정**

○ 병역미필자 해외출국시 신체검사 기준 ..... 7-84

○ 행방불명자 처리 ..... 1-133, 10-88, 12-126

○ 군번부여 전 사망자의 처리 ..... 2-85

○ 병무행정 수행상 필요한 경찰서장의 협조의무 ..... 3-125

○ 병적확인서 발급 ..... 6-66

○ 병역의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 6-83

○ 병역기피사실 확인 ..... 7-66

○ 병무심사위원회 성격 ..... 7-88

○ 특수현역면제자의 증명서 발급 ..... 8-96

○ 무관후보생의 해외여행 ..... 13-59

○ 병역확인 ..... 2-86

- 지정의료시설 운영 ..... 5-81
- 징병처분변경원 처리 ..... 7-91
- 장교에 대한 6년 이상 형 선고시 병적 ..... 18-79
- 수개선고형의 형기합계가 6년 이상인 경우의 병적 ..... 18-81
- 집행유예 선고받은 현역병의 보충역 편입 ..... 20-237
- 국외여행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17-90
- 병역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의 효력 ..... 20-248
- 예·체능분야의 특기자의 국외여행 허가 ..... 19-96
- 국외이주로 보충역 편입되었다가 복무중인 자에 대한 보충역 재편입 ..... 20-245
- 국외이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 및 재취소 ..... 21-262
- 출국, 입국행위를 되풀이한 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 20-246
- 국외여행중에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보증인  
 (모에 대한 친생자 관계에 대하여 소송중)의 대체가능 여부 ..... 22-43
- 병역법시행령상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의 의미 ..... 22-44
-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해 개별입영 도중 사망한 사람의 신분 ..... 23-46
- 군중장교 임용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 25-76
- 병역법 부칙 제5항(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 26-118
- 보충역 교육소집기간 조정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27-111
- 무관후보생의 전역처분 ..... 28-98
- 공군사관생도 심신장애전역 판단 기준 ..... 28-101
- 신체검사시(-에이즈검사-) 동의 여부 ..... 28-102
- 병무청의 과오로 현역병 입대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 30-111

**차. 벌칙**

- 대리로 입대한 자의 신분 및 처벌 ..... 1-146, 7-65, 9-92
- 병역법상의 과태료 ..... 1-194
- 국외여행 병역의무자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87
- 고시합격자의 징·소집 불응에 대한 고발조치 ..... 2-109
- 입영기피죄 성립여부 ..... 4-70
- 병역기피자 공소시효 ..... 5-84
- 수호의 징병검사 불응과 죄수 ..... 5-91

- 병역법위반죄(징병검사기피 및 입영기피)의 성립여부 ..... 6-72
- 미귀국 병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 11-113
- 병역법상의 과태료 결손처분 ..... 14-75
-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고발 ..... 6-76
- 재복무지원자의 입영불응 ..... 5-72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중국적자의 미귀국시 처벌 ..... 18-114
-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후 재복무통지에 불응한 자의 처벌 ..... 21-279
-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지정기일’의 의미 ..... 22-45
-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의 ..... 24-106
- 귀국보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가능한지 여부 ..... 25-73
- 모집에 의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권 행사 여부 ..... 25-80

## 8. 예비군

### 가. 임무

- 예비군 지원자의 복무의무 ..... 6-83, 17-93
- 직장예비군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김포공항 경비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9-110
-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 업무 수행 가능성 ..... 31-122

### 나. 조직과 편성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의 연령계산법 ..... 8-93
- 직장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의 범위 ..... 9-91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의 범위 ..... 15-177
- 수형인에 대한 향토예비군 편성과 대원신고의무 ..... 15-189
- 수임군부대장의 예비군지휘관 임명행위의 효력 ..... 16-94
- 장교로 임용된 예비역 하사관의 직책변동과 신분 ..... 16-96
- 예비군 지휘관 임명행위의 효력 ..... 18-119
- 직장예비군부대장의 보직발령순위 ..... 20-260

-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우 해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105
- 직장예비군 부여단장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퇴직규정 적용 ..... 20-263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정년과 직원정년의 관계 ..... 20-265
- 향토예비군설치법상 거주지의 의미 ..... 20-257
- 서울시 지하철 직장예비군 부대편성 ..... 20-259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9-7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 ..... 29-8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정년 ..... 29-10
- 직장예비군의 통합 편성 ..... 29-18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동일계열 전보 ..... 29-20
- 통합직장예비군부대 편성 및 본부직원의 소속 ..... 31-36
- 퇴역여군의 역종변경 가능성 ..... 31-161
- 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대원 해당성 ..... 32-53
- 전시 전방군단 향방예비군 운용 ..... 32-83

**다. 동원**

- 향토예비군 동원절차 ..... 5-64
- 향토예비군 동원 ..... 6-85
- 예비군동원 대상자 ..... 6-88
- 관할 육군사단장의 명의를 아닌 예하단위 부대장이 발행한 교육훈련소집통지서의 효력 ..... 9-78
- 향토예비군 대원의 동원유예사유 발생시 그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9-80
- 군부대의 군속에게 예비군동원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할수 있는지 여부 ..... 9-82
-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자의 범위 ..... 9-87
- 국외 영주권을 얻은 자(병역면제처분자)의 예비군 편성 ..... 9-87
-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이(경찰서 관할하의) 동원훈련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12-142

- 동원훈련 보류대상자의 범위 ..... 15-179, 15-180
- 형집행정지와 예비군대원의 동원 및 훈련연기 사유 ..... 15-190
-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절차 ..... 15-192
- 향토예비군 동원 요건 ..... 16-93
- 병력동원훈련 소집불참자에 대한 훈련재소집 ..... 20-256
-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보류 ..... 24-108
- 작전동원업무의 이관 ..... 27-113
- 동원보류 대상자 ..... 32-92

#### 라. 훈련

- 직장에 고용된 향토예비군 대원의 교육훈련 시간과 고용기관의 근무시간 ..... 9-73
-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여부 ..... 9-139
- 형집행정지중인 자의 예비군교육훈련부과 ..... 17-94
- 국민투표기간중의 향토예비군훈련 ..... 17-96, 18-122
- 예비군훈련면제기간중의 회사출근의무 ..... 17-97
- 직장예비군에 대한 비근무시간의 교육훈련 ..... 17-98
- 국적회복자에 대한 국적상실전 훈련의무부과 ..... 18-121
- 소집면제된 보충역에 대한 훈련과 병역법상의 교육소집 ..... 19-112
- 사법연수생이 방침보류대상인지 여부 ..... 31-77

#### 마. 소집통지서

- 예비군 대원의 교육소집을 위한 소집통지서 발부권자 ..... 8-100
- 예비군훈련 교육소집통지서 발급의 위임 ..... 16-95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제3항의 ‘거주지 이동’의 의미 ..... 19-108
-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앱)을 통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발송 ..... 31-108

#### 바. 무장

- 어선단 예비군의 무장 ..... 7-67
- 예비군이 무기를 휴대하여 국가중요산업시설을 경비할 수 있는지 여부 ..... 12-137

**사. 원호 및 가료**

- 임무수행중인 향토예비군 대원에 대한 의료기관 지정 ..... 11-109
- 동원 또는 훈련중이 아닌 예비군의 사고에 대한 보상 ..... 16-100
- 사망한 대리훈련자가 원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16-64
- 예비군대원이 스스로 무단함 가료비에 대한 보상여부 ..... 17-102
- 향토예비군 대원에 대한 가료비의 부담 ..... 17-105
- 향토예비군이 임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경우의 비용부담 ..... 19-107
- 예비군중대장이 교육중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7-107
- 전투경찰 순경으로 예비역에 편입된 자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원자격 유무 ..... 17-178
-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 30-117
- 예비군훈련 중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금의 각 지급기관 ..... 31-189

**아. 직장보장**

- 비번시간에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당일 근무를 계속시키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9-81, 12-139
- 고용주의 동원훈련소집중에 있는 향토예비군 대원에 대한 일당 지급 ..... 10-95
- 동원 또는 훈련의 경우 임금 및 직장 보장 ..... 13-87
- 일용인부도 피고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15-184
- 예비군훈련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불지급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여부 ..... 16-99
- 직장예비군대원의 입원가료기간중 임금지급여부 ..... 17-100
- 예비군훈련 중 부상 후 자의로 민간병원 진료받은 경우  
휴업보상금 지급 가부 ..... 31-167
- 「예비군법」 제10조 직장보장 ..... 32-90

**자. 실비변상**

- 집체교육중인 자의 임금지불 여부 ..... 6-55
- 일일노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 임금지급여하 ..... 13-88
- 비근무시간중의 예비군교육훈련과 임금지급 ..... 18-123

**차. 병역법과의 관계**

- 방위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한 향토예비군 훈련실시 ..... 9-71, 10-96

**카. 권한의 위임**

- 예비군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 13-91
- 무기, 탄약 등 관리유지권 위임 가능 여부 ..... 14-89

**타. 벌칙**

- 향토예비군 훈련 불응자에 대한 처벌 ..... 9-85, 11-117
- 향토예비군의 거주지 이동 불신고에 대한 처벌 ..... 13-89
- 교육시 예비군대원의 복장위반과 형사처벌 ..... 16-97
- 직장예비군대원이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가능 여부 ..... 17-108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거절 행위의 처벌 근거 ..... 17-109
- 훈련을 받지 아니한 향토예비군대원의 처벌 ..... 18-124
- 동원훈련중 군부대를 이탈한 예비군에 대한 처벌 ..... 21-274
-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훈련통지서 전달의 효력 ..... 24-112

**파. 기타**

- 전사한 향토예비군의 고진급 및 제적 ..... 6-81
- 예비군 대원의 교육소집을 위한 소집통지서 발부권자 ..... 8-100
- 향토예비군 중대자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입후보시 사퇴여부 9-140
- 향토예비군 중대장의 퇴직금 청구 ..... 15-181
-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성질 ..... 15-186
- 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협의회와의 관계 ..... 24-111
- 향방동원된 예비군을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25-85
-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 지원 관련 감사의 주체 ..... 31-57
- 직장예비군대대장의 복무종료(근속기간, 정년) 관련 ..... 31-142
- 예비역 간부 진급에 있어 퇴역 연령 기준일 ..... 31-159
- 전시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연장 ..... 32-31
- 직장에 설치된 예비군부대의 참모는 예비군법 제12조에 따른 정치운동의 대상인지 ..... 33-88

## 9. 학생군사교육

- 학적보유자의 인사처리 ..... 10-76
- 학생군사교육 이수자 재영기간 단축 ..... 10-77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임관되는 예비역 장교의 임용시기 연장 ..... 10-78
- 학생군사교육과 방위병 및 전투경찰대원 복무단축 ..... 15-131
- 전투해경요원의 귀휴기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9조 제3항의 재영기간단축적용 여부 ..... 12-112
- 교육법시행령 제150조 제3항의 소급적용 ..... 12-114
-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2부에 재학중인 학생의 예비역 장교후보생 지원 및 선발 ..... 12-117
- 일반군사교육 대상자 중 심신장애자의 처리 ..... 13-29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동 시행규칙 개정(학적변동학생처리) 이후 문제점 ..... 12-128
- 일반군사교육 학점 취득 ..... 12-131, 13-111
- 일반군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제출처 ..... 13-112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9조 복무단축 기간 ..... 13-113
- 학생군사교육의 재수강 ..... 13-114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 소정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의 의의 ..... 14-113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보충소집 연령 ..... 14-115
- 군의료시설이 학생군사교육령의 시행규칙 소정의 의료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 14-115
- 예비역 무관후보생이 학생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현역 장교로 임용될 경우 복무기간의 단축대상이 되는지 여부 ..... 14-118
- 사면으로 복학된 자의 일반군사교육 이수자로서의 복무기간 단축혜택 ..... 15-218
- 군사원호대상자의 범위 ..... 15-220
- 군사교육 이탈자의 범위 ..... 15-222
- 정학처분과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병적관계 ..... 15-223
- 학군무관후보생 교육용 무기의 관리·수송책임자 ..... 20-145
- 여학생 ROTC 장교 선발시 의무복무기간 ..... 25-75
- 군장학생 선발취소 ..... 25-129

- 여자 학군후보생이 장교로 의무복무하는 기간 동안 교원으로 임용을 유예하거나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30-89
- 공군장학생 출신 조종장교의 장학금 반납 여부 ..... 30-114
- 군장학생과 군사교육 ..... 31-25
-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32-120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인지 여부 .. 33-31

## 10. 연금

### 가. 총칙

- 전몰군경의 정의 ..... 1-115
-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범위 등 ..... 1-125
- 순직해당 여부 ..... 2-65
- 군인연금법상 공무원의 개념 ..... 8-73, 9-57, 3-104
- 기여금 반환의 이자계산 ..... 6-49
- 향토예비군의 지역중대장, 임시고용원의 군인연금 수급권 ..... 8-75
- 애국청년단원의 임무수행중 사망도 전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8-89
-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재정의 성질 ..... 15-124
- 공무원재직기간의 군복무기간 통산여부 ..... 17-113
-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군복무기간 ..... 17-114
- 하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18-129
- 미군부대 고용원 근무경력과 공무원 경력 ..... 19-46
- 전공사상처리기준 ..... 17-120
- 장관급 장교에 대한 전·공상심사위원회 구성 ..... 20-107
- 파면되어 제적된 자의 공상해당 여부 ..... 18-134
- 불명예 전역자의 전공상 해당여부 ..... 18-136
- 전상해당자의 전역후 사망시 전몰해당여부 ..... 18-138
- 군인연금법의 적용시기 ..... 19-117
- 양 부모도 군인연금법상 직계존속인지 여부 ..... 19-121
- 사우디주재 무관과 전투종사기간 ..... 19-122

- 추서진급자의 보수월액결정 ..... 20-125
- 군인연금법의 개정과 휴직 또는 정직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21-91
- 군인연금법상 유족인 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폐질상태의 기준시점 · 21-127
- PKO 파견요원의 근무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기간 ..... 21-135
- 하사관의 준사관후보생 교육기간중 기여금을 징수하였는바, 그 기간은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지 ..... 22-27
- 퇴역연금 지급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4년이  
경과된자의 상이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 23-40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 24-62
- 국정상실자의 특례급여청구권에 관한 질의 ..... 24-66
- 소급기여금 사후징수에 관한 질의 ..... 24-71
- 임시계급진급자의 퇴직급여 산정기준 ..... 24-77
- 군인연금법상 유족승계 가능 여부 ..... 25-60
-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계산 ..... 25-61
-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의  
적용대상자 ..... 26-87
- 국가패소에 따른 재처분시 소멸시효 주장 가부 ..... 31-169

## 나. 급여

- 연금소급지급 ..... 11-83
- 연금수급권의 압류 ..... 1-102, 3-106
- 군인연금법상 구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의 시효 ..... 1-99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의 공무상 질병, 부상 및 사망 ..... 1-104
- 연금법 중 재정업무규정 ..... 2-74
- 유족이 없는 군인사망급여금의 사용 ..... 9-38
- 군인연금 환불에 있어서의 이자가산 여부 ..... 13-52
- 강등된 자가 다시 진급된 경우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계산 ..... 1-98
- 상사로부터 준위로 진급과 동시에 전역된 자의 연금지급 ..... 1-100
- 군인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 ..... 10-67, 11-94
- 무죄선고와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 계산 ..... 15-110
- 무관후보생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 산입 가능 여부 ..... 13-47, 5-59

- 연금의 지급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의 처리 ..... 18-130
- 6·25 당시 예비역 사관으로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 산정 ..... 21-123
- 공상관련 비보험급여부분 지급방안 ..... 24-64
- 군인 연금 급여종류 변경 신청 ..... 31-192

#### 다. 퇴역연금

-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 2-74
- 재심판결에 의하여 무죄확정된 자의 퇴직연금수령권 여하 ..... 13-51
- 30년 이상 복무자의 퇴역연금 지급률 ..... 15-122
- 연금지급정지기간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급받은 퇴역연금을 지정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119
-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 20-118
- 실종선고취소된 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여부 ..... 22-28
- 퇴역연금의 재정시 처분청의 잘못으로 복무기간을 일부 누락시킨 경우 직권정정할 수 없음 ..... 22-29
- 군인연금수령자의 유죄확정시 기지급연금의 환수가부 ..... 22-30
- 퇴역연금 소급지급시 이자가산여부 ..... 22-31
- 명예전역수당 산정시 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63
- 퇴직 후 소득 발생자의 연금정산 ..... 28-135

#### 라. 퇴직일시금

- 월의 중간에 진급과 동시 전역된 경우 퇴직일시금 지급 ..... 1-113
- 퇴직일시금 지급 해당여부 등 ..... 2-61
-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환경고용원의 퇴직금 산정 ..... 21-98
- 명예전역수당 지급시 현역정년의 개념 ..... 24-68
- 원계급복귀 전역자의 퇴직일시금에 관한 질의 ..... 24-75
- 진급일자에 전역한 자의 최종보수월액 결정 ..... 29-42

#### 마. 상이연금

- 전상자가 아닌 공상자의 상이군인연금 해당 여부 ..... 1-122

- 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및 부활 ..... 17-115
- 퇴직일시금 지급받은 자에 대한 상이연금지급 ..... 18-132
- 하사관후보생 교육중 상이를 입고 임용된 자가  
    상이연금수급권자가 되는지 여부 ..... 22-32
- 군인연금법상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의 의미 ..... 24-57
- 상이연금지급의 판단 기준시점 ..... 24-58
- 상이연금수급권이 소멸된자가 폐질 정도가 악화된 경우  
    상이등급개정신청을 하여 다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5-49
- 상이등급 개정 신청시 반드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5-66
- 만기전역자의 상이연금청구 ..... 27-128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 ..... 30-120
-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한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 31-184

**바. 유족급여**

- 유족연금의 상계가능성 ..... 13-48
- 순직 후 지급받을 연금·상여금·조의금 등에 대한 모와 처의 상속비율 ..... 12-84
- 유족 우선순위 ..... 12-103
- 친생모가 군인연금법상 유족이 되는지 여부 ..... 13-50
- 호적상의 처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간의 유족연금 수급권 경합 ..... 8-80, 13-46
- 자를 출산한 전사자 약혼녀의 사실상의 혼인관계 ..... 9-58
- 유족연금 지급 ..... 2-64
- 군인연금법상의 연금기간 기산일 및 급여제한규정 적용 ..... 2-67
- 중사로 추서된 순직한 단기하사의 유족연금 지급 ..... 9-39
- ROTC 피교육중 순직한 자를 장교로 고진급시킨 경우 유족연금지급  
    가능 여부 ..... 13-55
- 유족일시금 지급 ..... 7-57
- 사망원인 정정의 경우 유족연금 지급 여부 ..... 17-116
- 순직자의 모가 친가로 복적한 경우의 유족연금 지급 여부 ..... 17-118
- 입양군인의 생조모 사망과 사망조위금의 지급 ..... 19-123
- 입양된 군인의 생부사망시 사망조위금 지급 ..... 20-120

- 입양된 군인의 친생모가 군인연금법상 유족인지 여부 ..... 21-108
- 사망군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액수령한 보상금의 환수 ..... 20-121
- 제적된 군인의 가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 20-123
- 친가복직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20-127
- 유족연금수령권자가 유족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1-138
- 군인과 그 배우자 등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의 사망조위금 지급 ..... 21-132
- 민법개정과 계모의 유족연금청구권 ..... 22-33
- 유족연금청구권의 시효 ..... 24-60
- 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41
- 국적상실자의 유족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 25-68
- 군인연금법상의 유족 ..... 26-90
- 대법원판결과 상이한 유족연금지급결정의 취소여부 ..... 26-106
- 계모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 29-43

#### 사. 재해보상금

- 군인재해보상금 지급 대상 ..... 15-125
- 교육 및 방위소집자에 대한 재해보상 가능 여부 ..... 15-120
- 군인재해보상금 지급요건 해당여부 ..... 3-110
- 군인재해보상규정 제6조 제2항의 해석 ..... 13-117
- 의병전역절차 진행중 정년전역하는 경우의 장애보상금 지급여부 ... 17-119
- 장기제공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 20-113
- 병역동원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의  
지급사무는 국가보훈처에 있음 ..... 22-34
- 명예전역 후 장애보상금 지급청구 ..... 27-131
- 의병전역자 정상전역시 장애보상금 지급 여부 ..... 29-41
- 재심의로 공상판정 받은 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 31-171
- 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의 요건에 전환복무를 위하여 군 훈련기관  
에 입소하여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되어 전환  
된자가 포함되는 지 ..... 33-111

**아. 급여의 제한**

- 전역 후 공무원으로 취업하였다가 퇴직한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10-66
- 연금수급권자가 공무원으로 취업된 경우 동연금 지급 ..... 1-107
- 이사 대우 이상의 촉탁 또는 고문으로 임명된 경우 연금 지급 정지분 ..... 15-107
- 잡급직원 채용과 퇴직연금 수급권과의 관계 ..... 15-119
- 전사편찬위원이나 촉탁이 된 경우의 연금지급 제한 여부 ..... 15-99
- 군인연금 지급제한 대상기관 ..... 15-101, 15-111
- 퇴직한 군인이 다시 군인 또는 공무원이 되었을 때의 연금처리 ..... 1-119
- 군인퇴역연금의 지급정지(향토예비군 중대장 임용) ..... 6-50
-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정지된 자의 연금 지급 ..... 1-112
-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 등 ..... 1-116
- 사상피의자로서 기소중 사망한 자의 군인사망급여금법의 적용 ..... 1-121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연금지급 ..... 2-67
- 제적자의 연금 수급(선고유예판결) ..... 7-56
- 군복무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급여제한 ..... 21-115
- 복무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만료 전에  
출감한 자의 연금지급 ..... 9-60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어 복무한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 10-63
- 사병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하사로서 계속 근무하는 자에 대한 연금지급 ..... 10-65
- 연금지급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 ..... 15-118
- 형사사건으로 제적된 장교의 연금지급 ..... 11-85
- 연금지급 및 정지 ..... 11-87, 12-97
- 군인연금지급 제한기관 ..... 14-45
- 전쟁기념사업회의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해당 여부 .. 24-82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용승계된 자가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인지 여부 ..... 24-84
- 연금지급정지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조치 ..... 25-65
- 군인연금법 제19조의3 ..... 26-78
- 연금제한시기의 기준이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 ..... 26-92

- 장애보상금 지연청구 시 지급가부 ..... 27-133
- 전역 후 퇴직급여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급여지급 여부 ..... 30-136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판단기준 ..... 31-194
-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퇴직연금 제한시점 ..... 33-128

#### 자. 기금의 조성

- 군인연금기금으로 매입한 재산의 처분 ..... 14-55
- 공무원 연금법상의 기여금 납부 등 ..... 1-118

#### 차. 보칙

- 퇴역연금지급에 있어서의 타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1-95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 26-82

#### 카. 기타

- 퇴역연금수급자가 인사소청으로 전역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되었던 급여의 회수 ..... 1-103
-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재정 ..... 1-109
- 퇴직자에 대한 소급 연금재정변경처분의 가부 ..... 21-129
- 퇴역연금수급권자 사망했을 시 이미 발생된 수급권의 승계 ..... 1-110
- 장기입원사병에 대한 전역특별급여금 지급 ..... 1-114
- 학도의용군과 연금법 적용 ..... 1-123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한 행위의 한계 ..... 1-124
- 중사 이상으로서 2년 미만에 전역한 자 등에 대한 연금 지급 ..... 2-72
- 군인연금기금의 예탁 ..... 15-126
- 제적후 복직된 자의 연금지급 ..... 15-69
- 제적된 군인의 공무원 재임용시 반환하여야 할 퇴직급여 ..... 21-93
- 복무연수를 채우지 못한 단기하사의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16-63
- 명예퇴직수당 압류 가능성 ..... 24-70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재직기간 합산 ..... 24-79
- 군인연금법상 구상권의 소멸시효 ..... 25-47

- 명예전역전 사망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지급여부 ..... 25-51
- 전투근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정 ..... 26-75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관련 ..... 27-136
- 상이연금청구에 대한 잘못된 각하 ..... 27-139
-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한 학자금 대부분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대부금을 회수 가부 ..... 30-140
-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 포함 여부 ..... 31-204
- 대출 협약서와 급여 수급계좌 선택권 ..... 32-124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공무원 보수규정 등 적용가부 ..... 33-120
- 국방부로부터 파견 명령을 받은 현역 연구위원이 연구촉진장려금을 지급 받는 것이 군인보수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 ..... 33-120

## 11. 보훈

### 가. 총칙

- 민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군사원호보상 및 군인재해보상과의 관계 ..... 15-104
-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시행에 있어서 국방부장관과 보훈처장간에 생기는 책임한계 및 감독권행사 ..... 3-24
-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사실확인서의 효력 ..... 20-109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 25-55
- 서해교전 중 행방불명된 자의 전사일자 결정 ..... 25-59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보상금 수령권자 ..... 29-36
-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결정 ..... 29-37
- 사망한 국군포로의 상속인 ..... 29-92
-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재결에 따른 조치 ..... 31-165

### 나. 대상 및 사유

-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된 자”의 의미 ..... 15-95
- ROTC 대학생 야영훈련중 부상자 대우 ..... 5-57

- 만기전역자가 군복무 당시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재발한 경우의  
군사원호보상 ..... 7-46, 9-62
- 군인사법상의 전공상(41조) ..... 7-47, 2-94
- 공상의 개념 및 공사상의 구분권자 ..... 15-102
- 동원된 예비군의 가료 ..... 7-49
- 공상범위 ..... 8-22
- 헌병의 구타로 사망한 피의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 8-77
- 입영 전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전공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8-41
- 파월재해보상금 수급권 ..... 8-78
- 현역병 징집시 입영부대 도착전 집결지에서 사격중 사망한 자에  
대한 군사원호보상법 적용 ..... 8-85
- 군사원호보상법상 공무상 질병의 발병원인 ..... 9-55
- 향토예비군 중대장이 귀가 후 신경성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원호대상자 해당 여부 ..... 9-67
-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지급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원인 ..... 9-66
- 보충역으로서 군부대에서 방위소집교육중 사망한 자의 원호 ..... 10-68
- 연습훈련중 부상한 향토예비군이 응급치료후 귀가했으나  
이후 재발한 경우 치료혜택의 가능 여부 ..... 10-97
- 예비역 무관후보생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및 현역병적 편입 ..... 15-97
- 방위소집된 자가 전상 등 사유로 특수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군인재해보상금 지급 ..... 11-91
- 근무연습중(예비역) 이병, 질병, 사망, 재해의 경우  
군인연금법이나 재해보상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 12-81
- 장기적인 질병이 공무수행중 발생하였는바 여부의 판단기준 ..... 13-114, 14-50
- 전공상으로 인하여 의병 전역되어야 할 자가 행정착오 등을 이유로  
만기 제대되었을 때 상이군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4-69
- 대오를 이탈한 향토예비군대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원호가능 여부 ..... 14-91
- 국토건설단 건설원이 상이를 입은 경우 원호가능 여부 ..... 15-115
- 재학생의 입영중 상이에 대한 보상 ..... 16-65

- 공상해당자의 사망시 순직 해당 여부 ..... 18-140
- 공무중 발생한 질환으로 사망시 순직해당 여부 ..... 18-141
- 공무이탈상태에서 입은 상해의 공상해당 여부 ..... 18-142
- 군번 없는 참전용사에 대한 중군기장 수여 ..... 20-128
- 서해 훼리호 사고로 사망한 군인 및 군무원의 순직처리 ..... 21-87
- 동원훈련중 조기 귀가하다가 사망한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 21-89
- 파면·수형 등의 사유로 전역한 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 21-141
- 6·25전쟁중 징용되어 사망한 철도종사원의 전사자 해당 여부 ..... 24-92
- 병 사망위로금 지급 가부 ..... 29-39
- 10·27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 29-91

**다. 급여**

- 파월전사자의 사망급여금 지급 ..... 6-47, 7-52
- 사망급여금 지급 순위 ..... 7-59
- 사관생도 사망급여금 지급기준 ..... 8-83
- 군인사망급여금 지급대상자 ..... 8-87, 10-71, 31-174
- 주월한국군 재해보상금 차액지급 ..... 10-70
- 장교가 군법회의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원호혜택 여부 ..... 12-90
- 재해보상금지급대상 예정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의 보상금의 지급 ..... 14-48
- 전역 전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 있는 자의 보상방법 여하 ..... 14-52
-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자의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 31-182

**라. 기타**

- 만기전역자로서 입원중인 원호대상자의 처리 ..... 15-113
- 귀순하여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상의 원호대상자 선정 여부 ..... 11-89

○ 독립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제4조의 2와 동법 부칙 제2조와의 관계 .....	12-88
○ 월남귀순자가 5년 이내 원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2-99
○ 방위소집 필한 자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13-54
○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상의 제대군인 .....	15-109
○ 군무이탈자와 군사원호 혜택 및 병적처리 .....	15-112
○ 상이기장 수여사실에 대한 확인서 발급 .....	16-146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상 귀순용사의 범위 .....	16-147
○ 현역용 의약품을 월남귀순용사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6-153
○ 예비역에 대한 군병원 진료 .....	18-235
○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 대한 조세감면 .....	20-130
○ 순직군인의 배우자를 무시험에 의해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2-3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	23-39
○ 상근예비역에 대한 진료 제공 범위 .....	24-40
○ 군인보험 보험료중 국고보조금의 성격 및 용도 .....	24-86
○ 군부대의 민간에 대한 의료 지원시 법적 문제 .....	25-43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 가료비를 교육소집훈련을 실시한 군부대장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45
○ 행정심판 재결내용 및 효과 .....	26-110
○ 위패봉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28-115
○ 한국전쟁 중 미군 측에 귀순하였다가 반공포로로 석방된 자의 참전유공자예우법 적용 여부 .....	31-176
○ 징병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를 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	31-197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유족의 판단기준 및 시점 .....	33-115
○ 부대파견 민간검사의 군 병원 진료가능여부 등 .....	33-123
○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33-131
○ 전역자에 대한 퇴거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	33-137

## 12. 국가배상

### 가. 배상책임

-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이 기지공사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1-198
- 국가기관 상호간의 손해배상문제에 있어서 국가배상법의 적용 타당성 여부 ..... 3-29
-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액 ..... 3-38
- 배상책임 한계 ..... 4-94, 4-113, 5-147, 5-152
- 배상금 지급 결정 ..... 4-98
- 국가배상책임 유무 ..... 4-99, 4-103, 4-110, 5-120, 5-124, 5-141, 5-150
- 배상문제 ..... 5-119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중에 향토예비군중대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15-227
- 운동선수 재해 ..... 5-126
-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 ..... 5-127
- 국가배상책임 유무 및 과실정도 ..... 6-128
- 공무원의 직무 집행 ..... 6-130
- 외국군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7-118
- 제3자(피해자)를 대신하여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8-160
- 국가배상법 적용 대상 ..... 10-159
- 정책지정 광산으로 국가안보상 개방중지를 조치한 경우 등에 있어서 광산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가부 ..... 12-169
- 소집중인 방위병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 신청 가능 여부 ..... 12-175
- 군병원에서 수술한 자가 민간병원에서 동일병인에 대하여 재수술을 받은 경우 청구권의 전부 ..... 14-43
- 민간인이 군용기 탑승시 손해배상책임 ..... 19-205
- 군정비공장의 정비인건비와 손해배상 ..... 19-207
- 열차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 20-114
- 국방부 일반직에 대한 통근버스지원과 사고처리 ..... 20-116

○ 국가배상금의 분리 또는 사전지급 가능 여부 .....	24-189
---------------------------------	--------

**나. 배상기준**

○ 월급여액 없을 시 배상액 산정 .....	4-89
○ 입원치료중 사망하였을 경우 요양비 산정 .....	4-90, 4-92
○ 유족배상 및 장애배상액 산정 .....	4-95, 4-109, 5-133, 5-143, 5-146, 5-156
○ 배상신청유무와 배상금 심의결정범위 .....	5-129
○ 배상지급 신청자의 범위 .....	5-140
○ 대체임금 조사방법 .....	15-234
○ 위자료 기준액 .....	5-148
○ 위자료 지급대상 .....	6-123
○ 병원당국의 요양비 청구 .....	6-126
○ 피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국가배상금 지급문제 .....	6-134
○ 피해보상금 지급 .....	7-113
○ 배상금(사용료) 지불 .....	10-135
○ 3개 부위 이상 신체장애자의 장애정도 평가방법 .....	13-119
○ 장례비인용 .....	14-123
○ 군차량사고의 피해자가 운전병과 합의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 여부 .....	14-127
○ 배상결정 후의 장해배상신청 .....	16-141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보상 .....	32-227

**다. 외국인에 대한 책임**

○ 국가간의 상호보증 .....	2-181
○ 배상금 지급 .....	5-139
○ 외국인 개념 .....	5-155
○ 한·중국간의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 .....	6-119
○ 중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7-114
○ 한·미행협에 따른 주한미군의 피해복구청구 .....	10-139

**라. 절차(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절차 .....	2-187
○ 예산부족에 따른 국가배상사건 처리 요령 .....	4-97

- 배상심의회 운영 ..... 4-106, 4-116
- 배상액 기준 초과금액 승인요청 절차 ..... 4-112, 5-136
- 국가배상법 적용문제 ..... 4-115
- 배상심의회 관할 ..... 4-116, 5-121, 5-137, 5-153
- 배상심의회 사무처리 ..... 5-123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중단 및 재심 ..... 5-131, 7-116
- 특별배상심의회와 지구배상심의회와의 권한관계 ..... 7-121
- 배상금지급결정 전 부동의된 사건처리문제 ..... 8-157
- 국가배상금 지급 후의 사정변경 ..... 8-158
- 손해배상금 지급절차 ..... 13-118
- 국방부장관의 배상심의회에 대한 지휘감독권 ..... 14-126

**마. 기타**

- 징발기간중 미군이 채석한 돌대금 지급 ..... 7-119
-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적용 여부 ..... 12-173
-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상채무 임의변제 ..... 14-124
- 국가배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15-229
- 예비군작전동원 및 교육훈련시 민간자동차 사용의 문제점 ..... 15-231
- 군수송기의 민간인 탑승 가부 ..... 21-153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 신청 가능 여부 ..... 24-185
- 국가배상을 위해 필요한 감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질의 ..... 24-187

**13. 군용지취득**

**가. 총칙**

- 징발재산중 소유자 불명시 민법규정의 적용여부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한 재산의 인계 ..... 9-104
-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한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대통령령의 적용대상 여부 ..... 9-105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이 도시계획법 제82조 소정의 도시계획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12-145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해석(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 13-106
- 군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공특법) ..... 20-162
-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 ..... 20-170
- 국방부장관의 민통선 설정·변경권 ..... 20-204
- 사인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 22-46
-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 29-75

#### 나. 목적물(제한)

- 징발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매각처분 취소 ..... 1-176
- 징발토지의 지목변경 ..... 1-177
- 군이 점유사용중인 사유재산의 징발 ..... 1-189
- 군이 무단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가능 여부 ..... 21-189
- 비상계엄 해제지역의 징발 ..... 1-191
- 선박소유 및 징발보상 ..... 4-83
- 징발재산의 교환 ..... 8-114
- 징발재산중 공유재산의 범위 ..... 10-117
- 징발된 임야상의 입목매수 ..... 10-118
- 민통선 북방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징발 ..... 12-159
-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전에 수용·매수 또는 반환된 토지가 특조령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 13-104
- 착오로 매수한 징발매수토지의 처리 ..... 17-154
- 증권매수토지에 대한 이중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징특법) ..... 20-200
- 중복등기된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행사 ..... 20-202
- 일부공유자의 지분과 국유지를 교환할 수 있는지 ..... 23-49
- 공유지분과 국유지의 교환가능 여부 ..... 23-51

**다. 절차(원상회복)**

- 소유자 미확인 징발물 처리 ..... 1-178
- 재산권의 소유자를 착오하여 행한 징발의 법적 효력 ..... 9-103
- 대통령공고 제29호 제3항 중 "국방부장관의 고시지역의 범위" ..... 9-106
- 징발재산매수에 있어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매수행위의 효력 ..... 9-117
- 소송 계류중인 징발 보상금 지급신청서 처리 ..... 12-147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의 법리 ..... 17-151
- 전쟁기념탑 건립과 환매권 발생여부 ..... 19-161
- 해군기지조성사업과 환매권 발생(공특법) ..... 20-164
- 군병원 지휘관관사 신축과 환매권(공특법) ..... 20-166
- 환매기간내 환매대금 미납시 환매권 발생(공특법) ..... 20-168
- 환매권 소멸된 징발재산의 반환 ..... 20-181
- 징특법상의 환매통지의무 이행시기 ..... 20-183
- 판결선고 이후부터 이행시가지의 환매대금 이자가산(징특법) ..... 20-185
- 공공사업실시에 따른 환매권 생사의 제한 ..... 20-187
- 환매권 상실한 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19-166
- 특별조치령의 '중전의 상환이 종료된 날'의 의미 ..... 19-168
- 착오에 의한 협의매수와 환매권 발생여부 ..... 19-178
- 환매권 행사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21-170
- 징특법상 징발재산을 수의매수할 수 있는 지위의 양도 가부 ..... 21-181
- 군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특법상의 환매권 행사 여부 ..... 21-199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2의 해석 ..... 21-214
- 국보위특조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대통령령에 의거 수용된  
토지의 처리문제 ..... 22-47
-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징발재산의 수의매각여부 등 ..... 22-48
- 징특법상의 수의매각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국공유지 처분제한과의 관계 ..... 22-49
- 공특법상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때"의 의미 ..... 22-50
- 양여하기로 합의한 국가재산 중 환매권 발생이 예상되는 토지의 처리 ..... 22-51

- 징특법상 증권매수지를 상속인에게 수의매각하는 경우  
제사주재자 1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22-52
- 징특법상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을 선지급하여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 22-53
- 분당, 일산 신도시 관련 양여가용금액과 대체시설비용의 정산가능 여부  
또는 잔여 양여대상재산으로 대체시설과의 정산가능 여부 등 ..... 22-54
- 활용계획 없이 전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방위산업체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 환매대상이 되는지 ..... 22-55
-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환매권행사 가부 ..... 23-52

**라. 해제**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권으로 매수한 재산과  
처분시 연고권을 부여하기로 법정화해한 재산의 매각 여부 ..... 12-183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매수통지 등을 누락한 경우  
그 매수의 효과 ..... 14-108
- 징발된 토지반환과 매수대금 환수 ..... 20-180
-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 25-93

**마. 보상**

- 징발보상령에 의거 기보상한 보상액 재조정 ..... 1-180
- 징발보상금 부정지급 ..... 2-172
- 징발보상에 있어서 목적물의 확정 ..... 2-176
- 징발보상금 지급과 목적물의 변경 ..... 2-178
- 징발보상금의 수령자 확정 ..... 5-95
- 징발목적 없는 징발건물에 대한 피해보상 ..... 3-42
- 징발보상기간 기산 및 법인소유 재산징발후 그 주주교체에 따른 보상문제 ..... 3-159
- 원 조선주택영단의 자산 등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여부 ..... 4-84
- 소송계류중인 징발재산의 보상금 지급 ..... 8-109
- 토지구획정리지역에 편입된 징발재산의 매수 및 보상 ..... 8-110
- 징발공유재산을 병무청 청사부지로 부정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8-112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부칙 제2조(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기준) ..... 9-113

- 공유 징발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 ..... 9-116
- 징발 이후 보존등기를 필한 징발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 ..... 9-188
- 소송계류중 피징발자의 징발보상금 청구 ..... 9-121
- 불하된 재산의 보상기간 ..... 10-121
- 징발보상금 지급일 ..... 10-124
- 소유권이 인정된 미등기토지 징발보상금 지급 ..... 10-125
- 사기행위로 인하여 징발재산 매수대금을 착오 지급하였을 경우  
국가채무의 소멸여부 ..... 10-128
- 징발토지가 후에 군에서 인위적으로 변형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의 보상관계 등 ..... 10-129
- 징발보상금 환수 ..... 11-127
- 징발보상금 과오불 환수에 따른 이자가산 ..... 11-135
- 소송계속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 신청 ..... 11-196
- 귀속휴면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 ..... 11-140
- 농지계획법상의 상황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과오불 환수 ... 12-149
- 국방부에 징발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징발법 제23조에 의한 시효중단사유 여부 ..... 12-151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 당시보다 환지후의  
지적이 적어진 경우의 환매대금 ..... 12-153
-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처리 ..... 12-155
-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에 의한 가집행금과 징발보상채권과의 상계 ... 12-157
- 징발보상금 지급 ..... 12-166
- 징발재산에 대한 멸실보상 청구권 존부 ..... 13-103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 14-105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간 ..... 16-117
- 징발중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징발보상 ..... 3-163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 보상책임 ..... 17-169
- 비무장지대내의 사유재산의 보상여부 ..... 17-172
- 민통선 지역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 20-205

- 징발보상금 지급대상자 ..... 18-175
- 공공용지 협의취득시 보상금 지급시기 ..... 18-177
- 허가·신고·무허가 관행어업에 대한 손실보상 ..... 19-180
- 토지수용 재결과 대법원 판결의 효력상충관계 ..... 19-183
- 영농보상시 농축산물표준소득 산정방법(공특법) ..... 20-161
- 주한미군시설의 교외이전사업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 ..... 20-175
- 아산만 어업보상협약서(안) 검토 ..... 20-178
- 매수협의 성립후 보상금 미지급시의 법률관계 ..... 21-191
- 국방·군사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국유지 상 사유건물에 대한 이전보상이 필요한지 ..... 33-187

**바. 기타**

- 법령적용 범위와 분배농지 및 귀속재산의 징발보상 취급 ..... 1-182
- 징발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징발보상 ..... 1-186
- 징발지상에 군원공사 실시 ..... 1-188
- 노무자 징용 ..... 1-193
- 통신시설의 기능단위 징발가부 ..... 3-158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매수재산의 소유권 취득시기 ..... 15-215
- 개인이 징발중에 있는 귀속재산을 국가로부터 매수한 경우의  
징발사용료 지급 ..... 5-96
-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 18-183
- 어로한계선의 남하 축소 지정·고시 ..... 18-237
- 지방산업개발단지 사업자 지정 관련 질의 ..... 23-53
- 징발재산환매에 있어 피징발자의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  
지분처리 ..... 23-48
- 우선매수 통지 없는 경우 우선매수가 가능한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관련) ..... 23-55
- 국가가 상대방에게 교환으로 제공한 토지가 제3자의 소유로  
확정된 경우, 국가가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등 ..... 23-56
- 징특별상 피징발자에게 징발한 토지를 우선매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106

- 용산기지 내 미군 임대주택부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용산부지에의 해당 여부 ..... 29-69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가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 ..... 29-76
- 부당이득금 반환의 근거 법률 ..... 29-78
- 국유지 내 폐기물을 무단야적한 자에게 변상금 및 과태료의 중복부과가  
가능한지 ..... 33-189

## 14. 군수

- 군수물자 불하 ..... 1-150
- 군수품관리 전환문제 ..... 2-118
- 군수품의 정의 ..... 2-119
- 군화 해체비용 지급의 합법성 여부 ..... 2-120
- 전비품에 대한 검사 및 전비품 손망실로 인한 변상판정 ..... 3-132
- 군수품구매 공급업무의 담당부서 ..... 6-95
- 군수품에 관한 불용결정 ..... 6-97
- 교환에 따른 금전의 보충지급 ..... 6-98
- 사관생도 피복지급 ..... 7-105
- 군수품의 구매공급 주관청 ..... 7-106
- 전비품 손망실 변상판정 ..... 7-108
- 군장품 조변 수의계약 ..... 8-120
-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자로부터 군용 통신전자장비를 납품받는  
경우 군수품관리법, 군용 전기통신법, 전자공업진흥법, 전자관리법  
적용 여부 ..... 10-205
- 석유류세 면세조치 ..... 11-145
- 군복및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 품목 ..... 11-147
- 조세감면 규제 ..... 11-149
- 주월한국군에서 인수된 방송장비를 한국방송공사에 인계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근거 ..... 11-150
- 군수품 구분 ..... 11-154

○ 군용장구의 범위(금속단추) .....	11-156
○ 손망실 처리 .....	12-182
○ 탄약생산군수업체가 원자재 고갈로 군이 비축한 탄약 등의 대여를 요청한 경우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12-205
○ 군공창생산품을 국방부장관이 외국회사에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	13-123
○ 국방부장관의 군수물자 수출추천권 여부 .....	13-124
○ 불용폐품의 교환계약에 따른 채무이행보증방법에 관한 회계질의 ·	14-143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연구기관의 개념 .....	14-146
○ 기념관전시용 6·25 전사품이 군수품관리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14-148
○ 장기계약에 있어서 "수년"의 의미 .....	15-239
○ 군수조달에 관한특별조치법상의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 .....	15-240
○ 군수품의 수출업체 무상대여 .....	15-241
○ 국방과학연구장려금 지급대상자 선발의 취소사유 .....	15-243
○ 군수품의 범위 .....	15-245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계약체결 군수업체 지정을 실무위원회가 위임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5-249
○ 군수사업 목적 .....	15-250
○ 전비품의 검사 .....	15-253
○ 군수품의 손망실처리 .....	15-255
○ 관세법상 군수품의 정의 .....	16-103
○ 군수품 교환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권 위임 .....	16-105
○ 연료바지선의 군수품 해당 여부 .....	16-107
○ 군용 유류를 관리전환할 수 없는 경우 .....	16-108
○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군수품을 불용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6-109
○ 국방품질검사소가 군수물자의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7-129
○ 군수품인 유한수명품목의 처리방법 .....	17-131
○ 불요군수품의 교환 .....	17-132
○ 군수품교환시 가격결정 .....	19-147
○ 구형방독면을 무상대여하고 신형방독면으로 상환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19-148

○ 관급원단수득률 책정업무의 위임 .....	17-133
○ 군수품의 해외보관 및 포괄적 출납명령 가능 여부 .....	17-134
○ 군수품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양여 .....	17-136
○ 군수품 불용결정시의 장부가액 .....	18-171
○ 군수품의 대여 .....	18-172
○ 국산화 개발물품에 대한 구매의무 .....	19-150
○ 산림청·경찰청 등에 대한 군수품 지원과 상환 .....	20-139
○ 안경사 아닌 안경군납업자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	20-141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등 .....	21-233
○ 복수의 물품관리관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물품출납공무원의 인사명령권 .....	22-63
○ 정상적인 사용의 결과로 군수품이 훼손된 경우 손망실처리를 해야 하는지 .....	23-58
○ M1소총 탄약을 방산업체로 하여금 폐기하도록 할 수 있는지 .....	23-59
○ 군피복 현금판매의 적법성 여부 .....	23-60
○ 군 일용품 현금 판매의 적법성 여부 .....	23-63
○ 군수품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에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	23-64
○ 소총을 외국인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23-65
○ 대학에 대여된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용 총기관리책임 .....	25-120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4조 해석 .....	25-123
○ 국방·군사시설사업자 지정 .....	26-140
○ 한국철도공사 전환과 여행장병안내소 시설의 무상사용 중지 여부 .....	26-145
○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해당 여부 .....	26-148
○ 외출·외박시 관용차 사용 .....	26-150
○ 일반직공무원의 군용승용차 운전 가능 여부 .....	26-152
○ 위성수신장비 외주정비 .....	26-154
○ 노후 건설공병장비의 불용결정 .....	26-156
○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에게 예비군피복을 소급지급할 의무 .....	26-158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술료 징수 유예·감면·면제 여부 .....	26-164
○ 정부부처에서 위탁관리 의뢰한 차량이 군수품인지 여부 .....	26-166

○ 군용항공기 관리·처분에 관한 적용 법률 .....	27-145
○ 불용품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	27-147
○ 군함과 민간선박 충돌 시 손해배상 합의의 최종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	27-149
○ 업체연구개발확인서 회수 가부 .....	28-143
○ 불용군수품 교환시 협의 여부 .....	28-148
○ 미군기지 철거 시 발생물건의 군수품해당 여부 .....	28-152
○ 차량운행 및 관리규정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	28-155
○ 물품관리법 제28조 “계약담당공무원” 의미 .....	28-160
○ 군수품관리법상의 교환 상대자 선정방법 .....	28-163
○ 육로 탄약호송 작전간 무기사용 가부 .....	28-167
○ 전투복 해외양도시 비군사화 작업 필요 여부 .....	28-169
○ 고무보트 및 고속단정의 무상양도 가부 .....	28-172
○ 기존 조합원의 미상환채무분담액 승계여부 .....	28-175
○ 불용장비 물물교환시 감정평가 수수료 .....	29-51
○ 육군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방위사업청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9-52
○ 군수품 유상양도 가부 .....	29-53
○ 불용 총기 교환 관련 법적 문제 .....	29-54
○ 의장대 행사복 무상 양도 가부 근거 법령 .....	29-56
○ 의장대 행사복 무상대여 가부 .....	29-57
○ 고단가 수리부속 불용결정 및 처리 절차 .....	29-58
○ 불용물품 압류 가부 등 .....	29-59
○ 군복 및 군용장구를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	29-60
○ 군수품 양도시 장관 승인 여부 .....	29-61
○ 부적합 소득약 하자처리 문제 .....	29-62
○ 군 상용차량 획득시 영세율 적용 가부 .....	29-63
○ 불용군수품 대여 가부 .....	29-64
○ 점유개정의 방법의 K9자주포 대여 가부 .....	30-144
○ 국내 교육과견 장군에 대한 전용승용차 지원 가부 .....	30-146

- 군수품관리법상 교환 해당여부 ..... 30-149
- 기준미달 전투화의 해외 수출 가부 ..... 30-151
- 군용표지가 없는 반합판매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 31-215
- 탄약대여 시 대여금액 산정 ..... 32-135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 32-138
- 경과규정 없는 개정된 훈령의 적용여부 ..... 32-143
- 이사화물 수송임 비용 ..... 32-145
- 금속제 모장이 단속대상인지 여부 ..... 32-147
- 불용군수품 매각 관련 검토 ..... 32-149
- 조약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시 절차문제 ..... 32-151
- 군수품 교환계약 ..... 32-154
- 폐기된 탄약의 성격 ..... 32-161
- 외국인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33-151
- ○○ 불용항공기 매각 시 군수품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관한 질의 · 33-154
- 불용군수품을 매각 시 예정가격 공개여부 ..... 33-154
- 중고 K-9 자주포 성능개량 비용지불 가부 ..... 33-166
- 해군 도태함포 관리전환 시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33-175
- K200 장갑차 양도관련 법령질의 ..... 33-178
- K-9 자주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의 궤도차량에 해당하는지 ·· 33-181
- 수입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판매한 제품의  
    군수품 해당여부 ..... 33-183

## 15. 방위산업

- 방산특조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 ..... 17-137
- 외국인출자기업의 방산업체지정 ..... 17-138
- 일반업체의 군사용 장비개발 ..... 17-140
- 주요방산물자지정에 대한 방산실무회의 권한 ..... 20-147
- 소프트웨어가 방산물자인지 여부 ..... 20-149

-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수출하는 방산물자 수출업체 지정 ..... 20-152
- 완성품인 전차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의 효력 범위 ..... 21-158
- 군용항공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 21-160
- 방산물자조달계약조정위원회의 지체상금면제 권한 ..... 20-154
- 장래 획득할 함정장착장비 생산에 대한 해군의 계약체결권 ..... 20-155
- 생산실적 없는 방산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제한 ..... 20-157
- 방산물자 조달시 적용될 환율의 결정시점 ..... 21-147
- 방산물자인 공군항공기의 정비시 군과 업체의 물량배분기준 ..... 21-149
-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에 관한 문제 ..... 22-64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당해연도 물량’의 범위  
..... 22-65
- 개발확인서의 명의변경 가부 ..... 22-66
- 고무사출성형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시운전에 필요한 고무재료를  
개발하였는바, 군용물자의 개발계획 승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22-67
- 방산물자의 지정범위 ..... 22-68
- 천마체계 지원장비에 대하여 별도의 방산물자 지정이 필요한지 ..... 23-61
- 획득협의회 의 기종결정의 적법성 질의 ..... 23-62
- 시제함주계약업체 선정 이후 상세설계 및 건조업체를 경쟁입찰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 23-66
- 방산특조법 제20조의 2 적용범위 ..... 23-67
- 함정의 방산물자 지정 가능 여부 ..... 24-151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군용물자 연구개발 범위 ..... 24-154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상 방산원가 착오시 부당이득금 환수여부 ..... 24-159
- 수출용 방산물자 대여료 조정방안 ..... 24-161
- 노동조합 전임자/임시 상근자 급료지원 ..... 25-113
- 후속양산 기술도입생산사업 선행업무 ..... 25-116
- 방산보증기금 회수방안 ..... 25-117
- 군용폭발물(탄약)의 폐기에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 25-119

- 방산수출업 신고 수리여부 ..... 25-122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2조 제2항의 ‘업체자체 연구개발 희망업체’의  
의미 ..... 26-160
- 방산업체 지정 취소 ..... 26-162
- 운용시험평가계획작성기관인 ‘소요군’에 합참이 포함되는지 여부 ... 27-151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상 총사업비의 개념 ..... 27-154
- 신규업체의 업체투자연구개발 승인 ..... 27-158
- 과학화경제사업 위탁 집행 가부 ..... 29-55
- K-21 장비 대여기간 재연장 ..... 29-65
- 수출용 품목의 규격화 여부 ..... 29-66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판매 허가관련 · 30-154
-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 분야를 별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30-157
- 방위산업 착수금 사용기간 산정 관련 ..... 31-217
- 국방규격 관련 업무 주체 ..... 32-186
- 방위사업법 제46조 제4항의 ‘정산’의 의미 ..... 33-141
-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상 연구개발결과물에 관한 전용실시권 계약이 가  
능한지 ..... 33-144
- 시제품자체가 전력화되는 함정 설계 및 건조계약에 따라 선도함과 후속  
함 초도물량을 생산하기로 한 경우 시제품의 범위 ..... 33-149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2호의 해석 ..... 33-160
- ○○사업의 1번함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2번 함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 33-164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해석관련 ..... 33-168

## 16. 재정

- PX의 원천세금징수 의무 ..... 1-159
- 포획선박 처리 ..... 1-160
- 관급원료 취급 ..... 1-161
- 예산부대조건의 해석 ..... 1-163

○ 관세법상 고발의 효력 .....	1-167
○ 잉여관급원료의 처리 .....	2-123
○ 국고금 지불 .....	2-124
○ 나포관리 선박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소송비용지출 .....	2-126
○ 국가기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	2-130
○ 주월군 귀국시 관세법상 신분 .....	3-135
○ 국군용 석유류의 면세대상 여부 .....	3-137
○ 공급계약위반과 지체상금 .....	18-151
○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부과 .....	18-208
○ 공사실적의 승계 .....	18-155
○ 국방·군사시설사업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	19-182
○ 두채류장비인도후 매각계약체결시까지의 사용료 징수 .....	20-143
○ 성능미달된 침투성 보호의에 관한 계약책임 .....	20-219
○ 업체 자체 개발품의 국방규격과 관련한 채무불이행 책임 .....	21-162
○ 지체상금 부과 .....	17-143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7-144
○ 단가계약 예정이행량을 초과 납품한 경우 계약 이행 여부 .....	21-238
○ 계룡대 체력단련장이 자체수입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이 국제법상 계약인지 .....	22-69
○ 무인항공기(UAV)체계개발계약 지체상금면제 가능 여부 .....	24-165
○ 지체상금적용시 월 누적일수 계산방법 .....	24-177
○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비용부담주체 .....	28-180
○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감리비 분담 .....	29-77
○ 국방부가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	29-85
○ 변제충당의 순서 .....	29-89
○ 복지기금을 통한 해군마트의 포인트 제도 운영의 타당성 .....	31-178
○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기관과의 약정 관련 .....	31-207
○ 기부금품 사용 대상자 .....	31-239
○ 국가채권을 공시송달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	32-199
○ 분할납품계약에서 지체상금 산출 여부 및 기준 .....	32-201

- 용역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 여부 ..... 32-211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시 일부구성원이 탈당한 경우 법률관계 · 33-220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채권양도·양수 시 채권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용역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33-223

## 17. 예산회계

- 재향군인회가 예산회계법 규율대상인지 여부 ..... 16-70
- 영치금취급자의 회계직공무원 임명 ..... 1-151
- 심계원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방법 ..... 1-151
- 국채반환 ..... 1-154
- 매매계약이 해체된 경우 계약보증금 반환 ..... 9-112
- 수의매각후 일부 해제시 계약보증금의 귀속 ..... 21-243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가격 제한과 계약해제 ..... 16-69
- 공사청부계약 해지 ..... 1-158
- 부정건설업자 처리 ..... 1-200
- 군납업자 부당행위 제재 ..... 4-75, 10-147
- 시설공사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회피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 21-229
-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과 부정당업자 제재 ..... 21-234
- 권리권 없는 행정부서의 국유재산매각과 입찰보증금 처리 ..... 5-105
- 입찰보증금 납부서 기재금액이 예정가격의 10/100 미달인 경우와  
입찰의 효력 ..... 5-106
- 공고내용과 다른 입찰보증금을 받고 실시한 입찰 및 매매계약의 효력 ..... 21-241
-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의 예산회계법상의 법인 해당여부 ..... 9-159
- 물품계약 ..... 10-145
-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사항 보장절차 ..... 10-150
- 유류조변에 있어서 면세구매 ..... 10-158
-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도급경비 지급관서의 범위 ..... 10-159
- 도심지 주둔 미군시설을 교외로 이전통합함에 있어서 군용시설교외이전 특별회계법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 10-179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소정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14-150

○ 국가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	14-169
○ 감사원 판정전 변상명령 .....	14-172
○ 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한 변상판정 .....	9-143
○ 군납품에 대한 변상책임 .....	16-71
○ 채권관리관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10-136
○ 군인공제회 아파트건립사업의 성격 .....	17-146
○ 군인공제회가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자격 및 해약 .....	21-105
○ FMS 종결잔액의 국고세입조치 여부 .....	18-149
○ 올림픽기장 제작의 예산회계법상 문제 .....	18-156
○ 전쟁기념사업회의 수의계약과 예산회계법 적용여부 .....	18-158
○ 수의계약가능기간 종료 후의 수의계약체결 .....	20-221
○ 수의계약에 의한 유류구매 .....	20-228
○ 수의계약에 의한 전산장비 임대차계약체결 .....	20-232
○ 정부계약체결시 군인공제회의 지위 .....	20-223
○ 장기계속계약방식에 의한 설계용역계약체결 .....	20-231
○ 국방전산망사업 전담사업자지정의 의미 .....	20-225
○ 국방일보 광고수입과 수입대체경비 .....	19-127
○ 군장품류 구매입찰 참가자격 .....	19-128
○ 예산회계법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뇌물을 준 자’의 범위 .....	21-231
○ 방송공사의 시설을 임차하여 군통신망 운용시 임대 사용료의 납부 .....	21-227
○ 세입징수관이 발송한 재고지서, 재독축장의 시효중단효력 .....	22-70
○ 입찰서의 금액표시에 한글과 숫자가 상이한 경우 당해 입찰의 효력 .....	22-71
○ 군이 공항공단으로부터 유지·보수 비품 등을 현금으로 대신 지급받아 비행장시설의 유지·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 .....	22-72
○ KTX-2 계약특수조건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검토 .....	23-68
○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	23-69
○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	23-70
○ 국군수도병원부지 매각계약 해제 가능여부 등 .....	23-71
○ 가압류된 급여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 .....	23-72
○ 부정당업자로 지정되 자가 다른 업체의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	23-73

- 물수된 계약보증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 23-74
- 가계약제도의 국내계약 도입이 위법한지 ..... 23-75
- 계약 해제없이 보증인 또는 주계약자를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 ..... 23-76
- 물가연동금지특약의 적법성 여부 등 ..... 23-77
- 군 복지시설 운용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 23-78
- 화재보험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 23-79
-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입찰서류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68
- 입찰업체의 영업직원이 뇌물을 제공한 경우 부정당한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24-170
- 물품구매 입찰업체의 적격심사에 관한 질의 ..... 24-172
- "동일품목을 2개 이상 업체에서 개발하였을 경우"의 의미 ..... 24-174
- 주계약업체의 협력업체 변경시 국방부의 승인 여부 ..... 24-179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된 공사의 분할  
계약금지 해당 여부 ..... 24-180
- 부정당업자 추가제재의 타당성 여부 ..... 25-121
- 허위서류에 의한 입찰 및 계약의 효력 ..... 26-170
-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예산 지출업무의 이관 여부 ..... 27-163
- BTL사업 조건부 실시협약 체결 가부 ..... 27-166
- 건축공사 설계비 요율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 ..... 27-169
- 관리비 할증료를 군관사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7-172
- 현장설명서에 추가된 심사기준의 법적 효력 ..... 27-176
- 국가 계약의 대가 지급에 있어 검사 단계의 생략 가부 ..... 27-178
- BTL사업 지역중소업체 자격요건 ..... 28-189
- BTL사업 재고시시 사업규모 축소 가부 ..... 28-193
- BTL사업 시공출자자 부도로 인한 법률관계 ..... 28-208
- 해군진해관사 BTL사업 건설주간사 지위 ..... 28-231
- 계약사무 일부 타 기관 분장의 문제 ..... 29-86
-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수의계약 가부 ..... 29-87
- 부정당업자 제재 확정 후 중도금 지급 가부 ..... 29-88

-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7조 제5호 “구속 등 형사처벌로 인한 경우”의 의미 ..... 30-177
- 용역계약에 있어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가부 ..... 32-203
-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 32-208

## 18. 국유재산

- 국가에 대한 사인재산의 기부채납 ..... 16-113
- 포획선박 인정 여부 및 그 처리 ..... 1-164
- 미창 귀속재산 불하 ..... 1-169
- 국유군용지상의 무단건축물 철거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여부 ..... 3-27
- 국유임야 대부 ..... 2-132
- 사찰부지와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 15-169
- 한국군인복지회의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 ..... 8-84
- 채석장의 보상액 산정(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 16-120
- “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의 의미(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 16-121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15-170
- 사단법인 국방부동우회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허가 ..... 21-177
- 개간촉진법과 국유재산법의 관계 ..... 15-171
- 국유재산의 사용료 ..... 15-173
- 국유재산법상 사용수익료의 징수 여부 ..... 21-185
- 군용시설특별회계법상의 국유림의 처분절차 ..... 8-153
- 용도폐지 건물의 매각처분 ..... 10-126
- 토지구획정리사업시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10-115
- 공원부지 활용 ..... 2-121
- 국유재산 처분 ..... 44-76, 13-78
- 관사사용료 징수 ..... 7-54
-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분임보관청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10-153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 11-131, 11-132, 13-80

- 국유재산을 공매할 경우 대부신청을 거부한 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가의 여부 ..... 11-138
-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기간 도과시의 효과 ..... 13-69
- 국유재산 매수자가 등기완료 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변경 신청한 경우의 그 효과 ..... 12-207, 13-70
- 부분배자가 상환완료하기 전에 국가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 13-71
- 국유재산 사용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 13-73
- 국유재산을 공매함에 있어서 공동명의로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 13-74
- 도시계획 저축재산 처리 ..... 13-75
- 매각건물철거에 대체이행 가능여부 ..... 13-76
- 무주부동산 국유화 ..... 13-77
- 재향군인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매각처분하였을 경우 국가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12-209
- 국유재산법상 전물군경유족회의 법적성격 ..... 12-219
- 도시계획구역안의 국유농지의 매각 ..... 9-108
-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의 사요 ..... 9-111
- 개인소유명의로 등기된 하천부지의 매수가부 ..... 9-120, 10-123
- 국제관광공사가 공익법인인가 여부 ..... 10-155
- 기부받은 장교관사 건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10-151
- 분배농지 소유권자 ..... 13-80
- 농지계약법에 의거 분배된 농지가 국유로 확정된 경우에 이미 납입한 상환료를 반화하여야 하는지 여부 ..... 13-82
-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문제 ..... 14-79
- 연부상환조건으로 매매한 재산의 소유권 ..... 14-82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소정의 "건물"의 개념 ..... 14-84
-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국유재산의 양도 ..... 15-292
- 군의 사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 ..... 15-303
- 지방자치단체의 탄약고 이전사업 대행 ..... 16-115
- 토지수용법상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범위 ..... 16-116

○ 대체시설 제공자에 대한 국유재산 양여 .....	18-161
○ 기관상호협약에 의한 대금정산 .....	18-165
○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국유재산매각 .....	18-167
○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군용지의 무상귀속 .....	21-183
○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19-159
○ 수색비행장의 항공대학 사용과 사용료 징수 .....	19-133
○ 국유재산 매각과 사용승인 .....	19-135
○ 지정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매각 국유재산의 재취득 .....	20-198
○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 .....	19-136
○ 국유지 매각대금 납부기일연장 .....	20-190
○ 국유재산법상 매각대금 납부기간 연장의 의미 .....	20-193
○ 민간인의 대공화기 구매가능 여부 .....	19-138
○ 국방품질관리소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양여 .....	19-141
○ 국유재산의 무상관리환 .....	20-199
○ 전쟁기념사업회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5년 이상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	19-143
○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수의매수할 수 있는 지위의 양도 .....	21-167
○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적용 이자율 .....	21-172
○ 국유재산 매각화해 후 계약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매수인에 대한 중치 .....	21-209
○ 이주대책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분양가격 및 분양자격의 결정시점 .....	21-211
○ 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국가의 재산양여 .....	21-221
○ 은닉 국유재산 자진반납자의 결정 .....	21-179
○ 은닉재산 자진반납에 대한 특례매각의 법률적 성격 .....	21-206
○ 군체력단련장의 회원권 발급 .....	21-96
○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에 건축된 무허가 하사관 아파트 보상여부 .....	21-187
○ 건설부장관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행위의 노력 .....	21-201
○ 기부채납받은 재산을 군인공제회에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22-56
○ 국유재산 매수자의 특약위반에 따른 해체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	22-57
○ 국가가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을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납기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지급의무 .....	22-58

- 군인공제회에 아파트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군관리의 토지를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는지 ..... 22-59
- 기부채납된 군사용 차폐용 간판의 사용료 면제기간 ..... 22-60
- 임야토석의 매각에 있어 산림법 적용여부 등 ..... 22-61
- 강의실 사용료 징수여부 ..... 23-54
- 군 숙소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 적법성 여부 등 ..... 23-57
-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 24-115
- 수량부족매매시 국유재산 매각대금 산정 방법 ..... 24-118
-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국유재산사용허가의 효력 ..... 24-119
- 국유재산(애기봉 주차장) 사용료 징수 가능 여부 ..... 24-120
-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연체료부과대상 ..... 24-124
- 국유재산 매각시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비 지급 여부 ..... 24-126
- 매수한 징발재산 등의 수의매각 가능 여부 ..... 24-128
- 국보위 특별법상 수의매각 가능 여부 ..... 24-130
- 국유지에서 채취한 토석 처분시 적용법률 ..... 24-132
- 매각부지에서 발견된 오염토양 및 폐기물의 처리 책임 ..... 24-144
- 국유재산 특례매각 ..... 25-95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25-96
- 수용 및 징발된 토지를 국유재산법상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 25-104
-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 26-123
- 행정재산(상가) 사용허가시 재계약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 26-133
-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된 국유지의 매각 가부 ..... 27-183
- 군 관사의 관리환 가부 ..... 27-185
- 부동산 계약업무를 공병부서와 경리부서 중 어디에서 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 27-187
- 국유재산 사용료율 산정기준 시점 ..... 27-191
- 사용·수익허가 변경승인 ..... 27-193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	29-71
○ 무상 사용허가를 한 기부채납 시설(행정재산)의 대체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유지 여부 .....	29-72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징수 가부 .....	29-79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임의 촉탁 가부 .....	29-80
○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0-161
○ 국방대학교 운동장 이용 .....	31-227
○ 군인연금기금으로 유상 매입한 자산의 “국방·군사시설” 해당여부	31-230
○ 군 병원 설립과 관련한 검토 .....	32-156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군사 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	32-165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	32-169
○ 「군인복지기본법」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32-173
○ 군 공중전화 미 철수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	32-177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판단시 적용 법조 .....	32-181
○ 통신지원업체 행사장소 제공여부 .....	32-195
○ 군 부대 내 노래방기기 및 게임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영업대상인지 .....	33-197
○ 사용허가매장 건물이 철거예정인 상황에서 기존 매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 하기 위한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	33-201
○ 행정재산에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 유재산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33-2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지형의 변경을 위한 인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부대장 협의사항인지 .....	33-214

## 19. 군사시설보호

○ 방호구역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초가지붕 개량가부 .....	10-81
----------------------------------	-------

- 관계행정청이 국방부장관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 허가처분의 효력 ..... 11-129
-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광업권 설정허가 ..... 11-142
- 군사시설보호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의 ..... 11-166, 12-113, 12-215
-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협의완료시점 ..... 21-195
- 항공탄약고지역의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3-129
- 민수용 유통저장시설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3-130
- 부대부변 주택신축 ..... 14-155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12-171
-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 대상 ..... 15-259
- 외국법인 토지취득허가와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 15-260
- 행정청의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싸리채취 절차 ..... 15-264
-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범위 ..... 15-265
- 관할부대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권한 유무 ..... 16-143
-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위법한 건축공사에 대한 조치 ..... 17-156
- 방위산업체 생산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인지 여부 ..... 17-158
- 군용전기통신법의 특별보호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여부 ..... 19-174
- 예비군 교육훈련장이 군사시설인지 여부 ..... 19-176
- 토지수용법상의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의미 ..... 17-159
- 공군기지법상 기지보위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여부 ..... 18-179
- 국가보안상 현저히 유해한 건축물 철거 ..... 18-181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전에 설정예정통보를 받은 군수가 행한  
건축허가의 적법성 ..... 19-155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전 건축허가의 효력 ..... 19-164
- 공군기지법을 위반한 건조물설치허가의 효력 ..... 20-210
- 공군기지법 규정의 효력 ..... 20-212
-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아파트에 대한 고도제한 ..... 20-208
- 외국정부와의 합의각서에 기한 재산권 제한 ..... 20-214
- 군용항공기지법과 미공군규정의 효력관계 ..... 20-216

○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과 관할부대장과의 사전협의 .....	21-174
○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 .....	21-197
○ 대지조성을 위한 절토와 군용항공기지법상 건축물의 고도제한 .....	21-203
○ 건축물 제5조 소정의 허가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172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설치결정시의 협의 .....	20-206
○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에 관련된 협의 .....	20-207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허가 취소 .....	19-157
○ 일반적인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의 법적근거 .....	19-169
○ 군사시설의 촬영, 묘사 등의 행위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금지되는지 여부 .....	19-171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군사시설의 의미 .....	21-218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범위 .....	22-62
○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고도제한에 저촉되거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시설물의 설치에 동의할 수 있는지 .....	23-50
○ 군사시설보호구역상 부동의, 협의, 위타지역조정승인권 .....	24-135
○ 재래식 탄약의 비군사화 처리시설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37
○ 군용항공기지구역내 행위제한사항의 발효시점 .....	24-138
○ 군용화약류제조시설의 신축, 변경행위에 관한 질의 .....	24-139
○ 예비군훈련장의 군사시설 해당 여부 .....	24-141
○ 군의 폭발물처리장이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43
○ 군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25-96
○ 199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계룡대 본청에 대하여 2003년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5-102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개설 동의시 현물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25-108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 협의)대상에 건축법제9조의 건축신고 사항이 포함되는지 .....	26-126
○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내에 심정 설치 허용 여부 .....	26-129
○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의 대상 .....	26-131

○ 군용항공기지법 적용여부 .....	26-137
○ 부산항건설사무소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7-195
○ 군용항공기지법상 연속적인 능선형태의 의미 .....	27-201
○ 영내 설치되는 주유소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27-20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재협의대상 여부 .....	28-18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상 “방공기지” .....	28-197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상 ‘협의’의 범위 .....	28-200
○ 스넥바 입찰공고시 참가자격 제한 가부 .....	28-205
○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심의절차 .....	28-213
○ 기부대양여사업 대체시설에 비품포함 여부 .....	28-216
○ 한 필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건축된 경우 협의 대상 여부 .....	28-219
○ 군용항공기지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제공주체 .....	28-223
○ 주한미군기지 소요물을 사업자에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여부 .....	28-227
○ 주한미군기지 오염토양 조사 및 정화작업의 범위 및 주체 .....	28-229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	29-67
○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한 허가가 군 협의 대상인지 여부 .....	29-6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 .....	29-70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9-73
○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군사시설의 의미 .....	29-74
○ 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변경 .....	29-81
○ 토양오염정화 관련 비용 부담 문제 .....	29-82
○ 토양오염정화 관련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 .....	29-83
○ 저유소 오염토양정화책임 및 비용 청구 .....	29-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 30-164
- 민간투자예 의한 군 체력단련장 건설 시 적용법률 ..... 30-168
-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  
협의대상인지 여부 ..... 30-171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령 관련 ..... 30-17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해석 관련 ..... 31-219
- 건축법 상 국방·군사시설인 군관사 내 과외교습 등 상행위 가부 · 31-23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5항의 재협의 요청 관련 · 32-184
- 비행안전 제1구역의 군사시설 설치 승인권자 ..... 32-189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 32-191
-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 협의의 의미 ..... 33-191
-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방 군  
사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 33-19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기존건축물’  
의 의미 ..... 33-204
- 추가적인 전력배치를 위한 신규시설 반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상 군 공항이전 사업에 해당하는지 ..... 33-208

## 20. 상훈

- 부대표창의 범위 ..... 1-128
- 상이기장 및 군인유족기장 수여대상자의 범위 ..... 1-129
- 군표창규정 제7조 및 군표창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권자의 해석 ..... 2-80
- 반공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계 ..... 3-32
- 반공법 제10조에 의한 상금 및 보조금 지급 ..... 3-35
- 무공훈장대리 수여권 문제 ..... 3-250, 4-135
- 무공훈장 수상요건 해당여부 ..... 3-259
- 유족순위 ..... 3-260
- 중앙정보부장의 국군장병에 대한 표창 ..... 4-133
- 위수사령관의 표창권 ..... 4-138

- 외국대통령 부대표창 수장패용 가능여부 ..... 7-145
- 계엄사령관 표창권 행사 ..... 10-185
- 비군인에 대한 6·25사변 종군기장령 수여 가능 여부 ..... 24-93
- 故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요건 충족 여부 ..... 30-132

## 21. 국립묘지안장

-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 가부 ..... 3-108, 15-45
- 재혼한 군인의 경우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배우자 ..... 21-121
- 예비군의 국립묘지 안장 ..... 7-45, 9-56, 11-24, 13-41, 13-39, 21-119
- 영현기록서류에 “미수집 및 불명”으로 기재된 자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 ..... 11- 29
- 소집중인 방위병의 국립묘지 안장 가부 ..... 13-34
- 해양경찰대 대원이 순직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가부 ..... 14-167
-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 ..... 15-60
-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립묘지에의 안장이 가능한지 여부 ..... 15-64
-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대상 ..... 17-122
- 경비교도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 17-124, 21-125
- 교정시설 경비교도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 18-144
- 국립묘지 안장대상 ..... 17-125
- 무공훈장을 받은 경찰관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인지 여부 ..... 17-126
- 테러 등에 의한 사망한 자의 위패봉안 ..... 18-145
- 휴가·외출중 사망한 국민의 국립묘지 안장 ..... 20-133
- 상해임시정부요인의 국립묘지 안장 ..... 20-135
- 비전공사망으로 처리된 군인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 21-85
- 국립묘지 안장시 육군본부소속 군무원의 순직확인권자 ..... 21-103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와 국립묘지 안장대상 ..... 21-110
- 6·25사변시 무공훈장을 받은 군속이 국립묘지령상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인지 ..... 22-36
- 재직당시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도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찰관으로 볼 수 있는지 ..... 23-31

-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국립묘지 안장자격 ..... 24-88
- 전직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 24-90
- 국립묘지 비문 설치 ..... 25-53
- 국립묘지 합장대상인 배우자의 의미 ..... 26-96
- 전몰의제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 26-98
- 충무 이하 무공훈장 수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 26-101
- 국립묘지 합장 대상 여부 ..... 26-103

## 22. 형사

### 가. 군형법

- 군형법 부칙 제6조에 의병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1-221
- 군무이탈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 ..... 1-25
- 군무이탈후 사면되었으나 계속 복귀하지 않는 자 등의 처리 ..... 1-201
- 주월 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전시 사변규정의 적용여부 ..... 3-212
- 군무이탈자 비호죄의 적용여부 ..... 4-164
- 노획물에 대한 영득과 횡령 ..... 4-173
- 주월한국군이 월맹으로 탈출한 경우에 있어서의 처벌 ..... 5-112
- 군속의 군무이탈 ..... 6-104, 15-274
- 5·16 이전 군무이탈자의 복무설정행위의 효력 및 군무이탈죄의 성립여부 ..... 6-110
- 5·16 이후 군무이탈자로서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한 처벌 ..... 15-273
- 적전의 개념 ..... 7-130, 1-24
- 방위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의 형사처벌 ..... 7-135
- 하자 있는 입영조치와 군무이탈죄 성립여부 ..... 7-140
- 청원경찰의 군법 피적용 문제 ..... 13-133
- 군무이탈후 일본 밀입국자에 대한 군형법상 처벌가능 여부 ..... 13-137
- 군형법상 상관의 개념 ..... 14-159
- 정부관서에서 방독면을 사용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 16-135

- 사관학교 가입학자가 군형법 피적용자인지 여부 ..... 18-187
- 재영중인 학군사관후보생이 군형법 피적용자인지 여부 ..... 18-188
- 향토예비군대원이 군형법 피적용자인지 여부 ..... 18-190
- 경찰제복인 전투복 등의 착용·제조·판매와 처벌 ..... 18-197
- 연예인들의 군복착용 허용여부 ..... 18-198
- 예비군복이 단속대상품목인 군복인지 여부 ..... 20-267
- 암호자재수발시의 무장경호병을 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9-198
- 뇌사상태인 군인의 장기이식 허용 ..... 20-111
- 해외 장기군무이탈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 22-73
- 입영기피죄 등의 공소시효 기산점 ..... 23-83
-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하여, 군형법 제1조 제3항 소장 ‘실역’의 의미 · 23-85
- 정문 위병소 배치 헌병이 군형법 상 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245

## 나. 군사법원법

- 일반사면에 따른 재심청구 ..... 1-124
- 형집행기간 산입 ..... 1-215
- 노무단소속 예비역 장병의 재판관할 ..... 1-216
- 고등군법회의의 분실설치와 관할관의 확인권의 내부적 위임 ..... 1-220
- 추징금 징수 ..... 1-223
- 군법회의 계속중인 민간인의 수용 및 미결수의 일반병원의 입원 ..... 1-226
- 5·16 이전 군복무 이탈자에 대한 형사관할 ..... 1-227
- 의병집행정지 출소자 잔형집행 ..... 1-228
- 군법회의법상 관할관의 확인조치 ..... 1-229
- 군법회의 사형판결의 집행방법 ..... 1-231
- 형면제와 형집행면제와의 차이점 ..... 1-231
- 형기 기산일 ..... 1-233, 1-244, 1-246
- 형집행정지된 자에 군법회의 판결의 효력상실 ..... 1-234
- 몰수물자 처리 ..... 1-239
- 공소심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권 ..... 1-241
- 국가재건 최고회의령 제34호에 의한 군법회의관할의 성질 ..... 1-242
-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사건처리 ..... 1-247

○ 국법회의의 관할권 .....	1-248
○ 재산형 집행 .....	1-260, 2-212
○ 군수사기관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의 효력 .....	1-261
○ 형집행중인 국회의원 석방결의 .....	1-262
○ 계엄지역내에서의 군법무관의 영장의 효력 .....	1-264
○ 군정보원에 대한 범죄사건 취급 및 밀수출입 물자취급과 밀항선원 처리 권한 .....	1-266
○ 군법회의 판결사건 .....	1-268
○ 미결구금일수 산입 .....	2-193, 6-108
○ 구속기간 갱신 .....	2-194
○ 군수사기관의 수사업무의 한계 .....	2-196
○ 입영부대 도착자에 대한 재판권 .....	2-198, 6-115
○ 계엄군법회의의 사형선고의 집행방법 .....	15-269
○ 미결구금일수의 집행 .....	15-275
○ 벌금형 언도 .....	2-213
○ 군무이탈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적용여부 .....	3-206
○ 군법회의 설치 및 설치보류 .....	3-207
○ 형집행정지중에 있는 자의 형의 면제 .....	3-211
○ 공소시효가 완성된 장물의 압수 .....	3-215
○ 군법회의 재판집행기관 .....	3-217
○ 군법회의 재심 .....	3-226, 3-229
○ 공소제기절차 .....	3-231
○ 비관할자에 대한 영장발부의 정당성 여부 .....	3-232
○ 2개군 이상 관련사건의 재판관할 .....	4-128
○ 5·16 이전 군무이탈자의 잔형집행 .....	7-137
○ 구속당한 응소자의 신분관계 및 영장효과 .....	8-128
○ 보안대 요원의 구속절차 .....	8-130
○ 비상계엄선포시 수사권 .....	8-131
○ 근무연습소집에 의하여 국군부대에 소집된 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구속 및 소집해제 .....	9-129

- 타군소속 장병에 대한 긴급구속 및 그 인치된 기간의 구속기간 통산여부 · 9-130
-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 재판권 관할 ..... 10-106
- 공소시효기간 산정 ..... 10-108
- 전시 근로동원자의 군법회의 적용 ..... 10-109
- 군 사법경찰관리가 군장품 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및 군장품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 ..... 10-111
- 군용품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 ..... 10-163
- 장물인 군용물의 압수 및 그 보좌관의 처벌가능 여부 ..... 13-134
- 군용품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해석에 있어서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 13-136
- 군용열차내 수송관이 군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16-137
- 고용군무원의 재판관할권 ..... 17-163
-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받은 파면형의 구제절차 ..... 17-164
- 국군보안부대원의 구속·관할 등에 관한 문제 ..... 18-192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된 예비군에 대한 군사재판관할권 ..... 19-196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의 처리 ..... 18-195
- 계엄사령부예의 군사법원 설치가능 여부 ..... 19-189
- 관할관 확인조치기간이 미결구금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19-193
- 검찰수사관이 입건하여 검찰관에게 송치할 권한이 있음 ..... 22-74

**다. 기타**

- 국방경비법상의 형의 면제 ..... 1-224
- 예비검속 ..... 1-232
-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해석적용 ..... 1-254
- 정치범의 개념 ..... 1-259
- 해안경비법상의 금고와 형법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0조의 금고 또는 구류와의 이동 ..... 2-192
-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보상요구 ..... 2-209
- 외국환 소지행위의 처벌 가능성 ..... 3-140
- 국방경비법 제96조의 "판결"의 해석 ..... 3-222
- 형의 실효와 파면취소사유 해당여부 ..... 4-127

- 여군 영창설치 및 헌병직무보조병 임명 ..... 4-165
- 반공법에 대한 질의 ..... 5-111
- 군인 등에 대한 전매법 위반사건의 고발 및 통고처분 ..... 5-113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성립여부 ..... 7-133
- 총포화약류단속법 적용 ..... 10-166
- 군의관이 승조하지 않고 있는 해군함정에 위생하사관이 출동중 불가피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발병, 사망한 경우 의무책임 ..... 12-187
- 외국국적 취득자에 대한 군무이탈자 수배해제 ..... 15-270
- 수형자의 청원에 의한 군교도소에서 작업과 상여금 ..... 15-271
- 군교도소의 미결수에 대한 작업상여금 지급 ..... 10-186
- 치료감호집행기간의 형기산입 ..... 20-271
- 출·퇴근시 교통통제를 하는 헌병이 도교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의 헌병인가 ..... 22-75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군용물 재산범죄 처리 ..... 31-221

### 23. 민사관계

- 강제집행에 관한 질의 ..... 1-195
-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허가 ..... 1-197
- 소송비용 관장 ..... 1-199
- 채납토지개량조합비 승계의무 유무 ..... 1-201
- 소운송업법 조문해석 ..... 1-204
- 소운송업법에 의한 하역작업 ..... 1-206
- 탄약저장 지역내에 거주하는 민간인의 철거 ..... 1-208
- 고철수집에 대한 법적해석 ..... 1-210
- 국유, 공유, 민유 부동산의 구분 및 징발부동산의 보상금 지급 기산일자 ..... 1-212
- 판권침해에 대한 법규해석 ..... 1-213
- 군량미 수급절차에 있어서 인도청구권 유무 ..... 2-182
-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 2-190
- 비영리법인 설치허가 주무관청의 범위 ..... 3-39
- 미확정 채권양수자의 지위 ..... 15-290

○ 재판상 화해의 효력 .....	15-294
○ 중첩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15-302
○ 민통선 북방지역의 재산에 대한 매수 .....	14-103
○ 외국정부의 한국내 부동산 취득 .....	3-176
○ 소유권 양도증 및 공증증서 소지인에 대한 물품인도 문제 .....	3-182
○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	3-183
○ 청구원의 순위보전 .....	3-185
○ 방치 매장광물의 소유권 .....	3-188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있어 공시송달방법 .....	3-195
○ 귀속재산 여부 .....	4-118
○ 미군주둔지역 임야의 처분권 .....	4-121
○ 유언의 효력 .....	5-101
○ 사단법인 설립 .....	5-102
○ 군경선교회의 설립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 .....	16-125
○ 예비군수송협회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감독권 .....	16-126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변경된 법인정관의 효력 .....	16-128
○ 비영리법인의 기부금품모집행위와 그 설립허가 취소 .....	16-129
○ 신원보증서 .....	5-103
○ 일본에 귀화하기 전에 한국에서 입적시킨 양자와의 귀화후 친권관계효력 .....	7-125
○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부가 .....	8-110
○ 군건구입을 위한 복권발행 .....	8-121
○ 매장물자 발급보증금 처리 .....	8-123
○ 전부명령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기존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9-135
○ 채권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효력 .....	10-156
○ 소송계류중인 대지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제지방방법 여하 .....	14-175
○ 예고등기된 토지를 매수할 경우의 보상 .....	14-177
○ 매매계약 체결 전에 필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	14-179
○ 감사원 판정에 의한 변상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	10-138
○ 군수품 손망실 사건에 대한 배상청구 .....	10-141

- 매수후 소유권 미이전 재산보호 ..... 12-161, 12-221
- 부당이득금의 이자적용 ..... 12-164
- 매매계약후 당사자를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 10-154
- 매도인의 하자담보기간 ..... 16-130
-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채무승계 ..... 16-131
- 민간차량에 상이를 입은 군인의 치료비 청구 ..... 17-175
-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18-203
- 지상권 설정 계약후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 18-204
- 이행대행자의 사용 ..... 18-206
- 배상결정시 예견못한 적극적 손해발생과 배상 ..... 18-211
- 가압류된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이 행하여진 경우의 효력 ..... 18-213
- 전우신문에 일간신문 기사를 전재할 경우의 저작권 침해 여부 ..... 19-203
- 계약해제시의 책임 ..... 19-208
- 퇴학당한 국군간호사관후보생도의 경비반환 ..... 20-23
- 해직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퇴직금 산정 ..... 20-24
- 재임용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퇴직금 반환범위 ..... 20-27
- 중재절차에 있어서 국가의 대표자 ..... 22-76
- 수용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 23-87
- 군의관의 민간인 진료시 면책협약의 효력 ..... 24-193
- 존속기간 영구인 지상권설정계약의 유효성 ..... 25-100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급여채권 범위 ..... 26-169
- 행정봉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 27-211
- 비영리법인인 국방인재개발원의 수익사업 ..... 31-243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32-193
- 동시이행 판결 선고사안에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의 법률관계  
..... 32-229

## 24. 기타

- 표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선박처리 ..... 1-130
- 수로업무법에 관한 질의 ..... 1-156

○ 사체부검 .....	1-272
○ 0-2 요원의 노동조합조직의 합법성 .....	1-274
○ 부대우편물 검열에 대한 적법성 여부 .....	1-276
○ 외국인의 한국변호사회 가입 .....	2-180
○ 제적사유 해당자의 사면처리 .....	2-47
○ 사회단체등록의 업무소관 .....	2-218
○ 군노무자 노동운동 .....	2-216, 2-219
○ 해군함정에 대한 선박법 및 선박안정법의 적용여부 .....	2-220
○ 일반사면으로 인한 원계급복귀 .....	2-269
○ 일반사면에 따른 병역기피자 처리 .....	2-270
○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면 해당 여부 .....	2-271
○ 사면법에 의한 복권 .....	3-171
○ 노무근무단의 노무자의징계 .....	3-154
○ 직위해제기간의 정의 및 소득세 징수 .....	4-79
○ 임시우편물단속법 제3조 .....	4-143
○ 우편물의 지구검열실시 .....	4-144
○ 군통신시설 이설보상 .....	4-152
○ 현역군인의 가사심판법 적용 .....	4-174
○ 군인보험 계속 신청 .....	5-147
○ 사면의 효력 .....	7-139
○ 사관학교 퇴교자의 교육기간이 사병경력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15-65
○ 관공서의 휴일 .....	15-50
○ 군의관의 대한의학협회 회원 가입 .....	8-141
○ 매장물자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의 작전지역의 의미 .....	9-151
○ 공문서 작성시 기안책임 .....	10-171
○ 보안업무에 관한 질의 .....	10-179
○ 비밀취급인가 .....	10-180
○ 군인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취소여부 .....	10-191
○ 공인회계사 자격 .....	10-195

- 군사우체국 설치와 관련하여 체신부와의 군사우편요금 결제 ..... 11-164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한 신원조사 ..... 11-167
-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상 동원업체 의무위반시 처벌 근거 ..... 11-170
- 민원결과통보에 대한 회신 ..... 12-191
- 국방부 의무자문관 임명에 있어서 이미 판정된 보안적부심사의 효력 · 12-195
- 보안업무시행규칙 개정문제 ..... 12-225
- 고속도로 연변 토지형질변경 ..... 13-142
- 사단법인 한국군인복지연합회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13-143
- 공직선거기간 중 병력동원훈련이 가능한지 ..... 23-80
- 방산물자계약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서를 경영위원회 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 23-81
- 읍, 면, 동 방위협의회 존치여부 ..... 23-82
- 반복민원 종결처리 부서 ..... 23-84
- 타 정부기관 생산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안조치를 해야 하는지 ..... 23-86
- 기념주화 발행가능 여부 ..... 23-88
- 군복지시설도 영업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23-89
- 군보도요원증 발급가능 여부 ..... 14-168
- 민간업체가 발칸포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 14-181
- 민통선 북방에서의 광석반출 ..... 1-202
- 귀농선 부근의형석을 전리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 1-203
- 사전동원 영장의 법적효력 ..... 15-280
- 양자와군인자녀 교육법상의자녀 ..... 15-28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의 적용대상 ..... 15-283
- 기능사 훈련교사의자격기준 ..... 15-288
- 주재무관 자녀의 군인자녀교육법상의 혜택 ..... 15-286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상의 초대대학의 의미 ..... 15-288
- 국방대학원에 1년의 석사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15-289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 ..... 15-296

○ 복권의 효력 .....	15-297
○ 한국국방학회(비영리법인)의 정기간행물 유가판매 .....	15-298
○ 일반사면령상의 금품수수비위의 범위 .....	15-300
○ 국군정신전력학교 연구실의 국민윤리학회 회원가입 .....	15-301
○ 광업권의 권리를 수용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 .....	16-114
○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 .....	16-144
○ 입원환자를 위한 군인의 신체 일부제공 .....	16-149
○ 재향군인회의 회비수납방법 .....	16-150
○ 근로기준법상의 계속근로연수 .....	16-151
○ 재향군인회의 의문성금 각출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16-152
○ 국방관리연구소 연구원의 승용차 면세혜택 여부 .....	16-154
○ 육사신보에 일반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	16-156
○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할 수 있는지 여부 .....	17-174
○ 군함에 의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과 오염방지 .....	18-239
○ 개정 신체검사규칙의 적용대상자 .....	19-233
○ 군병원이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19-238
○ 군병원에서 민간인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가부 .....	19-244
○ 각군 발행의 군 대형운전면허의 효력 .....	21-156
○ 문서 수발 전령병의 가스총 휴대 .....	21-152
○ 국보위특조법의 폐지와 그에 따른 사전동원, 비공개동원, 부분동원 .....	21-259
○ 정훈교육자료로 TV, 프로그램이나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 반포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22-77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추진하면서 군부대 오수를 연계처리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군부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22-78
○ 미 정부 소유 기술품을 생산시에는 국산품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바 정비시에도 지적 소유권이 적용되는지 여부 .....	22-79
○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위산업물자를 구입하여 국가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여부 .....	22-80
○ 보안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필요성 .....	22-81

○ 국방대학원 특정직 교수의 재임용 적용기간 .....	22-82
○ 공군기술고등학교학생의 후불승차 가능 여부 .....	24-192
○ 한의사 면허 소지 사병의 진료행위 가능 여부 .....	24-195
○ 훈련비밀기록물의 보존절차 .....	24-198
○ 6.25전쟁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의 저작권 .....	25-127
○ 국군체육부대 선수팀의 프로리그 참가 .....	25-131
○ 군부대 통상명칭을 국정원 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5-133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	25-135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별도의 장소에서 부검할 수 있는지 여부 .....	25-136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록 전체 송부요청에 대하여 국방부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5-138
○ 민간검찰이 현역군인을 내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5-140
○ 보험료 급여공제 수수료 징수 .....	26-173
○ 외국인강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여부 .....	27-214
○ 국고대여학자금대부 대상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포함 여부 .....	29-44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의해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	29-49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 .....	29-90
○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에 ‘주과수’ 포함 여부 .....	29-93
○ 국방부 감사처분의 거부 가능 여부 .....	29-94
○ 공무원 및 군인의 비영리법인 참여 가부 .....	29-95
○ 군 차량 증과실 교통사고 보호대책 .....	29-96
○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직무발명 관리 .....	29-97
○ 군 이사화물 업체와의 업무제휴 .....	29-98
○ 중앙복지시설 예약환불금 .....	29-99
○ 군 차량 보험 업무 .....	29-100
○ 국회의원의 군부대 교양강의 가부 .....	29-101
○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	30-180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 30-184
- 전문자격(면허)을 보유한 의무병의 군 보건의료행위 가능여부 ..... 31-187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유급의 현장연수” 관련 ..... 31-200
- 특정수혈부작용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 ..... 31-247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32-110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검토 ..... 32-215
- 서해 5개 도서의 관할권 문제 ..... 32-216
-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 ..... 32-225
- 안보학 교수의 정년 보장 ..... 32-232
- 국가보훈처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32-233
- 평창올림픽 군 지원 가능여부 등 검토 ..... 32-236
-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 ..... 32-239
- 군수형자 작업분류 ..... 32-242
- 미송환 북한군 사체의 처리 ..... 32-244
-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문서열람 권한부여 관련 ... 33-35
-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대상 ..... 33-38
-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역장병 DB를 신원조사 시스템에서 신원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33-89
- 계약변경 가능여부 ..... 33-227
- 정당원인 자가 군인이 되었을 때의 탈당 의무 ..... 33-230
- 파견근무자 문서결재행위의 위법여부 ..... 33-231
- 국군교도소 기부금품 접수 시 적용법률 ..... 33-233

##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33집

발행일 2020년 4월 29일  
편집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발행처 국방부  
디자인 국군인쇄창 원고편집과  
인쇄 국군인쇄창 M20040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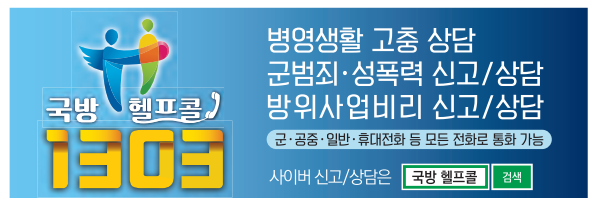


무강한 테러범, 군사기밀 유출, 외국(북) 정보 스미어, 보안사고(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337**  
원제 어디서나

**신교유형**  
불간첩/테러범·보안사고(위반)  
외국통/방산 스미어·군사기밀유출

**상급내역**  
간첩선·간첩: 최고 20억 원  
테러 관련 신고: 최고 1억 원

**신교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sc.mil.kr](http://www.dssc.mil.kr)



**국방 헬프콜 1303**

병영생활 고충 상담  
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사이버 신고/상담은 **국방 헬프콜** 검색

